

연구보고 2014-22

#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정원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약 9조 5천억의 국가 예산이 보육 사업에 투입되었다. 또한 유아교육 재정을 포함한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도 2013년 이후 1%를 넘어서 OECD의 최소 권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외형 성장은 보육정책이 국민의 생활과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해소,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 등 보육정책에 관계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하여 왔다.

예산 규모로 측정되는 양적 성장 속에서 보육정책은 그 간 어떠한 변화, 특히 어떠한 성과를 얻었고 어떠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동일한 과제명으로 짧게는 해당 1년간의, 길게는 4~5년간 보육정책의 중단기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본 보고서에서 2013~2014년간에 이루어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한 결과, 2013년 전연령·전소득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양육수당 전연령·전소득 계층 지원이 실현됨에 따라 보육 재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해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육 정책의 방향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와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 교사 처우, 평가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질적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육정책 관계자들에게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금까지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진정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회**



# 차 례

요 약 .....	1
I.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내용 .....	11
3. 연구방법 .....	14
4. 선행연구 .....	16
II.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 현황 .....	20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	20
2. 보육비용 지원 .....	35
3. 시간연장형 보육 .....	45
4. 시간제 보육 사업 .....	48
5. 어린이집 평가인증 .....	49
6.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	52
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56
8.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58
9.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60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	62
11. 보육 재정 .....	65
12. 주요 지표 및 소결 .....	69
III.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	73
1.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개요 .....	73
2. 시·도 특수보육시책 .....	75
3. 소결 .....	82
IV. 2014년도 심층 분석 과제 .....	83
1. 과제 선정의 이유 .....	83

2. 과제 1: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 .....	84
3. 과제 2: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와 개선 요구 .....	141
V. 향후 정책과제 .....	177
1. 정책 과제 .....	177
2. 맺는 말 .....	186
참고문헌 .....	188
Abstract .....	193
부록 .....	195

## 표 차례

〈표 I-2- 1〉 보고서 목차(2010-2014) .....	13
〈표 II-1- 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2007~2014 .....	21
〈표 II-1- 2〉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3 .....	21
〈표 II-1- 3〉 연도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	22
〈표 II-1- 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	23
〈표 II-1- 5〉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 .....	23
〈표 II-1- 6〉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	24
〈표 II-1- 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3 .....	25
〈표 II-1- 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3 .....	25
〈표 II-1- 9〉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3 .....	26
〈표 II-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 수 .....	27
〈표 II-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3 .....	27
〈표 II-1-12〉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및 비율: 2011-2013 .....	28
〈표 II-1-13〉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2013 .....	29
〈표 II-1-14〉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	29

〈표 II-1-15〉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3 .....	29
〈표 II-1-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2013 .....	31
〈표 II-1-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32
〈표 II-1-18〉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수 .....	34
〈표 II-2- 1〉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4 .....	36
〈표 II-2- 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	37
〈표 II-2- 3〉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4 .....	38
〈표 II-2- 4〉 서울시 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4 .....	39
〈표 II-2- 5〉 연도별 영아 보육비용 구성과 규모 .....	42
〈표 II-2- 6〉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	42
〈표 II-2- 7〉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3 .....	44
〈표 II-2- 8〉 연령별 사유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3 .....	44
〈표 II-3- 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3 .....	46
〈표 II-4- 1〉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참여 기관 현황 .....	48
〈표 II-5- 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 2013. 9. 30 기준 .....	51
〈표 II-6- 1〉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3. 9. 30 기준 .....	53
〈표 II-6- 2〉 원장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3. 9. 30 기준	53
〈표 II-6- 3〉 보육교직원 수: 2013 .....	54
〈표 II-6- 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	54
〈표 II-6- 5〉 보육교사 세부 분류 .....	55
〈표 II-7-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 특성 .....	57
〈표 II-7- 2〉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규모 .....	58
〈표 II-8- 1〉 2013년 양육수당 지원아 수 .....	59
〈표 II-9- 1〉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61
〈표 II-10-1〉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	63
〈표 II-11-1〉 국고 지원 예산: 2009~2014 .....	65
〈표 II-11-2〉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10~2014 .....	66
〈표 II-11-3〉 GDP 대비 보육, 총 보육·유아교육 예산: 2010-2014 .....	67
〈표 II-12-1〉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주요 지표 .....	69
〈표 III-1- 1〉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2~2014 .....	73

〈표 III-1- 2〉 시·도별 보육특수시책사업 예산 현황: 2014 .....	74
〈표 III-2- 1〉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시·도 본청 예산 사업 .....	75
〈표 IV-2- 1〉 양육수당 수혜 현황: 2013. 12. 31 기준 .....	85
〈표 IV-2- 2〉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86
〈표 IV-2- 3〉 설문조사 내용 .....	86
〈표 IV-2- 4〉 양육수당 수혜 기간 .....	88
〈표 IV-2- 5〉 양육수당 수혜 경험 .....	88
〈표 IV-2- 6〉 보육 관련 시설 경험 .....	89
〈표 IV-2- 7〉 양육수당 수급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유 .....	90
〈표 IV-2- 8〉 어린이집 이용 시작시 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자격 여부 .....	91
〈표 IV-2- 9〉 양육수당 수혜 아동 낮 시간 주 양육자 .....	92
〈표 IV-2-10〉 가정 양육 만족도 .....	93
〈표 IV-2-11〉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	95
〈표 IV-2-12〉 (가정 양육 만족하는 경우) 양육수당 수혜 후 가정 양육 만족도 변화 .....	97
〈표 IV-2-13〉 양육수당 수혜로 보육관련시설 이용 계획 시기 변동 .....	99
〈표 IV-2-14〉 양육수당으로 인한 추가 출산 의사 .....	100
〈표 IV-2-15〉 양육수당 수혜 후 어머니의 근로형태 변화 .....	102
〈표 IV-2-16〉 양육수당 수급과 근로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축의 관련성 .....	103
〈표 IV-2-17〉 양육수당 정책 전반적인 만족도: 양육수당 수혜자 .....	104
〈표 IV-2-18〉 양육수당 정책 전반적인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자 .....	105
〈표 IV-2-19〉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 .....	106
〈표 IV-2-20〉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	106
〈표 IV-2-21〉 양육수당 금액 불만족 이유 .....	107
〈표 IV-2-22〉 양육수당 금액 불만족시 원하는 금액 .....	108
〈표 IV-2-23〉 양육수당 인상시 가정양육할 의향 .....	110
〈표 IV-2-24〉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가정양육 지속 의향 여부 .....	111
〈표 IV-2-25〉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월 5~10만원 정도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 여부 .....	113
〈표 IV-2-26〉 (월 5~10만원에 가정양육 지속의향 없는 경우) 월 10~15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 여부 .....	114

〈표 IV-2-27〉 (월 10~15만원에 가정양육 지속의향 없는 경우) 월 15~20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 여부 .....	116
〈표 IV-2-28〉 양육수당 인상시 가정 양육으로의 전환 의향 여부 .....	117
〈표 IV-2-29〉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어린이집 이용가구) .....	119
〈표 IV-2-30〉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월 5~10만원 정도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	120
〈표 IV-2-31〉 (월 5~10만원에 전환할 의향 없는 경우) 월 10~15만원 정도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	122
〈표 IV-2-32〉 (월 10~15만원에 전환할 의향 없는 경우) 월 15~20만원 정도 인 상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	124
〈표 IV-2-33〉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 출산 의사(양육수당 수혜가구) .....	125
〈표 IV-2-34〉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추가출산의사 증진 여부(양육수당 수혜 가구) .....	127
〈표 IV-2-35〉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 출산의사(어린이집 이용가구) .....	128
〈표 IV-2-36〉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추가출산의사 증진 여부(어린이집 이용가구) .....	129
〈표 IV-2-37〉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방안 찬성 여부 .....	130
〈표 IV-2-38〉 (찬성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제도 도입 시 추가출산 의향 상승 정도(양육수당 수혜 가구) .....	130
〈표 IV-2-39〉 (찬성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제도 도입 시 추가출산 의향 상승 정도(어린이집 이용 가구) .....	132
〈표 IV-2-40〉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지급액(동일금액 양육수당 부분)_2014 ...	135
〈표 IV-2-41〉 가구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기준: 2014 .....	136
〈표 IV-2-42〉 노르웨이 양육수당 지원 체계 .....	137
〈표 IV-2-43〉 노르웨이 제 특성별 양육수당 수혜 비율: 2010 .....	138
〈표 IV-2-44〉 노르웨이 양육수당 수혜자 수 및 예산: 2007~2013 .....	138
〈표 IV-3- 1〉 조사대상 가구 특성 .....	142
〈표 IV-3- 2〉 조사대상 부모 특성 .....	143
〈표 IV-3- 3〉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	144
〈표 IV-3- 4〉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대기해 본 어린이집 .....	145

〈표 IV-3- 5〉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대기했던 기간 .....	145
〈표 IV-3- 6〉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해 본 기관 개소수	146
〈표 IV-3- 7〉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대기해 본 어린이집 .....	147
〈표 IV-3- 8〉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대기해 본 기간 .....	148
〈표 IV-3- 9〉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해 본 기관 개소수 .....	149
〈표 IV-3-10〉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 4점 평균	150
〈표 IV-3-1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만족 시) 만족스러운 점 .....	151
〈표 IV-3-1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불만족 시) 불만족스러운 점 ·	152
〈표 IV-3-13〉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이전의 수기 대기 시스템을 둘 다 사용해본 경우) 수기 대기 방식 대비 온라인 입소 시스템 도입 후 대기 기간 감소 여부 .....	152
〈표 IV-3-14〉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이전의 수기 방식을 둘 다 사용해본 경우) 수기 입력 대기 대비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 5점 평균 .....	153
〈표 IV-3-15〉 (만족도가 변화없거나 높아진 경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	154
〈표 IV-3-16〉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 .....	155
〈표 IV-3-17〉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156
〈표 IV-3-18〉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 의견 .....	156
〈표 IV-3-19〉 응답기관의 특징 .....	157
〈표 IV-3-20〉 평소 어린이집의 위치 지역 입소 수요 수준 .....	158
〈표 IV-3-21〉 어린이집에서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 수 .....	160
〈표 IV-3-22〉 현재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자 유무 및 입소대기자 수 .....	161
〈표 IV-3-2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 아동 유무 및 입소 아동 수 .....	163

〈표 IV-3-24〉	수기 방식으로 입소대기자를 관리해 본 경험 유무 .....	165
〈표 IV-3-25〉	수기 입력 방식에 비해 온라인 입소 시스템 이용 후 결원 충원의 용이성 .....	166
〈표 IV-3-26〉	이전의 수기 방식의 입소대기자 관리 방식에 비해 새로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상 만족도 .....	167
〈표 IV-3-27〉	(변화없음 또는 만족도가 높아졌다면)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	168
〈표 IV-3-28〉	(만족도가 낮아졌다면)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	169
〈표 IV-3-29〉	새로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모 만족도 .....	170
〈표 IV-3-30〉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순위 .....	171
〈표 IV-3-3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 ·	172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IV-2-1〉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전계층으로 수급대상 확대 ·	197
〈부록 표 IV-2-2〉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전연령으로 수급대상 확대 ·	198
〈부록 표 IV-2-3〉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신청 및 수급 절차 .....	199
〈부록 표 IV-2-4〉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현금 지급 방식 .....	200
〈부록 표 IV-2-5〉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연령 차등 지원 방식 .....	201
〈부록 표 IV-2-6〉	양육수당 수혜 후 어머니의 근로형태 변화 .....	202



## 요 약

### 1. 서론

- 본 연구는 예산 사업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의 보육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인 양육수당과 2013년 시범사업 후 2014년 전국 확대 도입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집중 검토하였음.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어린이집 공급과 운영, 이용에 관련된 정책,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관련된 정책,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등 세부 항목별로 현황을 분석하였음.
  - 지방정부의 보육 특수시책 자료를 통해 지방 고유의 보육정책 내용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았음.
  - 양육수당 제도의 만족도와 가정 내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 효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 요구 등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전국 17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양육수당 수혜자 1,000명, 어린이집 이용자 1,000명 대상 양육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입소한 가구 700사례와 어린이집 원장 300명을 대상으로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관련부처 관계자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2. 보육정책 현황

- 2013년 취학전 아동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은 64.4%, 취학전 아동 인구 대비 어린이집 현원은 53.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취학전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4%로 2010년 이후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3.4%로 2012년 86.4% 대비 하락함.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2012년 대비 하락률이 큼.
  - 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정원충족률은 지역별 편차가 큼. 서울 등 대도시의 공급률이 낮은 편이며, 대체로 공급 부족 지역에서 정원충족률이 높게 나타남.
- 2013년 보육료 전액지원과 양육수당 보편화로 무상보육을 달성함.
  - 영아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3년 말 63.3%로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보육은 영아무상보육 실시 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대폭 증가하여 영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유아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이용률 증가로 기관 이용이 증가하였음.
- 시간연장형 보육 수요는 3%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24.5% 정도가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하고, 총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수는 전체 보육아동의 약 3.2%이며 연도별 변동폭이 거의 없음.
  - 시간연장형 보육 중 대부분은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임.
- 맞춤형 보육,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 사업' 실시.
  - 2014년 11월 현재 99개소의 기관이 시간제 보육에 참여하고 있음.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현재 평가인증 유지율은 73.8% 수준임. 2013년 대비 통과율과 유지율 모두 상승하였으나, 통과율에 비해 유지율이 낮아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5년도에는 '의무평가제'로의 전환이 계획되고 있으며, '교사처우개선' 지

표 추가 등 평가인증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질 개선 유도를 추진하고 있음.

- 처우개선 수당 증액과 누리과정 교사 수당 등이 급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체교사의 비율은 전체 보육교사의 0.72%에 불과해 보수 외 휴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어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을 분명히 함.
- 양육수당의 전 계층, 전 연령 확대로 수혜자가 2013년 12월 기준 32.5%로 증가하였음.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음.
  -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공동아이돌봄센터(구 소규모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수요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축소되고 있음.
  - 2014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을 9개 지역에서 운영함.
- 2014년 보육예산은 국고지원사업과 지자체특수사업 시책의 합 약 9조 6,400억원 정도로 GDP 대비 약 0.65% 수준임.
  - 유아교육 예산 5조 3,000억원을 추가하면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은 모두 14조 9,500억 규모로 GDP 대비 1.01%정도로 추정됨.
- 국고 지원사업 이외에 각 지방정부가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함.
  - 시·도와 시·군·구 특수사업 예산은 각각 6,538억원, 4,167억원으로 총 1조 8백억원 수준임. 국고 지원사업비 8조 5,574억원의 약 12.7%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 3. 2014년도 심층 주제 분석

#### 가. 양육수당

- 양육수당 수혜자와 양육수당 미수혜자인 어린이집 이용자 각 1,000여명을 대

상으로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각종 효과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봄.

-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 비용을 수혜받은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85%가 보육 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음.
-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양육수당을 받다가 기관 이용으로 의사를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로 절반 가량을 차지함.
- 양육수당을 수혜받는 대상의 가정 양육 만족도의 경우 5점 평균에서 3.73점을 나타내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 양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 후 가정 양육 만족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높아졌다는 응답이 58.9%로 나타남.
- 양육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60% 정도로 나타났음.
  -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 특히 0세인 경우 양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양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양육수당을 받게 됨으로써 계획했던 시기보다 시설 이용이 늦추어졌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6개월~1년 정도를 늦춘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실제로 양육수당 제도가 추가 출산 의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수급 가구의 21.4%가 추가 출산 의사가 생겼다고 응답함.
  -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출산율 증진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나타냄.
- 양육수당 수급 이후 어머니 근로형태에는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남. 새로 취업했거나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는 0.5%에 불과함.
-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 양육수당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1.2%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남.
  - 양육수당 항목별 만족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체 수혜자의 93%가 이에 대하여 만족하였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항목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양육수당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비해 금액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양육수당 금액이 불만족스러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을 질문한 결과 평균 347,600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원하였음.
- 양육수당 수혜 가구 중 34.1%는 양육수당이 인상될 경우 가정양육을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7.8%는 금액 인상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가정 내 양육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6.8%에 불과하였고, 금액 인상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은 19.2%로 나타남.
-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게 추가금액이 지원되는 다자녀 추가 지원 방식의 경우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경우 88.2%,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8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 어린이집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본 영유아 부모 700여명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300여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알아봄.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으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대기해 본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대기해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는 수기 방식으로 대기할 때와 유사한 경향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읍·면 지역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에 대기한 경험이 많았음.
  - 최대로 대기한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3개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읍·면보다 많았음.
  - 전체의 약 70%가 현재 1~2개의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다고 응답함.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본 부모의 67.6%는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함.
  -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많았음.
  -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번호만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임.
  - 입소대기 경험자의 1/4은 이전의 수기 대기 방식에 비해 시스템 도입 이후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함.
- 입소대기 경험자들에게 현재 입소 대기 시스템과 시스템 도입 전에 이용했던 수기 방식을 비교하게 한 결과, 만족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2%로 가장 많았고, 높아졌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기방식 대비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관리의 만족도 변화를 알아본 결과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타 유형의 시설보다 많았음.
  - 만족도 차이가 없거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를 대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서류관리·보관 등 번거로운 일이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 실질적 수요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 수는 10명 이하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수요가 높음을 나타냈음.
-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7%였으며, 평균 입소 대기자 수는 약 26명임.

- 어린이집에서 수기방식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후 결원 충원이 수기방식 대비 더 용이해졌다는 의견은 9%에 불과함.
- 입소대기 경험자들이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허수 대기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음.
  - 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한 순으로 개선을 요구함.
- 입소대기 경험자들의 경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는 3~5개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약 67%로 가장 많았음.
  -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1~2개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음.

#### 4. 향후 정책 과제

##### 가. 일반적 보육정책 과제

- 어린이집의 맞춤형 공급 필요
  - 현재 보육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치 못한 문제가 나타남.
  - 지역 수요에 맞는 공급과 최소기준 미달 어린이집 퇴출 유도 및 국공립 기관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 기관 비율 확대'를 맞춤형 공급 전략으로 제시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 확대와 맞춤형 정책 지원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 비중 및 절대액 확대가 필요함.
  - 보육예산이 급증하였으나 무상보육 지원 예산 외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제한됨.
  - 핵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자체특수시책예산에서 질 제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지원을 하도록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함.

평가인증의 효과성 제고

- 평가인증 통과 여부나 유지, 점수에 따라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의 서비스 질 제고 효과를 높임.

추가경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

-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명목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해 취약계층에 기관 이용의 부담으로 작용함.
- 추가경비에 대해서도 표준 비용을 산출하여 전국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나친 비용 상승을 억제하도록 함.

#### 나. 심층주제 관련 정책 과제

양육수당 제도의 개선

- 0~1세 영아에 대한 금액 인상은 기관 보육이 불필요한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됨.
- 연령차등방식을 유지하여 양육수당은 '영아'를 위한 가정 내 양육 지원 제도로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0~1세 양육수당 금액은 해외 사례나 부모 요구도를 고려해 다소간 인상이 바람직할 수 있음.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개선

-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 증진이 필요함.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입소 신청을 대행해 주거나, 예외적으로 수기방식의 대기과 특별전형을 가능케 하는 등 불편 사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대기 가능 어린이집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복대기가 지나치게 많아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입소 희망 시기, 대기 기관 우선순위를 체크하도록 하고 대기순번 결정과 관련된 자격 서류 등도 대기 등록 시 첨부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동일한 과제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속연구이며 2014년 5년차를 맞았다.

과제명에서 드러나듯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매 1년 단위로 그 변화를 추적하면서 짧게는 최근 1년간의 변화, 길게는 5년 정도간의 변화 추이를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단기, 중·단기간 보육정책에서의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 목표와 함께 여성의 취업 지원, 출산율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측면과 연관된 정책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과 그 중요성으로 인해 보육정책은 매년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2013년 기준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약 9조 5천억이 순수하게 보육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으로 집계되고 있고(보건복지부, 2013b),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1.05%<sup>1)</sup>로 OECD의 최소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육정책 중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된 보육료 지원 확대가 2013년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보편화 된 것(서문화·이혜민, 2013: 7) 이외에도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수당의 도입과 보편화 등 2000년대 후반 이후 굵직한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평가인증, 보육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등 보육정책은 실로 다방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도입·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서도 한 해 한 해가 다른 진화가 거듭되고 있고, 지자체별로는 더욱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특수시책으로 지역 특색과 요구에 맞춰 지역 보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보육정책이 국가 미래 인력의 영유아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과 매년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변화 속도만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처럼 국가 보

---

1) 본 연구의 분석 결과임.

육정책 전반을 훑는 과제의 필요성과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한 영역의 심층 연구는 아니더라도 매년 보육정책 전반의 소식을 업데이트하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며,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과 부처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개별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2014년도 본 과제의 필요성도 찾을 수 있다.

우선, 2년차에 이른 현 정부의 보육관련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가 어떠하며 향후 재임기간 중 어떠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해 재임기간 중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2013년에는 보육정책이 기관보육·가정양육에 대해 보편적 지원으로 변화됨으로써 보육정책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즉, 비용 지원의 확대로 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켰고, 동시에 ‘기관 이용’과 ‘가정 보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용자의 행태 변화가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취임 2년차인 2014년에는 지난 2013~2014년간 이루어진 보육 정책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 정책으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관련 지표를 통해 측정해 볼 수 있으며, 추가로 심층주제에 대한 관련자(부모, 보육기관 관계자 등) 조사 결과를 보육정책 수행의 평가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 과제는 매년 시급하게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제도의 개선이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2013년 전연령·전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보편화된 ‘양육수당’에 대한 국민 인식과 만족도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 변경 시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2013년 11월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도 제도 도입 초기 만족도 조사와 개선 사항 도출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심층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과제 자체가 가지는 의의와 2013~2014년의 보육정책 변화

에 대한 분석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본 연구는 2013~2014년의 정책 변화를 추적하고 평가를 통해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며, 지난 몇 년 간의 보육 정책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0년 1차년도 보고서를 시초로 6년간 지속되는 연속 연구이다. 2014년도는 본 과제의 5년차로 지난 4년간의 보고서 작성 양식을 따라 정부의 보육정책을 모니터링,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요청에 의한 심층주제에 대한 분석을 같이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 구성과 심층주제를 포함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정책에 대해 지난 2013~2014년에 이루어진 변화와 현황을 중심으로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보육재정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하고, 이후 어린이집 운영과 설치에 관련된 정책,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관련된 정책,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세부 항목별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17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한다.

넷째, 심층 주제를 분석한다. 먼저, 2013년 전연령·전계층에 대해 보편화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를 심층 분석한다. 수혜자의 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금액변동이 기관 이용과 가정 내 양육간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심층분석 주제로 2013년 11월 시범사업 후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시스템 안착을 위한 분석을 추진한다. 그간 어린이집의 양

적 확대로 아동 인구 수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용 정원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나, 지역별 접근성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용자에게도 기관 유형별 서비스 질 격차가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별로 정원대비 현원은 차이가 난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64.2%에서 입소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입소대기자 수가 60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81). 즉, 공정한 입소대기 관리 문제는 부모측면에서도, 어린이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2014년도에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모와 어린이집 양측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앞에서의 검토 및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연속연구로 5년차에 해당하는 분석 보고서이다. 이에 보고서의 구성을 지난 연도의 보고서 목차 중 '보육정책 현황' 부분의 세부 목차와 심층 주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I-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세부정책별로 보육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속 과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도에도 가급적 기존의 목차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단, 2014년에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인 '시간제 보육사업'이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아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되므로 세부 목차를 추가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주요 보육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전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한다.

#### 나. 조사연구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심층 주제 및 조사 내용은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거쳐 선정하였다. 2014년도 심층분석 주제는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실태와 만족도’이다.

##### 1)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 부모 조사

어린이집 이용 부모, 양육수당 수혜 부모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국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를 아동 연령별, 16개 시·도별로 비례 배분하였다.

양육수당 수혜 가구 대상 주요 조사 내용은 가정 내 양육 특성,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 금액 만족도, 양육수당의 효과(출산의지 제고, 취업, 기관 이용 지연),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 내 양육 지속의사, 추가 출산 의사 제고 정도, 다자녀 인센티브 도입 찬반 및 도입 시 추가 출산 의사 제고 정도이다.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 양육수당 인상 시 추가 출산의사 제고 정도, 다자녀 인센티브 도입 찬반 및 도입 시 추가 출산 의사 제고 정도이다.2)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작성 후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정책연구소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2일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면제’ 최종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의 구체적 항목은 4장의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를 참조할 것

## 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및 만족도: 부모 및 기관 조사

조사 대상자는 2014년 4월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 700사례, 어린이집 원장 300사례 등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자이다. 부모 조사 표본은 2014년 8월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입소한 아동이 총 14만 명으로 집계되는데,<sup>3)</sup> 이를 지역 분포와 아동 연령별 비율을 고려해 16개 시·도별로 제곱근 비례 배분하였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아동 가구 대상 주요 조사 내용은 입소대기 경험, 수기 입소대기 방식 및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 비교,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만족·불만족 사항, 개선 요구이다.

한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또 다른 이용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300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기관의 규모와 소재지 규모에 따른 차이가 예상되어, 2013년 보육 통계 기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시설분포를 따르지만,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후 기간이 긴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간 비교를 위해 시범지역 표본을 의도적으로 과대 할당하여 시범지역 어린이집이 약 30%가량을 차지하도록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 조사 역시 질문지 작성 후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정책연구소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쳤다. 2014년 8월 18일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면제’ 최종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 보고서의 심층분석 주제 선정, 조사 목적 및 설문항목 협의, 설문지 검토를 위해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등 정책결정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2014년 11월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와 2차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4. 선행연구

### 가.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보육정책들을 검토하여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 2010(서문희·최혜선, 2010) 이후 지금까지 2011년(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2012년(서문희·김혜진, 2012), 2013년(서문희·이혜민, 2013) 4년간 지속되었다. 2014년은 5년차 연구이다.

매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재정, 보육시설 설치와 이용, 시간연장형 보육, 평가인증,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를 기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아이돌보미 파견보육사업, 보육정보센터를 추가하고, 2012년에는 이러한 중앙부처 보육정책을 2012년 5년의 추진계획기간이 만료되는 ‘아이사랑플랜’ 추진 성과로 특징 지워 ‘아이사랑플랜’의 추진과제별 성과로 분석하였다(서문희·김혜진, 2012: 8).<sup>4)</sup> 4차년도인 2013년 보고서에서는 다시 2010~2011년도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앙정부 보육정책과 함께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내용과 성과 등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파악하였다.

5차년도에 이르는 연속과제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매년 보육정책 현안과 관계부처의 요구를 반영한 심층 분석 주제를 선정하며 차별화된 구성을 보였다. 2010년에는 심층 분석 주제로 서울형과 부산형 공인 어린이집 제도가 선정되었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포함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2011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시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었다(서문희·이혜민, 2013: 13).

2011년에는 중앙정부 정책 중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심층 분석하였다(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선정 시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향후 개선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지원 수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가 되

4) 예를 들면, 2011년 ‘보육비용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의 범주에서 각각 분석되었던 것을 2012년에는 아이사랑플랜 6대 추진전략 중 ‘부모 양육비용 부담 경감’의 한 범주내에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서문희·김혜진, 2012).

었다(서문희·김혜진, 2012: 15).

2012년도 심층 분석 주제는 영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제 2차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적절성 검토의 세 가지가 선정되었다(서문희·이혜민, 2013: 14).

2013년에는 2011년부터 실시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과 2013년에 전계층, 전연령으로 확대한 양육수당 제도를 심층 분석 주제로 선정하여 양육수당의 수혜실태와 지원금의 사용처와 바우처 방식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3: 8).

## 나. 주제별 선행연구

보육 정책의 성과나 모니터링 관련 선행 연구 중 여기서는 심층 분석 주제인 ‘보육지원 보편화’와 관련되는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관련 선행연구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련 연구만을 정리한다.

### 1)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평가 연구

이혜원(2013)은 2009년, 2011년에 조사 완료된 가족여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7월에 이루어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이 부모의 보육기관 이용 부담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가구 경제 부담 완화 효과는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고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편적 비용지원에 대한 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기존에 이미 비용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계층의 만족도가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해 비용지원을 처음 받게 된 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2).

### 2)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평가 연구

201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 온 ‘양육수당’과 관련해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의 연구에서 양육수당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구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양육수당이 어린 연령의 아

동 발달에 도움이 되며, 양육비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양육수당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과 기관보육 간 선택권 제고의 효과는 낮고 출산을 제고 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1: 74~85).

2013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서문희·이혜민, 2013)에서도 심층 분석 주제로 양육수당이 다루어졌다. 2013년은 특히 양육수당이 0~2세 영아만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고 소득계층도 확대되어, 기관보육과 양육수당 수급 간의 선택과 부모의 취업에의 영향, 양육수당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문희와 이혜민의 연구(2013)에서는 주로 어떤 집단이 양육수당 수혜 가정인지 그 특성과 자녀양육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취업에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수당의 정책 대상을 연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제언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3: 160).

또한 이정원(2013)은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기관 미이용 양육수당 관련 정책 변화가 영아 가구의 기관이용과 양육수당 선택(가정 내 양육)이라는 양육방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보육료와 기관 미이용 양육수당이 모두 차등지원 되었던 2011년, 보육료가 영아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된 2012년, 양육수당도 소득계층 상관없이 보편화된 2013년의 보육료 지원건수와 양육수당 지원건수를 비교한 결과, 2012년 영아무상보육으로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기관 이용이 2011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대신 보편화된 양육수당 지원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2013: 34). 즉,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 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련 연구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입소대기 관련 문항을 통해 기관의 입소대기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약 64.2%의 어린이집에 조사시점 현재 입소대기자가 있으며, 대기중인 영유아 수는 평균 60.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 입소대기현황은 차이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87.6%가 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하여 입소대기 문제가 가장 큰 설립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자 수는 210명에 달해, 그 다음으로 대기자가 많은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해도 약 3배 이상 대기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81). 이처럼 특정 유형과 지역에 입소대기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입소우선순위'의 공정성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다. 유해미, 이정원, 이세원(2013)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우선순위 항목간에 세부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진행되었던 연구가 있다(백선정·김태형·김나은, 2012). 종이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각 원에서 보관, 입소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해 부모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입소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온라인 입소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모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입소신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에 중요한 보육행정 정보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백선정 외, 2012: 3).

## II.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 현황

제 2장에서는 2013년의 보육통계 자료와 2014년 정책 및 예산 자료 및 사업별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주요 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 살펴보는 보육정책의 현황은 매년 발간되는 연속 보고서임을 감안해 기존의 목차를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보육비용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보육재정을 검토하였고, 보육지표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하였다.

###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201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2014. 5. 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여기서는 먼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분석하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4년에는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 19개소와 장애아전담시설 2개소 설치 계획은 2013년 및 2012년도와 동일하다(표 II-1-1 참조).

<표 II-1-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2007~2014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공립 신축	예산	20,216	9,910	7,532	1,982	1,982	1,982	14,865	31,430
	개소수	112	50	38	10	10	10	75	150
리모델링	예산	4,925	950	1,050	475	475	475	475	475
	개소수	237	38	42	19	19	19	19	19
장애아 전담 신축	예산	2,166	713	476	238	238	476	476	503
	개소수	10	3	2	1	1	2	2	2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19 <표 II-1-1>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한편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은 441개 지역으로, 전년도의 453개 지역에 비해 12개 지역이 감소하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남 및 전남 지역의 경우 아직도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1-2>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3

단위: 지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동	29	1	6	-	-	4	3	1	-	3	1	-	1	1	2	3	2	1
읍면	412	-	-	1	5	-	-	4	1	10	25	29	33	62	75	84	83	-
계	441	1	6	1	5	4	3	5	1	13	26	29	34	63	77	87	85	1
2012	453	1	7	1	9	3	2	4	1	17	25	29	37	65	79	90	82	1
2011	474	2	7	-	10	3	1	4	-	18	25	32	53	64	79	93	82	1
2010	471	2	5	1	10	3	2	5	-	18	25	32	41	67	81	96	82	1
2009	491	3	7	2	15	4	2	4	-	13	26	35	45	65	82	103	84	1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19 <표 II-1-2>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의 제 14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2013. 1.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는 사업장 명칭·주소·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은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다(2014. 4.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1,074개소이다. 이 중에서 81.7%인 877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의무 이행 어린이집 중 설치는 60.9%인 534개 사업장이고, 그 외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는 형태이다(표 II-1-3 참조).

〈표 II-1-3〉 연도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

단위: 개소(%)

연도별	의무사업장	이행				(이행률)
		계	설치	수당	위탁	
2013(12.31)	1,074	877	534	242	101	(81.7)
2012( 9.30)	919	683	359	253	71	(74.3)
2011( 6.30)	832	604	326	231	47	(72.6)
2010	833	578	312	208	58	(69.4)
2009	790	523	284	195	44	(66.2)
2008	791	476	269	160	47	(60.2)
2007	791	440	253	147	40	(55.6)
2006	775	365	199	132	34	(47.1)

주: 1)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2)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1 <표 II-1-3>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2014년 4월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및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의무이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2014. 4.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각각 90.9%, 98.1%가 의무 이행 중이며, 학교는 76.8%, 기업은 77.3%가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는 지자체가 9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기관 90.9%, 학교 76.8%, 기업 77.3%의 순이었다(표 II-1-4 참조).

〈표 II-1-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을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전체	1,074	877	534	242	101	197
(비율)	(100.0)	(81.7)	(49.7)	(22.5)	(9.4)	(18.3)
국가기관	110	100	83	7	10	10
(비율)	(10.2)	(90.9)	(75.5)	(6.4)	(9.1)	(9.1)
지자체	155	152	78	70	4	3
(비율)	(14.4)	(98.1)	(50.3)	(45.2)	(2.6)	(1.9)
학교	95	73	33	33	7	22
(비율)	(8.9)	(76.8)	(34.7)	(34.7)	(7.4)	(23.2)
(공사)기업	714	552	340	132	80	162
(비율)	(66.5)	(77.3)	(47.6)	(18.5)	(11.2)	(22.7)

주: 1)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함.  
 2) 2013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2014년 4월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II-1-5〉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의무 이행률)	(시설 설치율)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서울	363	299	208	66	25	64	(82.4)	(69.6)
부산	64	51	25	15	11	13	(79.7)	(49.0)
대구	35	26	12	7	7	9	(74.3)	(46.2)
인천	40	31	24	6	1	9	(77.5)	(77.4)
광주	21	20	10	9	1	1	(95.2)	(50.0)
대전	48	45	30	8	7	3	(93.8)	(66.7)
울산	33	26	13	12	1	7	(78.8)	(50.0)
경기	154	123	80	22	21	31	(79.9)	(65.0)
강원	36	30	13	14	3	6	(83.3)	(43.3)
충북	36	29	16	10	3	7	(80.6)	(55.2)
충남	41	36	18	11	7	5	(87.8)	(50.0)

(표 II-1-5 계속)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의무이행률)	(시설설치율)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전북	30	27	11	14	2	3	(90.0)	(40.7)
전남	27	22	11	9	2	5	(81.5)	(50.0)
경북	56	44	18	19	7	12	(78.6)	(40.9)
경남	65	46	29	15	2	19	(70.8)	(63.0)
제주	8	7	5	2	-	1	(87.5)	(71.4)
세종	17	15	11	3	1	72	(88.2)	(73.3)

주: 2013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2014년 4월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별로는 의무이행률은 광주가 9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대전으로 전체의 93.8%가 직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의무이행률이 70% 정도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시설설치율은 인천이 77.4%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73.3%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강원도와 경북, 전북의 경우 40% 대로 비교적 낮다(표 II-1-5 참조).

미이행 사업장은 전체의 18.3%로 2013년의 25.7%보다 줄어들었다. 직장보육 미이행의 사유로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장소확보가 곤란하다는 사항이었고, 보육수요가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 장소확보가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II-1-6 참조).

〈표 II-1-6〉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구분	단위: %(개소)				계(수)
	보육수요 부족	재정 부담	장소확보 곤란	기타(무응답 등)	
전체	20.4	16.6	38.5	24.5	100.0(265)
국가기관	-	-	20.0	80.0	100.0( 10)
지자체	-	33.3	33.3	33.3	100.0( 3)
학교	20.0	25.7	31.4	22.9	100.0( 35)
기업	21.7	15.7	40.6	22.1	100.0(217)

주: 1)미이행 사업장 197개소가 복수 응답하여 전체 사업장이 265개소임.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는 공표에서 제외함.

자료: 2014년 4월 3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3)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규모 증가 추세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43,77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만 6,980여명의 아동이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제외한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3.3%이다.

설치된 어린이집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전체의 54%가 이에 해당한다.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경우 약 34%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개소수의 5.3%를 차지한다. 어린이집 개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2년의 어린이집 총 개소 수는 42,527개소였으나 2013년 설치된 어린이집 총 개소 수는 43,770개소로 1,243개소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개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1-7 참조).

〈표 II-1-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3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비율)	(100.0)	(5.3)	(3.3)	(2.0)	(33.7)	(54.0)	(1.4)	(0.3)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3 <표 II-1-7>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육아동 수는 2012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여 148만 여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10.4%이고, 법인 및 법인의 어린이집의 경우 10.8%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약 52%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도 전체의 25%에 달하였다(표 II-1-8 참조).

〈표 II-1-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3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비율)	(100.0)	(10.4)	(7.3)	(3.5)	(51.8)	(24.5)	(2.3)	(0.2)

(표 II-1-8 계속)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4 <표 II-1-8>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보육 이용 아동 현원은 정원 대비 83.4%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91%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이 약 77% 수준으로 가장 낮다(표 II-1-9 참조). 2012년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율이 86.4%로 나타났는데, 2013년에는 이와 비교했을 때 정원 대비 현원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1-9&gt;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3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단위: 명(%)
								부모협동
정원	1,782,459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44,783	3,972
현원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비율)	(83.4)	(90.8)	(77.9)	(82.3)	(82.1)	(86.0)	(77.0)	(81.2)
2012	(86.4)	(91.9)	(80.3)	(83.0)	(84.9)	(90.9)	(77.8)	(83.5)
2011	(83.2)	(90.8)	(79.4)	(82.1)	(82.0)	(84.9)	(76.8)	(83.9)
2010	(82.2)	(89.5)	(79.3)	(81.5)	(81.1)	(83.3)	(77.3)	(85.3)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4 <표 II-1-9>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한편, 유치원은 전국 8,678개원이 설치되어 있고 65만 8,188명이 이용하고 있다. 기관 수는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이 많지만 공립유치원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월등히 많으며 2013년 기준으로 516만 여명으로 전체 원아의 78.4%에 이른다(표 II-1-10 참조).

〈표 II-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 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11			2012			2013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전체	8,424	26,988	564,834	8,538	28,386	613,749	8,678	30,597	658,188
공립	4,502	7,279	126,095	4,525	7,535	127,347	4,577	8,220	142,052
사립	3,922	19,709	437,739	4,103	20,851	486,402	4,101	22,377	516,136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4 <표 II-1-10>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b). 2012-2013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0~5세 영유아의 총 인구 수는 276만 9,255명이다. 이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47만 7,151명이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는 65만 4,821명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합하면 전체 영유아 중 77.3%가 된다. 영아의 경우 전체 영아 138만 2,218명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63.3%이고, 유아의 경우 전체 유아 138만 7,037명 43.4%는 어린이집을, 47.2%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1 참조).

〈표 II-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3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sup>2)</sup>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 <sup>3)</sup> (2012)
0세	421,465	148,273	-	-	35.2	-	29.0
1세	486,655	325,921	-	-	67.0	-	36.4
2세	474,098	400,781	-	-	84.5	-	42.9
0~2세 소계	1,382,218	874,975	-	-	63.3	-	34.2
3세	472,047	255,786	143,069	398,855	54.2	84.5	44.9
4세	447,055	184,513	233,926	418,439	41.3	93.6	47.0
5세	467,935	161,877	277,826	449,532	34.6	96.1	48.1
3~5세 소계	1,387,037	602,176	654,821	1,266,826	43.4	91.3	46.9
0~5세 전체	2,769,255	1,477,151	654,821	2,141,801	53.3	77.3	39.5

주: 1)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5 <표 II-1-11> 내용에 추가·보완함.  
 2) 인구수는 2013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3) 모취업률은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서문희 외, 2012).  
 4) 어린이집 자료는 2013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3년 7월 통계로 6세 이상아는 제외하였음.  
 자료: 최은영 외(2013b). 2012-2013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011년부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이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2011년 대비하여 2013년까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과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한 보육·유아교육 이용 유아 비율 모두 10%p에 가까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2년간 기관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유아만을 대상으로 할 때 지난 2년간 어린이집 이용 증가폭에 비해 보육·유아교육 이용 아동 비율의 증가폭이 커서 유아의 경우는 동 기간 동안 유치원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II-1-12 참조).

〈표 II-1-12〉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및 비율: 2011-2013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보육아동 비율	보육·유아교육 아동 비율	보육아동 비율	보육·유아교육 아동 비율	보육아동 비율	보육·유아교육 아동 비율
0세	32.5	-	38.3		35.2	-
1세	53.1	-	68.1		67.0	-
2세	77.0	-	79.2		84.5	-
0-2세 소계	54.1	-	62.0		63.3	-
3세	58.3	87.0	58.1	87.4	54.2	84.5
4세	37.0	76.8	41.6	90.8	41.3	93.6
5세	30.6	82.7	30.2	81.1	34.6	96.1
3-5세 소계	42.0	82.0	42.8	86.3	43.4	91.3
0-5세 전체	48.0	68.3	52.4	74.1	53.3	77.3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5 <표 II-1-12> 내용에 추가·보완함.

#### 4)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의 지역 차이

##### 가)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어린이집 정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37%, 39%, 24%의 순이고, 현원을 역시 대도시 39%, 중소도시 39%, 농어촌 23%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대도시에 50%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에는 가정어린이집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법인어린이집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아동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표 II-1-13 참조).

〈표 II-1-13〉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2013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단위: 명	
								직장	
정원									
전체	1,782,459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대도시	660,602	86,834	39,560	18,886	348,253	143,205	1,878	21,986	
중소도시	687,572	47,851	26,746	17,844	354,539	223,184	1,498	15,910	
농어촌	434,285	35,365	73,363	26,090	234,840	57,144	596	6,887	
현원									
전체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26,877	1,509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88,839	1,237	12,099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397	480	5,326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표 II-1-14〉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단위: %	
								직장	
전체	85.4	90.8	77.9	82.3	82.1	86.0	81.2	77.0	
대도시	89.6	92.1	80.3	85.6	86.2	88.6	80.4	77.6	
중소도시	85.1	92.4	82.3	85.0	81.6	84.6	82.6	76.0	
농어촌	79.6	85.7	75.1	78.0	76.9	84.7	80.5	77.3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표 II-1-14〉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지역규모별 분포이다. 대도시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고 중소도시도 8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의 경우 이 비율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5%에 불과하다.

나) 시·도별

다음은 2013년 시·도 단위의 어린이집 설치 관련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로 시·도 단위 보육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II-1-15〉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3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단위: 명, %	
						정원충족률 (C/B)	
전체	2,769,255	1,782,459	1,486,980	64.4	53.7	83.4	

(표 II-1-15 계속)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시·도						
서울	489,543	270,458	242,648	55.2	49.6	89.7
부산	159,465	87,238	74,317	54.7	46.6	85.2
대구	123,728	79,638	63,505	64.4	51.3	79.7
인천	163,530	92,290	81,796	56.4	50.0	88.6
광주	85,828	62,582	51,274	72.9	59.7	81.9
대전	89,639	55,106	47,163	61.5	52.6	85.6
울산	69,574	39,629	34,269	57.0	49.3	86.5
세종	8,052	6,321	5,158	78.5	64.1	81.6
경기	746,577	472,497	397,656	63.3	53.3	84.2
강원	73,455	56,846	45,113	77.4	61.4	79.4
충북	86,592	62,739	51,476	72.5	59.4	82.0
충남	118,938	88,126	69,395	74.1	58.3	78.7
전북	96,006	75,181	59,050	78.3	61.5	78.5
전남	95,456	69,771	56,334	73.1	59.0	80.7
경북	136,156	97,889	73,825	71.9	54.2	75.4
경남	191,336	132,963	106,745	69.5	55.8	80.3
제주	35,380	33,185	27,256	93.8	77.0	82.1
2012	2,816,103	1,721,917	1,487,361	61.1	52.8	86.4
2011	2,777,209	1,621,948	1,348,729	58.4	48.6	83.2

주: 1)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7 <표 II-1-15> 내용에 추가·보완함.

2)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2011-2012)·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전국적으로 아동 수 대비 보육공급률은 64.4%로 나타났다. 2012년의 61.1%에 비하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53.7%로 2012년의 52.8%보다 높아졌다. 반면 정원충족률은 83.4%로 2012년의 86.4%에서 3.0%p 감소하였다.

보육공급률은 시·도별로는 부산시가 54.7%로 가장 낮으며, 서울과 인천 역시 55% 수준으로 나타나 공급률이 비교적 낮음을 나타냈고, 반면 제주도가 93.8%로 가장 높았다. 아동 대비 보육이용률 역시 부산이 46.6%로 가장 낮았고 서울 및 인천 지역의 경우에도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공급률에 이어 이용률도 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정원 대비 현원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경북이 75.4%로 가장 낮고 서울이 89.7%로 가장 높다.

## 나. 보육 아동 현황

### 1) 연령분포

다음은 어린이집 단위 시·도 및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별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만 2세 아동 비율이 27%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만 1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의 순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0세 비율이 2012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만 2세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 비율은 2012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강원도, 전라북도가 만 5세아 비율이 높고, 제주에는 0세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아의 경우 대전과 울산 지역에 그 비율이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영아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용 아동 중 98.8%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중 1세아의 비율은 41.4%로 나타났다. 만 5세아의 경우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경우 국공립,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표 II-1-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2013

구분	단위: %(명)							계(아동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전체	10.0	21.9	27.0	17.2	12.4	10.9	0.7	100.0(1,486,980)
시·도								
서울	9.2	21.1	26.1	17.1	13.0	11.9	1.7	100.0( 242,648)
부산	8.4	23.8	31.0	17.1	9.9	8.9	0.7	100.0( 74,317)
대구	8.1	22.8	29.6	20.2	10.1	8.2	0.9	100.0( 63,505)
인천	9.3	22.3	28.4	17.7	11.8	10.3	0.2	100.0( 81,796)
광주	11.1	21.8	26.0	16.4	12.2	11.8	0.7	100.0( 51,274)
대전	11.4	24.1	28.4	16.2	10.7	9.0	0.2	100.0( 47,163)
울산	8.4	24.1	30.7	18.9	9.7	7.6	0.6	100.0( 34,269)
세종	8.5	18.8	24.1	18.6	16.5	13.5	0.0	100.0( 5,158)
경기	11.1	22.1	27.1	16.7	12.3	10.5	0.2	100.0( 397,656)
강원	8.7	20.1	24.7	17.7	15.0	13.4	0.4	100.0( 45,113)
충북	7.6	19.8	25.2	18.1	15.1	13.9	0.3	100.0( 51,476)

(표 II-1-16 계속)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아동수)
충남	9.1	20.9	25.5	18.0	14.1	12.1	0.3	100.0( 69,395)
전북	11.4	21.1	25.0	14.8	13.1	13.2	1.4	100.0( 59,050)
전남	8.5	20.0	24.3	17.3	15.1	14.4	0.4	100.0( 56,334)
경북	10.8	22.9	27.9	17.5	10.9	9.1	1.0	100.0( 73,825)
경남	10.8	22.9	27.7	17.0	11.4	9.8	0.5	100.0( 106,745)
제주	12.1	21.1	20.9	18.8	15.7	10.8	0.7	100.0( 27,256)
시설유형								
국공립	2.3	12.8	21.7	22.1	20.6	19.3	1.1	100.0( 154,465)
법인	2.7	13.4	24.1	22.0	18.3	17.5	2.1	100.0( 108,834)
법인의외	2.2	11.8	21.6	22.3	19.8	18.2	4.1	100.0( 51,684)
민간개인	4.6	16.6	27.9	22.7	14.9	12.7	0.4	100.0( 770,179)
직장	3.9	18.0	23.6	22.7	18.3	13.1	0.4	100.0( 34,479)
가정	28.4	41.4	29.1	0.8	0.2	0.2	0.0	100.0( 364,113)
부모협동	5.9	13.6	25.0	20.1	18.4	16.6	0.5	100.0( 3,226)
2012	12.0	21.6	25.1	17.4	13.1	10.1	0.8	100.0(1,487,361)
2011	10.9	18.5	25.4	20.2	13.6	10.2	1.3	100.0(1,348,729)

주: 서문화·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9 <표 II-1-16>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2) 다문화 가족 아동

2013년 12월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 아동은 52,942명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52,120명보다 800여명 증가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3.0%로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4.7%인데 비하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2%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도농간 차이를 나타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3%에 불과하고 인천 역시 2.1%로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전남의 경우 그 비율이 거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표 II-1-17 참조).

〈표 II-1-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직장	단위: 명(%)
									(보육아동 대비 비율)
전체	52,942	7,458	6,175	3,057	27,351	8,624	29	248	(3.0)
(비율)	(100.0)	(14.1)	(11.7)	(5.8)	(51.7)	(16.3)	(0.1)	(0.5)	
지역규모									
대도시	15,455	2,816	770	432	8,709	2,604	15	109	(2.3)

(표 II-1-17 계속)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보육아동 대비 비율)
중소도시	16,994	1,930	771	523	9,525	4,158	7	80	(2.5)
농어촌	20,493	2,712	4,634	2,102	9,117	1,862	7	59	(4.7)
사도									
서울	6,201	1,963	69	182	3,055	882	5	45	(2.3)
부산	2,052	377	122	82	1,178	290	-	3	(2.4)
대구	1,776	54	248	73	1,129	267	-	5	(2.2)
인천	2,401	317	25	35	1,498	520	1	5	(2.6)
광주	1,324	75	272	35	713	189	2	38	(2.1)
대전	1,299	52	111	23	731	363	7	12	(2.4)
울산	1,140	99	21	5	822	189	-	4	(2.9)
세종	190	16	50	3	91	30	-	-	(3.0)
경기	12,130	1,839	207	334	6,894	2,811	5	40	(2.6)
강원	1,910	271	512	137	741	241	2	6	(3.4)
충북	2,032	189	530	201	898	200	7	7	(3.2)
충남	3,381	276	699	260	1,660	462	-	24	(3.8)
전북	3,195	284	696	664	1,158	381	-	12	(4.2)
전남	3,906	427	1,457	386	1,303	326	-	7	(5.6)
경북	4,283	673	465	221	2,404	500	-	20	(4.4)
경남	4,666	501	372	266	2,634	878	-	15	(3.5)
제주	1,056	45	319	150	442	95	-	5	(3.2)
2012	52,120	6,331	5,965	2,889	27,005	9,694	13	223	(3.0)
2011	47,012	5,041	5,367	2,521	23,940	9,943	4	196	(3.5)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30 <표 II-1-17>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다문화가족 보육 아동의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2,942명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약 52%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6%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4%, 법인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2%로 나타났다(표 II-1-17 참조).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을 1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총 18,556개소로 전체 시설 수 대비 42.4%이다. 특히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58.2%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육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8,556개 어린이집에서 52,942명의 아동을 보육하므로 1개 어린이집당 평균 2.85명 정도를 보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8 참조).

〈표 II-1-18〉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시설 대비 비율)
전체	18,556	1,848	1,128	622	9,078	5,739	19	122	(42.4)
(비율)	(100.0)	(9.1)	(5.9)	(3.2)	(48.1)	(33.0)	(0.05)	(0.6)	
대도시	6,554	859	251	169	3,373	1,830	11	61	(41.3)
중소도시	7,186	508	221	143	3,421	2,857	4	32	(36.6)
농어촌	4,816	481	656	310	2,284	1,052	4	29	(58.2)
2012	18,899	1,715	1,123	602	9,099	6,244	9	107	(44.4)
2011	18,124	1,529	1,090	573	8,572	6,257	4	99	(45.5)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31 <표 II-1-18>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다. 성과와 과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 보육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부응하여 그간 보육시설의 설치에 우선적으로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 민간시설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여, 2013년 현재 1995년 대비 시설 수는 약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도 급격히 증가해 전체적으로 보육서비스는 취학전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2013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정원은 총 1,782,459명으로(보건복지부, 2013b) 취학전 영유아 276만 9,255명(안정행정부, 2013) 중 약 64.6%를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여기에 유치원 현원을 합하면 전체 취학전 영유아 중 적어도 88%(243만 7,280명) 아동을 수용 가능한 기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린이집 시설 공급 정책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에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시설 공급은 1차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은 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약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총 보육시설 중 국공립 시설이 약 11.3%에 해당하였음에 비해 2000년 6.7%, 2005년 5.0%, 2010년 5.3%, 2013년 5.3%로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성 약화를 우려해 '제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직장,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 이용 아동 비율을 2017년까지 약 33%까지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고,<sup>5)</sup> 국공립 신축 계

확도 2013년부터 대폭 증가시킨 상태이다. 부모들의 보육 수요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이미화 외, 2012: 81), 양육수당의 보편적 지급으로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영아는 가정 내 양육으로 회귀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육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향후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에 대해 이용 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이 '질 높은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인프라 공급의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데, 주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 우선 공급 정책을 포기하여서는 안되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적절한 보육서비스 공급과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서의 공급 방안 마련 등 기관 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영유아 인구나 지역 시설의 정원 충족률을 고려해 지역별로 부족하지 않은 확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보육비용 지원

여기서는 기관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을 기관에 지원하는 비용과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가. 보육 비용

#### 1) 보육료와 지원단가

현재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어있다.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산정하여 시달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며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영아반(만 0세~만 2세)은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a: 98). 2014년 기준 정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2. 3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부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의 경우 월 394천원, 만 1세는 347천원, 만 2세는 286천원, 만 3~5세는 220천원, 장애아의 경우 394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14a: 310).

<표 II-2-1>은 2014년도 기준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이다. 이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높고, 만 4, 5세보다 만 3세의 보육료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2-2>는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이 되며 4세 이상아와 5세의 지원단가가 분리되었고, 2013년 본격적으로 누리과정이 3, 4세로의 확대되면서 3세 이상아의 지원단가가 통일되어 2014년 현재는 2013년과 지원단가가 동일하다.

〈표 II-2-1〉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4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서울		274	263	274	263
부산		286	4세: 265, 5세: 250	265	250
대구		264	250	276	265
인천		274	261	274	261
광주		253	239	267	258
대전		265	248		269
울산	만0세: 394	267	251	282	264
경기	만1세: 347	283	261		286
강원	만2세: 286	259	243	271	261
충북	만3세: 220	266	243	278	272
충남	만4세: 220	269	256	279	271
전북	만5세: 220	270(균: 249)	258(균: 237)	270(균: 249)	258(균: 237)
전남		252	236	264	254
경북		261	244	275	260
경남		259	243	275	267
제주		236	228	261	261
세종		272	259	276	258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2014. 6. 20).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시·도에서는 전체 3~5세아 예산 중 보육료를 제외한 예산에서 관할 시·군·구별로 월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동별로 7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의 일부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나머지 잔액은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하여 각 어린이집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293).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송금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은 교재교구비와 보조교사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294).

<표 II-2-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 이상아	5세아	비고
2014	394	347	286		220		
2013	394	347	286		220		만3-5세 유아 누리과정 실시
2012	394	347	286	197	177	220	만5세 누리과정 도입
2011	394	347	286	197	177		
2010	383	337	278	191	172		
2009	383	337	278	191	172		
2008	372	327	270	185	167		
2007	361	317	262	180	162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6	350	308	254		158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5		299	247		153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2004		257	212		131		

주: 1)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33 <표 II-2-2> 내용에 추가·보완함.

2) 누리과정은 오후반비 별도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 2) 기타 필요경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한다. 필요경비는 주로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분되며(보건복지부, 2014a: 103), 시·도별 기타 비용의 수납한도액은 다음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4

단위: 천원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년)	행사비 (년)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서울	시군구에 위임						
부산	100	국공립: 70 민간: 80	20	40(분기)	20(분기)	1,745원(1식)	-
대구	90(국공립) 100(국공립외)	60(국공립) 70(국공립외)	25	120(년)	80	1,400원(1식)	-
인천	90(국공립) 100(국공립외)	40(국공립) 45(국공립외)	10(국공립외)	국공립: 180 국공립외: 0.1세: 210 2-5세: 180		1천원(1식)	-
광주	신입: 80 재원: 20	60	9	35(분기)	60	1천원(1식)	30
대전	90	국공립: 50 민간: 60	국공립: 18 민간: 25	50(분기)	65	1천원(1식)	20
울산	90	85		60(분기)	100	1,745원(1식)	-
경기	100	시·군위임	20	시·군위임	시·군위임	시·군위임	시·군위임
강원	70(신입생) 30(재학생)	70	15	70(반기)	60	-	-
충북	상해보험료: 10 피복류구입비: 80	국공립: 80 민간: 90	25	40(분기)	50	1천원 (월 2만원)	-
충남	90	90	30	160(년)	70	1천원(1식)	30
전북	50	시지역: 90 군지역: 80	시: 40 군: 50	40(분기)	시지역: 170 군지역: 150	시지역: 30 군지역: 20	30
전남	90	70(국공립) 80(국공립외)	10	50(분기)	90	10	50
경북	100	70	20	160(년)	60	-	20
경남	80	60(국공립) 65(국공립외)	15	30(분기)	75	20	20
제주	55	60	15	50(년)	70	1천원 (월 2만원)	-
세종	90	80	30	50(분기)	100	20	30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2014. 6. 25).

입학준비금은 5~10만원, 특별활동비의 경우 4~9만원, 차량운행비는 1만 5천 원~3만원, 현장학습비는 분기 기준으로 3~8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행사비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큰 경향을 보이는데, 부산의 경우 1년 기준으로 4만 원을 책정하나, 전북의 시지역의 경우 17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아침·저녁급식비의 경우 1식에 1천원 대의 비용을 수납 한도액으로 두고 있다.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경기도, 2014: 6, 서울특별시, 2014a: 14).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표 II-2-4>는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수납액 한도이다. 대부분 피복류와 체육복 비용을 추가적으로 수납하는 지역이 많다. 특별활동비는 6~19만원으로 구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서초구의 경우 6만원이지만 강남구의 경우 19만원이다. 차량운행비는 2~4만원이며, 현장학습비는 대체적으로 연 20만원 대이다. 행사비도 지역에 따라 4~10만원이다. 특성화 비용은 8군데에서 지정하고 있고, 대부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명목이다.

<표 II-2-4> 서울시 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4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종로구	8만(피복류)	11만 5천	4만	연 23만	10만	1천5백(1식)	1만5천 <sup>1)</sup>
중구	8만(피복류)	10만	4만	연 22만	10만	1천(1식)	-
용산구	5만(피복류)	14만	4만	연 22만	10만	1천(1식)	-
성동구	5만(피복류)	10만	4만	분기 6만	-	1천(1식)	-
광진구	20만(피복류)	14만	3만	분기 6만	8만	2천(1식)	-
동대문구	5만(피복류) 4만(체육복)	12만	3만	연 20만	5만	2천(1식)	-
중랑구	1만(보험료) 4만(피복류)	8만	3만	분기 5만 5천	6만	1,750(1식)	2만 <sup>2)</sup>
성북구	5만(피복류) 4만(체육복)	10만	3만	연 20만	5만	1,750(1식)	-
강북구	5만(피복류) 6만(체육복)	15만	3만	분기 6만	7만	1천(1식)	-
도봉구	5만(피복류) 1만5천(체육복)	10만	2만	분기 4만5천	3만	1천(1식)	-
노원구	5만(피복류) 2만5천(체육복)	9만	2만	연 22만	3만	1천(1식)	-
은평구	8만(피복류)	10만	3만	연 22만	5만	1천5백(1식)	-
서대문구	5만(피복류) 3만(체육복)	10만	4만	연 20만	5만	1천5백(1식) 1천5백(1식) <sup>3)</sup>	-
마포구	5만(피복류) 4만(체육복)	10만	2만5천	연 22만	-	1,250원(1식)	-
양천구	5만(피복류) 2만(신학기준비금)	15만	3만	연 20만 연 3만 <sup>4)</sup>	10만	26,250 (25일기준) 26,250원 <sup>5)</sup>	-
강서구	5만(피복류) 5만(체육복)	12만	3만	연 24만	5만	1천 5백(1식)	3만 <sup>6)</sup>
구로구	12만 5천(피복류)	10만	4만 5천	분기 6만	9만	7만 5천	2만 <sup>7)</sup>
금천구	9만(피복류)	9만 4천	2만 5천	분기 5만 5천	6만	2천(1식)	3만 <sup>8)</sup>
영등포구	11만(피복류)	14만	3만	연 24만	8만	1천 5백(1식)	-
동작구	4만(피복류) 5만(입학준비금)	12만	3만	반기 11만 7천5백	10만	1천 3백(1식) 33,800 <sup>9)</sup> 3만9천 <sup>10)</sup>	2만 <sup>11)</sup> 7만 <sup>12)</sup>

(표 II-2-4 계속)

구분	입학준비금 (연)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연)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관악구	5만(피복류) 3만(신학기준비금) 5만(입학준비금)	국공립: 9만 국공립외: 12만	3만	연 23만	7만	1천 5백(1식)	2만
서초구	17만(피복류) 3만(신학기준비금) 5만(입학준비금) 7만(체육복비)	6만	5만	분기 6만	4만	1천 5백(1식)	-
강남구	5만 5만(입소료)	19만	5만	분기 6만	16만	1천(1식)	-
송파구	10만(피복류)	15만	3만	연 24만	8만	1천(1식)	-
강동구	10만(피복류)	14만	3만	분기 5만	7만	1천 5백(1식)	3만

- 주: 1) 별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등  
 2) 별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등  
 3) 방과후급식비  
 4) 방과후 현장학습비  
 5) 방과후 중식비(25일 기준)  
 6) 특별활동비 12만원 한도 내에서 3만원까지 가능  
 7) 보육교사에 의한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8) 특별활동비 범위 내에서 인정  
 9) 시간연장저녁급식비(1식 1,300원)  
 10) 방과후급간식비(초등학생 1식 1,500원)  
 11) 특별활동시 교재교구 및 재료비 등  
 12) 개인소모용품비(문구류, 위생품)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2014. 6. 25).

## 나. 보육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교직원 인건비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본보육료로 나뉘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68). 이외에 농어촌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차량운행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능보장비가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76~398).

### 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및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는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원장의 경우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그리고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

직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4a: 335).

보육교사의 경우 소요 현원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영아반 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데 0세반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1세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2세반의 경우에는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유아반 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3세반의 경우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4세 이상 반은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조건을 충족할 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36).

이외 방과후반 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혼합반을 운영할 시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있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도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36).

## 2)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지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먼저 운영비의 경우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임금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는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원장의 경우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현원을 6등급으로 나눠 월 120만원에서 520만원 사이의 비용을 무상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9).

## 3) 민간어린이집 지원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영아 기본보육료, 교재교구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

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은 지원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은 지원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은 지원단가의 25%를 지원한다. 2014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액은 0세 361,000원, 만 1세 174,000원, 만 2세 115,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14a: 101).

장애아동에게도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데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받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394,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는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197,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14).

〈표 II-2-5〉 연도별 영아 보육비용 구성과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07			2008			2009~2010			2011~2014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39 <표 II-2-5>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II-2-6〉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단위: 명(%)

구분	계	보육료 지원 영아	보육료 미지원 영아 (보육아동 대비 비율)
영아전체	874,975	676,022	4,546 (77.3)
0세	148,273	132,764	1,821 (89.5)
1세	325,921	252,667	1,484 (77.5)
2세	400,781	290,591	1,241 (72.5)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은 보육 아동 대비 77.3%이다. 0세의 경우 약 90%이고, 1세의 경우 77.5%, 2세의 경우 72.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민간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한 어린이집에만 지원한다. 지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5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77).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

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공공형 어린이집(보건복지부, 2014a: 412)은 2014년에는 전체 1,6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4b: 7).

공공형 어린이집 참여 기본요건으로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의 6개월 전의 정원충족률이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b: 9).

또한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으로서 재직 경력,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지자체 특성화 지표가 기본점수 항목이다. 가점 항목으로는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교사 비율,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근무 경력 기간, 원장의 현 어린이집 근속기간, 맞벌이 자녀 재원율, 총 현원 대비 유아현원 30% 이상 충족,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이 포함된다. 감점 항목으로는 월 용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외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과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항목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b: 12).

세부 선정기준은 참여 기본 여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보건복지부, 2014b: 12).

이러한 어린이집에는 규모(정원)에 따라 매월 정해진 일자에 운영비가 차등 지원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 4) 부모 보육료 지원

##### 가) 지원 기준

2014년 부모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아가 대상이다. 0~2세 보육료와 만 3~5세 보육료(누리과정)으로 나누어지며, 영아는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하며, 유아 지원단가는 누리과정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22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14a: 310).

##### 나) 지원 실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인하여 현재 전 연령의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수

혜를 받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수는 147만 4,600여명으로 나타났다(표 II-2-7 참조).

〈표 II-2-7〉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3

예정규모	계	단위: 명,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보육아동(A)	1,477,151	148,273	325,921	400,781	255,786	184,513	171,716
지원아동(B)	1,474,645	146,347	323,921	398,996	254,383	183,494	167,504
비율(B/A)	99.8	98.7	99.4	99.6	99.5	99.4	97.5

주: 방과후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지원 이유별로 지원아동 분포를 보면 영아 보육료의 사유가 약 57% 정도이고,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원 비율이 39%이며, 다문화 아동이 2.4%이고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0.8%이며 법정 아동 지원이 0.7%이다(표 II-2-8 참조).

〈표 II-2-8〉 연령별 사유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3

구분	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율)
전체	1,474,645	146,347	323,921	398,996	254,383	183,494	167,504	(100.0)
법정	9,661	1,360	3,268	5,033	-	-	-	( 0.7)
영아	838,224	142,491	312,988	382,744	-	-	-	( 56.8)
장애아	11,967	232	351	1,084	1,983	2,221	6,096	( 0.8)
다문화	35,521	2,264	7,314	10,132	7,808	4,814	3,189	( 2.4)
누리	575,704							( 39.0)
방과후	3,568							( 0.2)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 다. 성과와 과제

보육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2013년 이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중 거의 100%에 가까운 아동에 보편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는 측면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절감 효과 또한 높게 평가되며,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이윤진 외, 2012: 130). 그러나 '무상보육'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실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담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정원·최효미·김진미·정주영, 2014).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단가와 실제 기관에서 수납할 수 있는 상한액간에 격차가 있고, 이 외에도 기관 이용에 따르는 필요경비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격차도 큰 편이다.

즉 무상보육이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도록 보육비 지원 정책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보육비 지원에는 주로 인건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지원들이 평가인증 제도에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연계하거나, 지원을 차등화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연계를 통해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여 기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시간연장형 보육

#### 가. 현황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4a: 354).

이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시작시간인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인 경우와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이 1명인 경우에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의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6).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4a: 361).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4a: 355). 다른 지원 방식은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도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로 이들 교사에게는 월 4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7).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지원한도액은 162,000원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시간당 3,700원이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222,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14a: 322~323).

2013년 기준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4만 7천명 정도이며, 이는 전체의 3.16%에 해당한다. 이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 4만 4,800명이 이를 이용한다. 지정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3,700여명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b).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10,700여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24% 수준이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은 역시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약 9,900개소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4시간이나 휴일보육 수요나 실제 이용 아동은 소수이다(보건복지부, 2013b).

〈표 II-3-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3

시·도	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단위: 명, 개소(%)
					(전체 대비 비율)
아동 수					
전체	47,030	44,804	1,373	853	( 3.16)
지정	42,394	41,052	489	853	( 2.85)
미지정	4,636	3,752	884	-	( 0.31)
어린이집 수					
전체	10,715	9,891	540	284	(24.48)
지정	9,258	8,705	269	284	(21.15)
미지정	1,457	1,186	271	-	( 3.33)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 07:30)의 인건비를 각각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360). 정부 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만 인건비가 지원되며, 24시간 보육의 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는 동시에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4a: 359~361).

휴일보육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교사에게 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나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로 조정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64).

## 나. 성과와 과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서문희·이혜민, 2013)’ 보고서에서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문제로 이용자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2014년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야간과 24시간 보육 아동에 대해서만 부모 및 보호자의 요건을 지정하고 있을 뿐(보건복지부, 2014a: 359~361) 시간연장 보육(19:30~24:00)이나 휴일보육 등에 대해서는 부모의 취업 등 실수요 여부를 판단할 이용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위한 보육서비스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보육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인식된지 오래이나, 그럼에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보호자 뿐 아니라 영유아라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연장형 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비효율성과 함께 서비스 제공 대상인 아동의 입장에서의 적절한 보육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신청 대상자인 부모나 보호자의 요건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시간제 보육 사업

### 가. 현황

최근 시간선택제 등과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표를 세웠고, 이러한 정책 목표 내에서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2014. 8. 5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2014. 7. 1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간제 보육은 2014년 7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2014년 11월 현재 시간제 보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99개소로, 이중 어린이집은 60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5개소, 기타 5개소이다(표 II-4-1 참조). 시간제 보육사업은 2015년에 본격적 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2014. 11. 1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II-4-1〉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참여 기관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도서관, 어린이회관 등)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소계				
전체	31	2	21	5	1	60	35	4	99

자료: 2014년 11월 1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간제 보육 사업의 운영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형의 경우 이용 대상자는 전업 주부로, 이는 전업 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용 시간은 월 40시간으로, 이용 비용은 시간당 4천원이며 이 중 2천원은 자부담 비용이다(정부지원 50%+본인부담 50%). 한편 맞벌이형의 이용 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원하지만 취업 등 여건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단시간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맞벌이형의 이용 시간은 월 80시간으로,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4천원의 소요비용이며 이 중 1천원은 자부담이다(정부지원 75%+본인부담 25%). 양육수당 지급자는 기본형 바우처를 우선 지급받게 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이다(2014. 7. 1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간제 보육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하여 2015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2014. 11. 1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나. 성과와 과제

시간제 보육사업은 실제 부모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취업상황, 가족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일제 위주의 기관 보육 또는 가정양육으로 양분되기 어려운 부모의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가정 양육이 가능한 가구라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대리양육의 필요에의 대응, 주양육자의 부담 감소, 가정양육 가구 아동의 다양한 경험 기회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종일제 보육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가구의 기관 이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보육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 특히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시범사업 이용자와 서비스 담당기관의 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개발을 위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5. 어린이집 평가인증

### 가. 현황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263).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보건복지부, 2014c: 65, 92)

현재 평가인증에는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의 9가지 필수항목이 있다. 또한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의 2가지의 기본항목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c: 328)

2014년 평가인증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4c: 63~64). 우선 참여 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참여 취소 사유를 참여 변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둘째로 우수사례 항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인정기간을 기존 '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지표평정 및 부적절사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넷째로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사후관리로는 확인점검 제도가 있다. 확인내용은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5항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을 점검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관 종료일부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에서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을 미준수한 경우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을 미준수한 경우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을 감축한다(보건복지부, 2014c: 99~100).

2013년 9월 6일부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 평가결과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세부 공개내용은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종합 평가서,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점수이다.

신규 및 재평가를 포함하여 2014년 9월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73.8%가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이 95.5%로 가장 높고 법인 86.9%, 민간 74.2% 순이다(표 II-5-1 참조).

〈표 II-5-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 2013. 9. 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43,770	2,332	1,439	619	23,632	129	15,619
인증통과 (인증률*)	47,078	2,383	1,674	470	25,316	65	17,170
인증유지 (인증유지율)	107.6	102.2	116.3	75.9	107.1	50.4	109.9
인증유지	32,285	2,228	1,250	423	16,750	49	11,585
(인증유지율)	73.8	95.5	86.9	68.3	70.9	38.0	74.2

주: \*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a). 평가인증 관련 통계. www.kcpi.or.kr에서 인출

한편, 2014년 9월 개최된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 계획을 논의하면서,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부터는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처우개선을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하며, 중장기적으로 평가인증 결과(보육품질 평가)와 재정지원 등의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보육품질’을 제고하는데 평가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2014. 9. 19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sup>6)</sup>

## 나. 성과와 과제

우선 2013년 9월부터 평가인증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은 평소 어린이집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와 함께 향후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이를 통해 기관간 서비스 질 제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효과로 예상된다.

6)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 논의」

그럼에도 평가인증 통과 기관의 점수가 높아 변별력이 떨어지며, 반면 평가인증 통과 기관의 유지율은 73.8%로(한국보육진흥원, 2014a) 평가인증을 대비한 서비스 질 향상의 노력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가인증 통과율은 109.9%에 이르러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뒤지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의 유지율이 74.2%로 떨어진다는 사실은(한국보육진흥원, 2014a) 평가인증이 보육서비스의 실질적인 질 향상보다는 '인증 통과'라는 형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이에 평가인증 통과 자체 보다는 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 질 수준에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 미달 시설 지원 중단 및 퇴출 등) 평가인증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원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보고서에서도 평가인증 관련 향후 과제로 '재정 지원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 바 취사부 인건비, 교재교구 지원 등 소소한 운영비 지원을 넘어선 보육료 지원과의 연계로(서문희·이혜민, 2013: 48)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강력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이행복플랜(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보육품질 제고에의 활용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 가.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배치된다. 원장의 경우 전 어린이집별 1인을 배치하나,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만 1세 미만은 영아 3인당 교사 1인을,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교사 1인을,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은 영아 7인당 교사 1인을 배치하게 되어있다.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은 유아 15인당 교사 1인을,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의 경우 유아 20인당 교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아의 경우 아동 3인당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12.3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교사 1인을 배치하게 되며,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만 한다.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배치하고, 취사부의 경우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배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a: 217).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748,211명이다. 현재 소지자는 1급의 경우 35만명, 2급의 경우 36만 여명이며, 3급 소지자는 3만 2천 여명이다. 자격자 중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27.6%인데, 1급의 경우 27.7%, 2급의 경우 26.6%이나 3급의 경우 36.6%로 급수별 차이를 나타낸다(표 II-6-1 참조).

원장 자격은 2013년 9월말 현재 자격증 취득자는 227,700명이고 이들 중 현직 원장은 43,438명으로 원장 자격증 취득자 대비 비율은 19.1%에 불과하다(표 II-6-2 참조).

〈표 II-6-1〉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3. 9. 30 기준

단위: 건, 명, %

구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전체	889,015	748,211	206,306	27.6
1급	368,267	354,795	98,409	27.7
2급	436,816	361,026	96,055	26.6
3급	83,932	32,390	11,842	36.6

주: \*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3). 내부자료.

〈표 II-6-2〉 원장 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13. 9. 30 기준

단위: 건, 명, %

구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어린이집 원장	246,993	227,700	43,438	19.1

주: \*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3). 내부자료.

2013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30여 만명이다. 이 중 보육교사가 21만 2,332명을 차지하며, 원장 43,550명, 취사부 26,710명, 특수교사 1,776명, 간호사 1,211명, 사무원 1,171명, 영양사 848명 등이다(표 II-6-3 참조).

〈표 II-6-3〉 보육교직원 수: 2013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전체	301,719	43,550	212,332	1,776	529	848	1,211	1,171	26,710	13,592
국공립	26,750	2,302	18,792	725	131	105	159	152	3,014	1,370
법인	18,765	1,437	12,594	741	303	105	137	160	1,928	1,360
법인의외	8,703	864	5,783	89	22	44	59	90	971	781
민간	136,180	14,663	98,843	215	71	475	755	569	12,633	7,956
가정	102,731	23,535	70,074	3	2	6	1	83	7,169	1,858
부모협동	730	129	489	1	-	-	-	5	87	19
직장	7,860	620	5,757	2	-	113	100	112	908	248

주: 보육교사에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 및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2013년 말 현재 현직 보육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 중 47.7%를 차지하며, 2급은 46% 정도이고 3급은 6%이다(보건복지부, 2013b).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및 법인의외 어린이집의 경우 1급 교사의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급 교사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비교적 높다(표 II-6-4 참조).

〈표 II-6-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 자격별 수				비율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전체	101,194	98,373	12,764	212,331	47.7	46.3	6.0	100.0
국공립	12,175	6,396	221	18,792	64.8	34.0	1.2	100.0
법인	7,775	4,627	192	12,594	61.7	36.7	1.5	100.0
법인의외	3,564	2,084	135	5,783	61.6	36.0	2.3	100.0
민간	46,494	46,280	6,068	98,842	47.0	46.8	6.1	100.0
가정	28,082	35,907	6,085	70,074	40.1	51.2	8.7	100.0
부모협동	265	209	15	489	54.2	42.7	3.1	100.0
직장	2,839	2,870	48	5,757	49.3	49.9	0.8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정부는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월 1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409).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나, 어린이집 원장 중 보

육교사를 겸직하거나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는 지급이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14a: 450).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전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게 된 후, 매년 금액이 증가하였다. 교사겸직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월 7만 5천원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보건복지부, 2014a: 235), 직무교육의 경우 1인당 6만원씩 지원되며 승급교육의 경우 1인당 12만원씩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250). 보수교육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가 주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지원 대상은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407).

〈표 II-6-5〉 보육교사 세부 분류

단위: 명

구분	소계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 (30시간 이상)	누리과정보조교사 (30시간 미만)
전체	212,332	195,078	1,531	475	6,467	307	249	1,643	3,685	2,897
서울	35,967	31,411	378	212	1,039	68	137	1,357	635	730
부산	10,707	10,008	44	36	257	24	9	8	197	124
대구	9,418	8,809	32	26	277	8	4	6	177	79
인천	11,233	10,459	62	5	285	19	5	24	182	192
광주	7,274	6,845	36	37	124	19	0	5	143	65
대전	7,150	6,503	36	4	346	2	1	58	134	66
울산	4,715	4,448	32	7	90	11	1	4	64	58
세종	654	605	8	0	9	0	0	0	18	14
경기	57,924	53,677	374	24	1,830	100	53	112	1,067	687
강원	5,919	5,451	91	5	132	3	9	8	120	100
충북	6,764	6,196	22	11	290	3	5	8	138	91
충남	8,823	8,297	44	10	208	1	3	8	129	123
전북	8,466	7,708	67	24	381	5	5	9	174	93
전남	7,312	6,766	36	13	245	1	5	5	137	104
경북	10,966	10,328	66	28	312	6	1	9	132	84
경남	15,325	14,151	123	21	562	33	11	21	192	211
제주	3,715	3,416	80	12	80	4	0	1	46	76

주: 보육교사에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 및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 나. 성과와 과제

아이사랑 플랜 평가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 부문이 성과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지목되었는데(서문희·김혜진, 201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 2013년에는 1인당 12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되게 되고(보건복지부, 2013a), 2014년에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보건복지부, 2014a) 처우개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155만원으로 조사된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이미화 외, 2012), 다소나마 처우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유보 통합 등을 고려해 보육교직원의 자격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과 장시간 근로를 고려할 때, 자격수준별 적정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인증 3차 지표에서 ‘교사처우개선’ 관련 지표가 반영되었는데(한국보육진흥원, 2014b: 19), 지표를 통한 유인 뿐 아니라 물가상승 및 유사업종 인력의 인건비를 고려한 보육단가의 적절한 인상 등 실질적으로 교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가.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부터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 7조 및 시행령 12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서문희·이혜민, 201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sup>8)</sup>

2013년 말 현재 시·도 17개<sup>9)</sup>,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1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중앙정부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시·군·구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2011년부터 중앙정부가 시·군·구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표 II-7-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 특성

단위: 개소

구분	계	설치현황						운영방법		
		단독			복합			부속 사업장	직영	위탁
		자가	임대	무상	자가	임대	무상			
전체	69(66)	10	2	6	5	13	33	69	4	65
중앙	1(1)	-	-	-	-	1	-	-	-	1
시도	17(17)	2	2	1	-	7	5	12	-	17
시군구	51(48)	8	-	5	5	5	28	57	4	47

주: ( )안은 2012년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개소수는 시군구내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2년 48개소에서 2013년 51개소로 3개소 증가하여, 총 3개소가 증가하였다. 증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두 시·군·구 직영으로 2012년 직영하는 곳이 단 한군데였음에 비해 2013년에는 직영이 4개소로 증가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은 2013년 기준 총 1,35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12년 1,011명 대비 총 343명(33.9%) 증가한 수치로 이는 대부분 2013년 시군구에 3개소가 추가 설립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교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고, 보육전문요원이 261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교사, 행정원, 전산원, 영양사가 20~40명 정도이다(표 II-7-2 참조). 2012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인력은 '대체교사'로 223명 증가하였다.

이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은 공통사업과 센터의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공통사업으로는 시설보육지원(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대상 상담 및 교육,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가정양육지원(부모에 대한 상담, 일시보육,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남감 등 대여), 정보사업(보육에 관한 정보

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2014. 6. 11 인출

9) 경기도 2개소, 기타 시·도 각 1개소임.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 보육도서관 운영,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홍보)이 있다<sup>10)</sup>.

〈표 II-7-2〉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계	센터장	보육 전문요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행정원	특수 교사	대체교사	기타
전체	1,354(1,011)	69(66)	261(242)	24(22)	-	18(19)	28(18)	43(38)	602(379)	309(227)
중앙	14( 14)	1( 1)	10( 11)	1( 1)	-	-	1( 1)	-	-	1( 0)
시도	429( 310)	17(17)	70( 61)	7( 8)	-	3( 3)	6( 5)	4( 4)	259(175)	63( 37)
시군구	911( 687)	51(48)	181(170)	16(13)	-	15(16)	21(12)	39(34)	343(204)	245(190)

주: ( )안은 2012년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 나. 성과와 과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기관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성과로 보여진다.

지역내 기관 보육을 지원하는 기능 뿐 아니라 영아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구가 활용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자원 중 문화센터가 28%에 이룸에 반해 ‘보육정보센터’의 활용률은 5.1%에 불과하였다(이정원, 2013).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다양한 outreach형 사업을 개발해 기관과 가정의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명칭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휴일 이용이 가능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8.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가. 현황

정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서문희·최혜선, 2010: 25). 최초 도입 당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0)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2014. 6. 11 인출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수준도 차상위 이하로 한정하여(서문희·최혜선, 2010: 25) 지원대상은 선별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만5세 이하로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가구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301). 2014년 현재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이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4a: 325).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의 세 종류인데(보건복지부, 2014a: 325),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b).

2012년에는 일반아동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영아 차상위까지가 지원 대상이었으므로 총 92,818명만이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서문희·이혜민, 2013), 지원이 보편화된 2013년 12월 기준 총 1,053,071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11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밖에 장애아 양육수당 2,112명(2012년 2,258명), 농어촌 자녀 양육수당 5,301명(2012년 7,577명)으로 2012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표 II-8-1 참조).

〈표 II-8-1〉 2013년 양육수당 지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13. 12							
	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취학전
전체	1,060,484	385,585	346,952	145,046	63,164	38,360	40,445	40,929
영(유)아	1,053,071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장애아	2,112	6	200	557	535	335	261	215
농어촌	5,301	3,252	1,310	541	103	48	47	-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아동 중 12개월 미만(0세아)의 비중이 가장 커서 36.3%를 차지하며, 12~24개월 미만아(1세아)가 32.8%, 24~36개월 미만아(2세아)가 13.7%로 취학전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으나 2세 이하 영아가 지원아동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2.8%).

## 나. 성과와 과제

2013년은 무상보육과 더불어 양육수당 전연령, 전계층 지원을 달성한 해이다.

정책적으로 가구 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이긴 했지만 일정 부분 해소하였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2013년에는 대상 가구소득 및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육수당은 특히 영아무상보육료 지원으로 가수요가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상당 수를 다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12년 12월 기준 17만 7천여명의 0세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보건복지부, 2012), 양육수당이 보편화된 2013년 3월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아는 7만4천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1)</sup> 비록 기관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작 시기도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 102).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통해 기관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부모의 진정한 양육방식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양육수당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선 양육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기관 이용 보다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은 금액 수준에 따른 저소득층 유인 효과를 우려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서문희·이혜민, 2013: 136). 이와 함께 양육수당을 받는 유아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서문희·이혜민, 2013: 137) 보편적 양육수당 지급이 고소득층에는 일정부분 사교육비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양육수당은 영아를 둔 가정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기관 이용이 적절한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9.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가. 현황

2012년부터 그동안 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3. 25).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과 소규모 어린이집(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sup>12)</sup>)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서문희·이혜민, 2013: 55).

대표적인 농촌 보육사업인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 정의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1)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은 2009년~2011년 3개년간 25개소 설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 후에는 2012년 5개소, 2013년 3개소가 추가 설치가 추진되었으나,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 설치된 소규모어린이집 중 4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29;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다음 <표 II-9-1>과 같다.

<표 II-9-1>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1,183	6,542	1,938	14,916
국고	910	4,810	1,482	11,336
지방비	273	1,732	456	3,5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년도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 p. 2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 설치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하며, 운영비는 국비를 정액 지원한다. 운영비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월 10만원, 보육교사 교통비 월 10만원을 보조하며,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를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3~5).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중 반을 맡고있는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매월 11만원을 지원하는 수당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30-31).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40~60%, 지방비 40~60%로 차등지원하며, 2014년 총 예산은 581억 5천 4백만원이다. 이중 국고 지원은 279억 1천 4백만원이다.

2014년 5월에는 일손이 바쁜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지 9개소를 선정하였다(2014년 5월 21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2) 2012년까지 추진한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을 2013년부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으로 변경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개소의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년에는 2017년까지 2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4년에는 50개소 설치로 대폭 하향되었다. 즉, 수요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 나. 성과와 과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지역은 넓으나 아동 수가 부족해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등원해야 하는 농어촌 보육 여건의 특성에 맞춰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델로 도입되어 농어촌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서문화·이혜민, 2013). 그럼에도 일부 특수한 지원 외에는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등 농어촌 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된 만큼 기존의 어린이집 유형의 운영과는 차별화되는 지침 마련과 운영의 융통성 제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 가. 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시설보육 외의 돌봄 수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2006년 2개소의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여성가족부, 2014b: 8).

사업 추진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서비스 전달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이다(서문화·이혜민, 2013: 56). 2007년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업이 실

시되기 시작해, 2008년 65개소로 확대되었고, 2010년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신규 실시되어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상에서 모든 취업부모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이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14b: 8).

2014년에는 영아종일제 돌봄대상 연령을 종전 만 0세(생후 3~12개월)에서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하며(여성가족부, 2014a) 정부지원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성하여(여성가족부, 2014a: 1)<sup>13)</sup> 취업부모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4c: 7). 이와 함께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종합형(기본적 +가사서비스)’, ‘보육교사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14a).

〈표 II-10-1〉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20,147	40,189	43,464	70,818(추경 포함)	79,194(△11%)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7 <표 II-9-1> 내용에 추가함.

자료: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sup>14)</sup>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다(표 II-10-1 참조).

아이돌보미 양성은 중장년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11,37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신규양성 목표는 2013년 8,720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이용자 모두 89%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2011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돌봄서비스를

13) 201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는 ①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저소득 가정, ②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⑥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⑦ 전업주부 일반가정 순이다. 2013년에 비해 일반 맞벌이 가정이 장애부모 가정에 비해 상승함.

14) 4,883백만원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8).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만족도가 48.2%로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sup>15)</sup>

## 나. 성과와 과제

그간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아, 아이돌보미를 중년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로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는데(서문희·이혜민, 2013: 58), 2014년 종전 유지되던 시간당 수당을 인상한 것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한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한단계 나아간 성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당 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베이비시터 급여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이며, 민간 베이비시터 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sup>16)</sup>를 고려할 때 서비스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간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해소하여 중장년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로 육성함과 함께 수요자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한 것도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이로 인한 출산율 제고 등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용기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을 종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까지 확대한 것은 그동안의 불만에 적극 반응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 한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구소득 수준에 정부지원단가를 연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간은 동일하게 48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월 120~200시간 이하로 지원되고 초과시간은 전액 가구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영아종일제는 지원 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sup>17)</sup>, 종일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저소득 취업모 가구를 위해서 정부지원시간도 소득계층에 연계하여 시간을 차등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12. 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1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12. 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1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12. 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

## 11. 보육 재정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재정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각 지방 정부 특수사업, 그리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3~5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재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보육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관련된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특수사업 관련 재정 현황은 별도의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현황

2013년에 이어 전연령, 전계층에 대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2014년 국고 지원 사업 중앙정부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1조 1,272억이 증가한 5조 2,738억여원이다(보건복지부, 2014d). 국고 지원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이 6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3년(62.6%)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이 양육수당 예산으로 23.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 예산이 8.9%를 차지하여, 이들 세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체 95%에 달한다. 보육료 지원 예산과 양육수당 지원 예산 부문은 전년 대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반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절대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10.7%→8.9%)(표 II-11-1 참조).

〈표 II-11-1〉 국고 지원 예산: 2009~2014

구분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율)
전체	2,127,510	2,478,380	3,028,567	4,146,625	5,273,819	(100.0)
어린이집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	349,528	395,023	423,152	444,463	467,111	( 8.9)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	-	-	3,800	3,800	( 0.07)
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2,391,291	2,594,419	3,329,228	( 63.1)
어린이집 기능보강	9,438	14,650	11,867	24,060	42,432	( 0.6)
보육 인프라 구축	12,181	16,250	15,377	38,490	18,268	( 0.3)
어린이집 평가인증	3,401	4,975	6,026	6,668	8,600	( 0.2)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55,093	23,077	78,207	153,775	189,061	( 3.6)
양육수당	65,664	89,794	102,646	880,950	1,215,319	( 23.0)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9 <표 II-10-1>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b). 보육통계.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은 증가하여(769천명→807천명) 영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3~4세 보육료는 4세아에 대해 '14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됨으로 인해 예산이 감소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보다 지원 대상은 감소하였으나(1,203천명→1,012천명) 총예산은 2013년보다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4d). 이는 지원대상이 감소했으나, 지원대상 중 월 20만원 지원되는 영아는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11-2〉 국고지원 보육사업 증감 및 지방 정부 예산: 2010~2014

단위: 백만원

내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운영지원 인건비	766,876	813,638	867,084	905,047	1,072,261
0~4세 보육료	1,856,036	3,499,6426	4,525,895	4,995,153	-
5세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248,963	205,361	27,277 (599,600)	-	-
장애아무상보육	94,721	88,778	87,680	79,886	-
두자녀보육료	173,235	-	-	-	-
보육료 지원 기본보조금	934,915	-	-	-	-
맞벌이 보육료	19,700	88,820	92,002	-	-
다문화가족무상보육	-	23,447	19,364	-	-
시간연장보육료	-	-	68,603	67,303	-
농어업인 보육료	-	-	19,850	-	-
기타	-	-	-	8,873	-
소계	3,327,570	3,915,155*	4,840,670	5,151,215	5,051,939
어린이집 기능 보강	17,902	25,900	23,734	47,220	84,864
인프라 구축 등 기타	7,362	19,335	22,785	36,516	25,612
어린이집 평가인증	3,401	4,975	6,026	6,668	8,600
시간 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	-	-	-	7,600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	32,473	31,320	127,015	234,979	340,265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6,347	31,022	58,635	79,188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136,764	186,905	213,846	1,778,629	1,887,141
계	4,288,947	5,018,600	6,132,183	8,218,859	8,557,370

주: 1) 국고지원 사업 증감과 지방정부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2)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9 <표 II-10-2> 내용에 추가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14f). 2014 보육정책 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14g). 2014 보육 예산(안) 내부자료.

2014년 예산편성기준 국고보조율은 2013년 평균 49.4%에서 평균 61.6%로 높아졌다<sup>18)</sup>. 다만 서울은 25~45%, 지방은 55~75%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4d). 2014년 국고지원 보육사업 예산은 국비 5조 2,739억원에 지방비

3조 2,836억원, 총 8조 5,574억원 정도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4f: 28). 여기에는 3~5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각 지방정부 특수사업 예산은 제외되어 있다.

한편 2013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정부사업과 지자체특수시책을 합한 2013년 보육예산은 9조 5천억 수준으로 GDP 대비 0.73%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3b). 2013년 유아교육 예산은 총 4조 1,397억원으로 집계되므로<sup>19)</sup> 2013년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총 13조 6,434억원으로 2013년 GDP 13,006,364억원<sup>20)</sup> 대비 약 1.05%정도로 볼 수 있다. 2014년 보육예산은 정부사업 총액인 약 8조 5,574억원과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 예산 약 1조 844억원의 합인 약 9조 6,417억원으로 이는 2014년 명목 GDP 대비 약 0.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sup>21)</sup>

<표 II-11-3> GDP 대비 보육, 총 보육·유아교육 예산: 2010-2014

구분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사업(A)	44,144	50,192	61,325	84,671	85,574
지자체특수시책(B)	12,007	15,731	9,889	10,363	10,844
계(C=A+B)	56,121	65,923	71,241	95,037	96,417
(GDP 대비 비율) (C/GDP)	(0.48)	(0.53)	(0.56)	(0.73)	(0.65)
유아교육 예산(D)	15,000	19,239	27,045	41,397	53,042
총보육·유아교육 예산 (E=C+D)	71,121	85,162	98,286	136,434	149,459
(GDP 대비 비율) (E/GDP)	(0.617)	(0.687)	(0.803)	(1.05)	(1.01)

주: 1) 2011, 2013 보육예산은 보건복지부(2011; 2013). 보육통계.

2) 유아교육예산 중 2010-2011은 서문희·이혜민(2013)의 p.60 <표 II-10-3> 참조, 2012는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a)의 p.63 <표 II-8-2> 참조, 2013-2014는 교육부(2014). 유아교육 예산 내부자료 참조.

자료: 교육부(2014). 유아교육 예산(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4d).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4e).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14f). 2014 보육정책 참고자료(내부자료).

최은영 외(2013a).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2014. 6. 5). 보도자료 「2014년도 1/4분기 국민소득」

18) 보건복지부(2014g). 2014 보육 예산(안)(내부 자료)의 수치로 산출함.

19) 교육부(2014). 유아교육 예산(내부자료).

20) 보건복지부(2013b). 보육통계.

21) 2014년도 GDP는 2014년도 1/4분기 명목 GDP(369.3조)×4로 추정함.

덧붙여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지원하기 위해 소요하는 예산은 2014년 기준 약 1조 6,341억원으로<sup>22)</sup> 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예산으로 산정할 경우 2014년에는 최소 11조 2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보육에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 전체 예산은 2013년 기준 보육 약 9조 5천억, 유아교육 약 4조 1,397억으로 총 13조 6,434 억원이 보육·유아교육에 투입되었다. 이는 2013년 명목 GDP 대비 1.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2014년은 2013년 대비 약 1조 이상 증가한 14조 9,459억원으로 추정 GDP 대비 1%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2013년에 이어 OECD 최소 권고 수준인 1%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 나.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2010년 5조 6천억에서 2014년 9조 6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 포함)이 실시되면서 GDP 대비 비중이 0.73%까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b). 이처럼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구성항목간 비중을 보면 부모의 부담 완화에 대부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보육 예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반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원 양성 지원처럼 보육인프라 구축이나 국공립 신축이나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 예산은 총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모부담 완화라는 측면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나,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보육 실시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더라도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의 절대액 수준이 커질 수 있어 지방 보육예산조달의 안정성이 문제되는 만큼,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4년에 2013년 대비 국고보조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2) 교육부(2014). 유아교육 예산(내부자료).

이밖에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의 예산 추이를 보면 정부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정부사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보육사업은 침체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2. 주요 지표 및 소결

영역별 주요 성과지표를 보면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재정, 평가인증 등은 연차별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2-1〉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주요 지표

영역	세부지표명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기초자료 출처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전년도)	49.2	73.5	90.8	99.8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아동비율(전년도)	68.7	73.5	90.8	99.8	보육통계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	-	5.0	-	실태조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전년도) <sup>1)</sup>	5.8	6.9	28.0 (13년 3월 기준)	32.5 (13년 12월 기준)	복지부
	양육수당 지원액(당해년도)	20-10만원	20-10만원	20-10만원	20-10만원	복지부
보육재정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sup>2)</sup> (당해년도)	0.211	0.245	0.325	0.369	보육통계
	GDP대비 총보육재정 비율 <sup>3)</sup> (당해년도)	0.53	0.56	0.73	0.65(추정)	보육통계
	GDP대비 총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 <sup>4)</sup> (당해년도)	0.687	0.803	1.05	1.01(추정)	복지부 교육부
	아동1인당 총 보육예산(당해년도) <sup>5)</sup>	4,489천원	4,885천원	6,459천원	7,911천원	복지부, 보육통계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전년도) <sup>6)</sup>	56.9	58.4	61.1	64.4 (54.9)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률(전년도) <sup>7)</sup>	46.8	48.6	52.8	53.7 (45.6)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전년도) <sup>8)</sup>	10.8	10.6	10.1	10.4	보육통계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sup>9)</sup>	3.0	3.3	3.2	3.2	보육통계
평가인증	평가인증어린이집 비율(당해년도) <sup>10)</sup>	70.0	77.5	85.0	107.6	한국보육 진흥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유지율(당해년도) <sup>11)</sup>			68.0	73.8	홈페이지

(표 II-12-1 계속)

영역	세부지표명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기초자료 출처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당해년도)	11만원	11만원	11만원	11만원	보육사업 안내
	근무환경개선비(당해년도)	-	5만원	12만원	15만원	보육사업 안내
	누리과정 수당(3-5세)(당해년도)	-	30만원	30만원	30만원	보육사업 안내
	수당 지급 교사 비율(당해년도)	22.4	100.0	100.0	100.0	-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sup>12)</sup>	0.68 (0.26)	0.72 (0.29)	0.73 (0.25)	0.72 (0.25)	보육통계

- 주: 1) 0~6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양육수당 지급 대상 비율로 산출.  
 2) GDP 대비 보육 재정 중 국고지원예산액 비율로 산출. 2014년은 추정치임.  
 3)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 포함. 2010~2013년 보고서 자료를 보육통계 자료로 대체함. 2014년도는 추정치임.  
 4) 2014년은 추정치임.  
 5) 2014년도는 보육료 지원대상아(약 101만 1천명-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기준)을 대상으로 산출한 2014년 1인당 총 보육예산임. 보육예산은 교육부 지원 예산은 제외함. 보육예산에 양육수당 비중이 증가하였으므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아(약 101만 2천명-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기준)를 합한 총 202만 3,000명에 대한 1인당 보육예산을 산출할 경우 약 395만 6천원이 1인당 보육예산임.  
 6) 0~5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으로 산출. ( )안은 0~6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임.  
 7) 0~5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 현원으로 산출. ( )안은 0~6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임.  
 8) 어린이집 이용아 중 국공립 이용아 비율로 산출  
 9) 어린이집 이용아 중 시간간장형 보육 이용아 비율로 산출  
 10, 11) 2014. 9. 30일 기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련 통계(www.kcpi.or.kr에서 인출).  
 12) 보육교사 수 중 대체교사 비율로 산출(전년도 기준: 2010~2013).( )안은 전년도 보육교사 수 대비 당해년도 지원대상 대체교사 수임.

정부는 부모 보육료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표상으로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데(서문희·이혜민, 2013: 61-62),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 비율 및 전액 지원 아동 비율은 2012년 말에 90.8%였으나 2013년 말 현재는 99.8%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전 소득계층, 전 영유아로 확대된 양육수당도 수급 아동 비율이 0~6세 아동 인구의 32.5%에 달하여 저소득 가구의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예산 기준으로 보육재정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면 GDP(추정)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0.369%,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65%(추정치)이

다. 이는 2013년도 0.73%에 비해 약 0.8%p 가량 하락한 수치인데, 이는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 규모가 증가하여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총액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아교육 예산을 포함한 총보육·유아교육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2013년 1.05로 OECD 권고치인 최소 1% 수준을(OECD, 2006; 서문희·최혜선, 2010: 30에서 재인용) 초과하였고 2014년에도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4년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에서 예상한 보육료 지원 대상아 1인당으로 계산되었는데, 약 791만 1천원으로 2013년 64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단, 1인당 지원액은 2014년 말 실제 보육료 지원아동 수가 확정되면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어린이집 공급률'을 보면, 2013년 0~5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을 의미하는 '어린이집 공급률'은 64.4%로<sup>23)</sup> 2012년(61.1%) 대비 증가하였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53.7%로 2012년 52.8%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현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현원 비율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2013년 기준 10.4%로 2012년 대비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시간연장 아동은 전체 아동의 3.2% 수준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현재 인증 통과율은 한 기관이 재인증 받은 횟수를 포함해 107.6%로 100%를 초과하였고, 인증유지 비율은 73.8%로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평가인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과율과 유지율 모두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2년부터 모든 교사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2013년에 일반교사 수당이 12만원으로(서문희·이혜민, 2013: 62), 2014년 1월부터는 15만원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14a: 409). 2013년 기준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0.72%로 전체 보육교사 212,332명 중 1,531명이 대체교사였다. 2010년 대체교사 1,141명에서 2011년 1,295명, 2012년 1,492명, 2013년 1,5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0b~2013b) 전체 보육교사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0.7%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교사의 원활한 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은 부족한

23) 단, 이는 0~5세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공급률로 실제 영유아 인구 모두를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 0~6세에 대비한 어린이집 정원(공급률)은 54.9%, 이용 인구도 45.6%로 감소해 차이가 있다. 대상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공급률, 이용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본 보고서는 6년 연속보고서의 5년차 보고서로 기존의 산출방식을 따랐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2013~2014년의 보육정책은 주로 부모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하여 보육비용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에서의 양적 성과가 두드러지며 비용 지원의 양적 확대로 보육재정도 OECD 권고 최소 기준에(OECD, 2006; 서문희·최혜선, 2010: 30에서 재인용) 거의 도달한 양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또한 그간의 어린이집 양적 확대로 인해 공급률과 이용률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체 또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만3~5세 유아 대상 기관인 유치원의 공급률과 통합하여 보면 현재 어린이집 공급 수준은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될 수 있는 점은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10~11%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 측면에서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보육기관의 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다소나마 보수 현실화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표의 변화가 엿보인다. 즉, 농어촌 등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만이 아닌 모든 보육교사에 대해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 수당이 도입된 후 매년 증액되었고, 누리과정 수당이 비교적 큰 인건비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보수 외 교사의 근무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 원활한 휴가 사용이라고 할 때, 대체교사의 수가 전체 보육교사 대비 0.72%에 불과하여 교사의 휴가를 지원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이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제 3장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예산을 수집, 정리하고 일부 지방정부의 사업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 1.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개요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약 총 9조 6,417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2년부터 5세 보육료 지원금이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서문희·이혜민, 2013: 65), 0~2세 무상보육, 양육수당 대상 확대 등으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조 이상 증가하였고(서문희·이혜민, 2013: 65),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액은 약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반회계 이외에 3~5세 누리과정, 3~5세 종일반비 지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4년에는 1조 6,341억원 규모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11조가 넘는 수준이며, 2013년에 대비하면 약 1조 이상이 증가하였다. 국고사업비와 지방의 특수시책사업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특히 누리과정 지원금이 2.3배 정도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다.

〈표 III-1-1〉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2~2014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A)	특수시책사업비			계(A+B)	국고사업 대비 특별사업비(B/A)	누리과정 지원금(C)	총계(A+B+C)
		시·도	시·군·구	소계(B)				
2014	8,557,370 <sup>2)</sup>	653,752	416,732	1,084,360 <sup>3)</sup>	9,641,730	12.7	1,634,104	11,275,834
2013	8,341,814	594,743	441,599	1,036,342	9,378,156	12.4	700,800	10,078,956
2012	6,132,183	533,835	625,497	1,159,332	7,291,515	18.9	455,967	7,747,482

주: 1)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수시책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비의 시·군·구 분담금과 시·군·구 특수시책사업비임.

2) 보건복지부(2014g). 2014 보육 예산(내부 자료).

3)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63 <표 III-1-1> 내용에 2014년 자료 추가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보건복지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내부 자료).

보건복지부(2014f). 2014 보육정책 참고자료(내부 자료).

교육부(각 연도). 유아교육 예산(내부자료).

2014년도 시·도와 시·군·구 특수사업 예산은 각각 약 6,556억원, 약 4,287억원으로 총 1조 8백억원을 조금 넘어서고 있다(보건복지부,2014e). 시·도 본청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시·군·구 예산은 감소하여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시·도 본청 예산 부담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자체 특수사업 예산은 국고 지원사업비 8조 5,574억원의 약 12.7%를 차지하여 전년과(12.4%)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III-1-1 참조).

<표 III-1-2>에서는 2014년 시·도별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살펴보았다. 시·도 및 시·군·구 사업은 사업별로 광역과 기초 단체의 재정 부담률이 다른데, 여기서는 실제 부담액을 나타낸다(서문희·이혜민, 2013: 63-64).

<표 III-1-2> 시·도별 보육특수시책사업 예산 현황: 2014

단위: 백만원, %

구분	특수시책사업 예산		
	시·도	시·군·구	소계
전체	655,615	428,745	1,084,360
서울	249,166	166,038	415,204
부산	12,553	2,604	15,157
대구	4,797	5,480	10,277
인천	15,743	28,506	44,249
광주	3,962	2,895	6,857
대전	17,661	7,200	24,861
울산	13,487	10,574	24,061
세종	3,631	-	3,631
경기	204,138	76,543	280,681
강원	1,863	12,013	13,876
충북	3,903	22,034	25,937
충남	9,018	29,687	38,705
전북	3,279	11,166	14,445
전남	8,424	5,537	13,961
경북	98,438	13,473	111,911
경남	5,392	23,282	28,674
제주	160	11,714	11,874

주: 1)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 부담금과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가 포함됨.

2)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64 <표 III-1-2> 내용에 2014년 자료 추가·일부 활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4e).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내부 자료).

## 2. 시·도 특수보육시책

제 2절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을 살펴 보았다. 먼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 개요를 파악하고 각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 가. 개요

특수보육시책은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까지 비교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또한 개괄적 비교는 비교 자체가 한계를 가질 경우가 많다(서문희·이혜민, 2013: 65). 특수시책 사업은 시·도(관할 시·군·구의 지방비 포함)에서 순수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고유 사업을 말하며, 시·도 본청예산만으로 하는 사업, 시·도와 시·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우선 17개 시·도 본청 예산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본청 자체의 사업도 다양하다. 시·도별 특수보육시책의 내용과 양이 차이가 많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는 별도의 보육사업안내를 발간하고 있을 정도로 시·도 특수보육시책의 종류가 많고 예산액도 크다. 한편 시·도 본청 예산으로 추진되는 특수보육시책이 없는 시·도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특수보육시책이라도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 매칭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표 III-2-1>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시·도 본청 예산 사업

구분	특수보육시책
서울	천 기저귀 지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서울상상나라 건립운영, 보육시설 기능보강,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보육포털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영유아 생태체험 프로그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 운영,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
부산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수당,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수당,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 초등학교 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쿨 운영,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유관기관 단체지원,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 보육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자원봉사대학생 지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및 평가인증, 맞춤형 보육장학제 운영

(표 III-2-1 계속)

구분	특수보육시책
대구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시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인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보사업, 보육시설지원 사업, 컨설팅사업, 육아지원사업, 교재교구 대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만5세아 공통과정 직무교육
광주	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지원, 보육인 역량증진, 보육시설 아동 현장학습, 보육시설 안전공제, 보육도우미파견, 보육교사 명절수당
대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원 교육, 영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시 영유아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 및 전시회, 보육도우미 인력은행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지원, 보육아동 작품전시회 및 장기경연대회, 보육시설 도서구입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시간외 근무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비운영비, 영유아보육수범도시육성 홍보물 제작, 보육사업지침 및 교재인쇄, 보육정책위원회회의참석 수당, 보육사업추진 여비, 어린이집연합회(사회단체보조금)
울산	-
세종	보육의 날 행사,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보육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새싹한마음가족축제, 어린이집 교사 교육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장기근속수당, 도시지역근무수당,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
경기	보육정책위원회, 경기 보육인대회, 보육교직원 연찬회, 보육교재교구 경진대회,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설치 운영, 아이사랑 육아 사랑방 설치운영
강원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 동절기 난방비,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장애아전담시설 보육교사 수당,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보육교사대체인력 지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어린이집 보육품질제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
충북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뮤지컬 순회공연,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평가인증 조력 사업지원, 보육시설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보육시설 도서관난감 구입,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시설 참여 수수료 지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 보육사업 안내 책자 유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충남	-
전북	보육인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양육기술향상교육, 보육시설 기능보강,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
전남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지원,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 어린이집원장 연찬회, 다문화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경북	어린이집 연합회 운영, 어린이집 분과 위원회 워크숍, 우수 교재교구 경진대회 지원, 장애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 어린이집 활성화 프로그램, 보육정책 홍보, 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부모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교직원 순회 교육,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남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 보육시설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표 III-2-1 계속)

구분	특수보육시책
	유아축구 대회 지원, 제주 삼다 공동 육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 제주 센터 지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 문화체험사업,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 원장 교사 역량 강화사업

자료: 보건복지부(2014e). 내부자료.

## 나. 시·도별

여기서는 기초자치체(시·군·구) 자체 특수보육시책을 제외한 시·도와 시·군·구 매칭 사업과 시·도 본청 자체 특수보육시책 중 예산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시책이 있는 몇몇 시도만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1) 서울시

서울시의 2014년도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총 4,152억원 수준인데(표 III-1-2 참조)는 이는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예산 총액인 1조 704억원 중 38.8%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예산 규모이다. 그만큼 서울시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규모가 큰데, 그 중 2014년 기준 가장 예산이 많아 소요되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예산규모가 큰 핵심 사업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크며 이외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제 운영 등이 넓게 보면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서울시 본청 예산 규모가 875억원 수준이다.

서울시의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다. 각 동마다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여 2012년 80개소, 2013년 100개소, 2014년 역시 100개소 등 2012~2014년간 28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b). 서울시 2014년도 국공립 확충 예산은 본청 기준 6,893억원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4e).

일반 어린이집 운영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014년 본청 예산에만 758억원이 배정되어 있고(보건복지부, 2014e), 이는 상당 부분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및 비담임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근무수당 같은 인건비 지원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부모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법정 저소득층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다. 이는 무상보육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저소득층에 한정해 완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67).

한편 서울시 특색 사업으로는 천 기저귀 지원, 보육시설 배상보험지원, 서울 상상나라 건립운영,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이 있다. 2014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 중에서는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에 가장 큰 규모인 5억원이 배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e).

## 2) 부산시

2014년 부산시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총 151억 6천만원 수준인데, 이중 부산시 본청의 비중이 82.8%에 달한다. 이렇게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대부분이 부산시 본청사업 예산이며, 이중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액이 74억 원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평가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수당 예산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13억 7천만원 수준임). 그간 비중이 컸던 부산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도 9억 4천만원 수준에서 2014년 1억 6천 5백만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보건복지부, 2014e). 이는 중앙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서문희·이혜민, 2013: 67). 2014년 중앙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23억 784만원이며, 이 중 시비가 7억 3,701만원으로(부산광역시, 2014b: 51) 부산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의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도 신규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는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 '자원봉사대학생 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보육교직원 승급 교육'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e). '시간제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여름 휴가 등을 지원하는 목적의 기존 대체교사와는 달리, 질병·교육·경조사 등의 상황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일 4시간, 주 20시간을 지원하며 사업비 5억 원을 시비로 지원한다(부산광역시, 2014a 28). 어린이집 CCTV 설치는 12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설치비를 50% 지원한다. 2014년도 총 예산은 1억원이다(부산광역시, 2014a).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사업

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한 지원으로 2014년에는 1,215개소를 대상으로 6억 5,900만원의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현장학습, 문화체험, 재롱잔치 등 각종 행사비를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여 내실있는 보육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부산광역시, 2014a: 22).

### 3) 인천시

인천시는 시·도, 시·군·구 특수시책 사업비 규모가 442억 5천만원 정도로 기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크다. 사업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은 예산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할애되어 있고, 법정 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에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e).

예산 규모가 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법정 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 담임교사에게는 1급의 경우 14만원, 2급의 경우 13만원, 3급의 경우 12만원을 지급하여 2013년 대비 각 2만원씩 상향되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사 급수에 상관없이 19만원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독립반 및 3-5세 혼합반, 그리고 장애아 2인 이상반의 교사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한다. 기타혼합반 및 장애아 1인반의 경우 월 14만원을 지급한다(인천광역시, 2014: 40).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시설은 80%만을 지원하여 미지급분은 원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장은 나머지 20%에 대한 지급 지출서류는 계좌이체 증빙내역을 구비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 2014: 44).

인천광역시에서는 부모 부담 경감 지원 사업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필요경비 지원 사업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단가 간의 차액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2~5세에게 실시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이다(인천광역시, 2014: 34).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취사부)에게 각 1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여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인천광역시, 2014: 57-58).

#### 4) 대전시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 어린이집의 8,600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액은 51억 6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대체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등으로 지원액수는 매월 5만원이다(대전광역시, 2014: 15).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에서는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월 60,000원), 유아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월 50,000원), 영아반(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대상) 교사 수당(월 50,000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동일시설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월 30,000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연 1회 100,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어린이집당 1명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지원(월 30,000원), 영유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월 20,000원) 등(대전광역시, 201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지원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무상보육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사라진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대전시에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의 보육료 부모부담 수납한도액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4: 11). 예를 들면 만 3세아 정부지원단가는 22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265,000원이면 차액 45,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아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월 15,000원 지원하며,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에는 입소료 90,000원과 현장학습비를 분기당 50,000원 지원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4: 13-14).

#### 5) 경기도

2014년도 경기도 특수시책 예산은 총 2,807억 수준으로 전체 시·도중 서울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그중 본청 예산이 2,041억 수준으로 약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e).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역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구분되며, 이외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인건비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e).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00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도비지원 설치 어린이집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근무중인 특수교사, 치료사,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 원장, 1급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1인당 월 15만원,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12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 2014: 3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민간·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역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처우개선비에 차등을 둔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반 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인증어린이집 교사 20만원, 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17만원이고, 누리과정 교사는 각각 11만원, 6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도입되었고 해당 교사 규모는 2014년 기준 4만 8천여명이다(경기도, 2014: 36).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영아 전문교사<sup>24)</sup> 월 5만원, 다문화 전문교사<sup>25)</sup>(다문화 아동반 담당) 월 5만원, 장애아 전문교사<sup>26)</sup>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 2014: 40).

한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외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지원이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만3세~5세)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한다(경기도, 2014: 1).

이밖에 경기도의 특징적인 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특히 영아 보육에 대한 특수한 접근을 통한 맞춤형 보육을 시도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2008년 1월 도입되어 현재 맞벌이 가구의 0~24개월 이하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장애아동, 한부모 등은 5세까지 연장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보육경력 2년 이상 또는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해 1:1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정에 0세아 36만 7천원, 1세아 34만 3천원, 2세아 31만 3천원을 지원하며 교사에게도 교사활동비를 지원한다(경기도, 2014: 9).

24)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경기도, 2014: 40)

25)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중인 ‘다문화 전문교육 과정’ 160시간 이수자(경기도, 2014: 40)

26)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장애아전문교육 과정’ 240시간 이수자(경기도, 2014: 40)

### 3. 소결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의 예산 규모나 시책의 종류나 지원 정도는 지역별 격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 혹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 시·도에서 모두 존재하는 특수보육시책이나, 부산시나 인천시 등 특히 보육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특수시책이 발달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명칭의 수당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고안하고 있음이 눈에 띄나 1~2가지의 처우 개선 수당을 두고 있는 시·도도 있다.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수보육시책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의 실질부담 차액의 지원, 필요 경비 지원, 특별활동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별 격차로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소지조차 있다.

특수보육시책은 지역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별 격차는 지역 주민과 지역 보육인력의 박탈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보육시책 중 호응도가 높고 지역색이 크지 않아 보편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 시책은 지역간 교류를 통해 보급, 확산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IV. 2014년도 심층 분석 과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6년에 걸친 연속과제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나, 매년 시급하게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도에도 2가지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에서는 심층 분석 과제의 선정 이유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 1. 과제 선정의 이유

2014년도 심층 분석을 요하는 주제로는 '양육수당'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양육수당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심층주제로 선정된 바 있는 보육 사업이다. 최초 도입 당시 양육수당은 보육정책의 주류인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정책에 비해 대상과 예산 규모에서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2013년 이후 지원 대상이 보편화되면서 예산 규모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 면에서도 시설 보육에 대비되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른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은 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와 양육수당과 연관지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양육수당의 지원 방식, 지급 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의 관심이 특별히 큰 제도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2013년 그간 저소득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전연령, 전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방식의 대대적 변화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점검할 필요성에서 선정이 되었다. 아울러 2012년 영아무상보육 도입 후 반드시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 까지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한 정책 대안으로 양육수당이 주목 받고 있어 양육수당의 지급 수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으로의 전환 혹은 가정 양육 유지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2013년 11월 제주도와 부산시에 시범실시 된 후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2013. 10. 17; 2014. 4.2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자 관리는 자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온 서울시 외에는, 대기자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소대기를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대기 번호를 관리하는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기 방식 입소대기자 관리는 부모나 시설 입장에서 모두 불편함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소대기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입소대기 순번 부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현재 도입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개선의 여지도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부모와 시설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용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해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심층주제로 선정하였다.

## 2. 과제 1: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

제 2절에서는 심층 분석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양육수당 조사에 대한 개요와 조사 대상인 양육수당 수혜자와 양육수당 미수혜자인 어린이집 이용자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출산 의향 제고 등 각종 효과와 수혜자의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양육수당의 금액 증액, 지원 방식의 변화 등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 그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가. 양육수당 조사 개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정책이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전 연령 대상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1,060,484명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3b).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총 382,327명으로 전체 양육수당 수혜자의 36.3%를 차지한다. 만 1세 영아 역시 345,442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였고, 만 3세 이상의 유아의 비율은 11% 정도였다(표 IV-2-1 참조).

〈표 IV-2-1〉 양육수당 수혜 현황: 2013. 12. 31 기준

구분	단위: 명							전체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개월~취학전	
전체	385,585	346,952	145,049	63,164	38,360	40,445	40,929	1,060,484
기관 미이용 아동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1,053,071
장애아동	6	200	560	535	335	261	215	2,112
농어촌아동	3,252	1,310	541	103	48	47		5,301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통계.

###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양육수당 수혜자 1,011명과 어린이집 이용자 1,008명이었다. 조사 대상에 현재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양육수당에 대한 정책 의견과 추후 양육수당 현금 지원액 및 지급 방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조사는 2014년 5월 13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전문업체의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무작위 번호 추출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 영아가 약 83%로 유아에 비해 훨씬 더 많았고, 그 중 만 0세와 만 1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유아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4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만 3세와 4세를 합한 비율이 3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모취업특성을 살펴보면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60% 이상인 반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37% 수준에 불과하였다(표 IV-2-2 참조).

〈표 IV-2-2〉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성별			모 취업여부		
남아	51.2( 526)	52.0( 516)	종일제	15.7( 158)	45.6( 457)
여아	48.8( 485)	48.0( 492)	시간제	3.3( 33)	6.5( 65)
영유아 구분			휴직중	9.3( 94)	1.5( 15)
영아	82.7( 836)	59.4( 599)	자영업·재택	9.7( 98)	10.0( 100)
유아	17.3( 175)	40.6( 409)	미취업	61.3( 618)	36.5( 366)
아동 연령			모름/무응답	0.7( 7)	0.5( 5)
0세	36.2( 366)	10.6( 107)	가구소득		
1세	32.5( 329)	21.8( 220)	199만원 이하	6.6( 67)	5.2( 52)
2세	13.9( 141)	27.0( 272)	200~249만원	15.0( 152)	8.1( 82)
3세	6.0( 61)	17.2( 173)	250~299만원	11.8( 119)	8.8( 89)
4세	3.7( 37)	14.1( 142)	300~349만원	17.0( 172)	17.1( 172)
5세 이상	3.0( 30)	9.3( 94)	350~399만원	7.9( 80)	9.5( 96)
거주 지역			400~499만원	14.7( 149)	18.7( 188)
광역시	47.1( 476)	39.6( 399)	500~599만원	12.1( 122)	15.1( 152)
중소도시	48.0( 485)	55.5( 559)	600만원 이상	10.7( 108)	12.7( 128)
읍면	4.9( 50)	5.0( 50)	모름/무응답	4.2( 42)	4.9( 49)
계(수)	100.0(1,011)	100.0(1,008)	계(수)	100.0(1,011)	100.0(1,008)

## 2) 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 <표 IV-2-3>과 같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특성, 양육수당 수혜 관련 특성 및 만족도, 양육수당의 효과와 대체 효과, 다자녀 인센티브 도입 시 찬반 의견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본 설문 항목은 거의 동일하나,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는 양육수당 수급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였고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양육수당 증액 및 정책 변화 시 전환 의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2-3〉 설문조사 내용

설문 영역	설문 내용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가구(부모) 특성	- 연령, 학력 - 취업·직업 훈련 여부, 종사상 지위 - 근로 시간 - 가구 유형 - 가구 소득	○	○
자녀 특성	- 총 자녀 수 - 대상 아동의 연령, 성별 - 기관 이용/양육수당 수혜 경험 여부	○	○

(표 IV-2-3 계속)

설문 영역	설문 내용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양육수당 수급 특성	양육수당 최초 수급 시점 기관 경험 있는 경우,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 이유 기관 이용 대신 양육수당 선택 이유 기관 이용 계획 시기 전반적 양육비 지출 수준(대상 아동)	○	
양육수당 만족도	연령별 금액 만족도, 불만족시 걱정 금액 수준과 이유 양육수당 신청/수급 절차 만족도 양육수당 지급방식(현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 소득부관 보편지원 방식에 대한 만족도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만족도	○	○
양육수당 효과	가계경제 도움 효과(양육비 절감 효과) 추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 가정 양육의 효과 양육수당 수급으로 인한 취업 중단 여부	○	
양육수당 인상 효과	양육수당 증액 시 계획보다 기관 이용을 늦출 의사 양육수당 증액 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할 의사 전환할 의사 있는 경우 증액 수준 전환할 의사 없는 경우 이유	○	○
양육수당의 대체효과	대상아동의 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기관 이용 이유 기관 이용 시작시기에 양육수당 수급대상자였는지 여부 기관 이용 시작 당시 양육수당 수급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양육수당 수급대상이었으면 기관을 이용했는지 여부 양육수당 수혜 경험 및 수혜 시 아동 연령 양육수당에서 기관 이용으로 전환한 이유		○
다자녀 인센티브 도입시 효과	양육수당의 출생순위별 차등지원(다자녀 인센티브) 도입의 찬반의견 찬성할 경우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도입 시 후속자녀 출산의사 찬성할 경우 동일연령 아동의 출생순위별 적정 양육수당 금액	○	○

## 나. 조사 대상자 특성

### 1) 양육수당 수혜 관련

#### 가) 양육수당 수혜자 특성

조사 대상 양육수당 수혜자의 수급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양육수당을 수혜받은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다. 본 조사가 2014년 5월에 수행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2013년 3월부터 전연령, 전계층으로 확대된 양육수당을 수혜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수혜자의 비율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연령과도 관련되어 유아의 경우에

영아보다 양육수당을 더 오랫동안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표 IV-2-4 참조).

〈표 IV-2-4〉 양육수당 수혜 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계(수)
전체	18.5	35.7	43.3	2.5	100.0(1,011)
영유아구분					
영아	20.2	36.6	41.1	2.0	100.0( 836)
유아	10.3	31.4	53.7	4.6	100.0( 175)
$\chi^2(df)$		17.84(3) <sup>***</sup>			
자녀연령					
0세	39.6	53.8	6.6	0.0	100.0( 366)
1세	1.8	18.5	78.4	1.2	100.0( 329)
2세	12.8	34.0	44.0	9.2	100.0( 141)
3세	3.3	39.3	54.1	3.3	100.0( 61)
4세	18.9	21.6	48.6	10.8	100.0( 37)
5세	14.9	14.9	66.0	4.3	100.0( 47)
6세	6.7	53.3	40.0	0.0	100.0( 30)
$\chi^2(df)$		486.24(18)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sup>\*\*\*</sup>  $p < .001$ .

#### 나)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

한편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1%로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유아보다는 영아가, 특히 만 0세의 경우 타 연령보다 양육수당을 수혜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더 적을수록 양육수당을 받아봤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표 IV-2-5〉 양육수당 수혜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9.0	61.0	100.0(1,008)
영유아구분			
영아	47.9	52.1	100.0( 599)
유아	25.9	74.1	100.0( 409)
$\chi^2(df)$		49.44(1) <sup>***</sup>	
자녀연령			
0세	62.6	37.4	100.0( 107)
1세	42.7	57.3	100.0( 220)
2세	46.3	53.7	100.0( 272)

(표 IV-2-5 계속)

구분	있음	없음	계(수)
3세	33.5	66.5	100.0( 173)
4세	21.1	78.9	100.0( 142)
5세 이상	19.1	80.9	100.0( 94)
$X^2(df)$	69.33(5) <sup>***</sup>		
모 취업여부			
취업	37.5	62.5	100.0( 622)
휴직중	33.3	66.7	100.0( 15)
미취업	42.1	57.9	100.0( 366)
$X^2(df)$	2.27(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9.6	40.4	100.0( 52)
200~349만원	44.9	55.1	100.0( 343)
350~499만원	38.4	61.6	100.0( 284)
500만원 이상	27.5	72.5	100.0( 280)
$X^2(df)$	29.97(3)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  $p < .001$ .

## 2) 기관 이용 관련

### 가) 양육수당 수혜자 특성

현재는 양육수당을 수혜받고 있는 아동이 보육 관련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아무데도 다닌 적이 없다는 경우가 85% 정도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별로 응답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조사 대상 영아의 경우 기관 이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93%에 달했으나 유아의 경우 50% 미만으로,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 중 17.7%는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녔었고 6.9%는 유치원을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다른 기관에 다녔다고 응답한 비율도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규모 및 모 취업여부별로 기관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V-2-6 참조).

〈표 IV-2-6〉 보육 관련 시설 경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에 다녔음	유치원에 다녔음	다른 시설에 다녔음	아무데도 안 다녔음	계(수)
전체	4.9	1.3	8.7	85.1	100.0(1,011)
영유아구분					
영아	2.3	0.1	4.7	92.9	100.0( 836)
유아	17.7	6.9	28.0	47.4	100.0( 175)
$X^2(df)$	246.62(3) <sup>***</sup>				

(표 IV-2-6 계속)

구분	어린이집에 다녔음	유치원에 다녔음	다른 시설에 다녔음	아무데도 안 다녔음	계(수)
자녀연령					
0세	0.8	0.0	1.1	98.1	100.0( 366)
1세	0.6	0.3	8.8	90.3	100.0( 329)
2세	9.9	0.0	4.3	85.8	100.0( 141)
3세	9.8	1.6	18.0	70.5	100.0( 61)
4세	24.3	2.7	32.4	40.5	100.0( 37)
5세	21.3	14.9	31.9	31.9	100.0( 47)
6세	20.0	10.0	36.7	33.3	100.0( 30)
X <sup>2</sup> (df)	na				
지역 규모					
광역시	5.5	0.8	10.1	83.6	100.0( 476)
중소도시	4.3	1.9	7.8	86.0	100.0( 485)
읍면	6.0	0.0	4.0	90.0	100.0( 50)
X <sup>2</sup> (df)	na				
모 취업여부					
취업	4.8	1.0	12.1	82.0	100.0( 289)
휴직중	6.4	1.1	6.4	86.2	100.0( 94)
미취업	4.7	1.5	7.6	86.2	100.0( 618)
X <sup>2</sup> (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01.

나)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

현재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예전에 양육수당을 받다가 기관 이용으로 의사를 전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전환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정 양육에서 기관 이용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로 전체 응답의 49%를 차지하였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이 보기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V-2-7 참조).

<표 IV-2-7> 양육수당 수급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유

구분	단위: %(명)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적당한 연령이 되어서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커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양육수당 금액이 적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48.9	29.8	12.0	4.1	3.6	1.5	0.3	100.0(393)
영유아구분								
영아	55.4	22.3	13.6	2.8	4.5	1.4	0.0	100.0(287)
유아	31.1	50.0	7.5	7.5	0.9	1.9	0.9	100.0(106)
X <sup>2</sup> (df)	na							

(표 IV-2-7 계속)

구분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적당한 연령이 되어서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커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양육수당 금액이 적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자녀연령								
0세	95.5	0.0	1.5	3.0	0.0	0.0	0.0	100.0( 67)
1세	51.1	14.9	20.2	4.3	6.4	3.2	0.0	100.0( 94)
2세	37.3	39.7	15.1	1.6	5.6	0.8	0.0	100.0(126)
3세	20.7	58.6	10.3	6.9	0.0	1.7	1.7	100.0( 58)
4세	36.7	46.7	6.7	6.7	0.0	3.3	0.0	100.0( 30)
5세 이상	55.6	27.8	0.0	11.1	5.6	0.0	0.0	100.0( 18)
$X^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할 때 양육수당 수급 대상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양육수당은 2013년 3월에 전계층, 전연령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그 전까지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만 비용이 지원되었다. 기관 이용 시점에 따라 양육수당 수급의 자격 유무가 다를 수 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할 때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응답이 62.3%로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자녀가 영아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이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현재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할 때 양육수당 수급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이었고 이 중 결국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표 IV-2-8 참조).

〈표 IV-2-8〉 어린이집 이용 시작시 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자격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62.3	37.7	100.0(1,008)
영유아구분			
영아	78.1	21.9	100.0( 599)
유아	39.1	60.9	100.0( 409)
$X^2(df)$	157.48(1)***		
자녀연령			
0세	89.7	10.3	100.0( 107)
1세	84.5	15.5	100.0( 220)
2세	68.4	31.6	100.0( 272)
3세	49.1	50.9	100.0( 173)

(표 IV-2-8 계속)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4세	33.1	66.9	100.0( 142)
5세 이상	29.8	70.2	100.0( 94)
$X^2(df)$	191.52(5)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sup>\*\*\*</sup>  $p < .001$ .

### 3) 가정양육 관련 실태 및 의견

다음은 양육수당을 수혜받고 있는 가정의 낮 시간 주 양육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정 내 양육자는 부모로, 전체의 85.7%를 차지하였다. 외조부모의 경우 6.7%, 친조부모의 경우 5.1%를 차지하였고, 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 내에서 육아전문인력에 아동을 맡긴다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였다.

자녀가 유아인 경우보다 영아인 경우 부모가 주로 양육한다는 비율이 3% 정도 더 높았고, 영아인 경우보다 유아인 경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주로 양육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에 부모가 주로 아동을 응답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으며, 취업 중인 경우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다른 인력의 도움 없이 부모가 주 양육자가 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표 IV-2-9 참조).

〈표 IV-2-9〉 양육수당 수혜 아동 낮 시간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	육아전문인력	기타	친인척	계(수)
전체	85.7	6.7	5.1	1.2	0.8	0.5	100.0(1,011)
영유아구분							
영아	86.1	6.5	5.0	1.1	0.7	0.6	100.0( 836)
유아	83.4	8.0	5.7	1.7	1.1	0.0	100.0( 175)
$X^2(df)$	na						
모 취업여부							
취업	56.7	21.8	14.2	4.2	1.7	1.4	100.0( 289)
휴직중	96.8	1.1	1.1	0.0	0.0	1.1	100.0( 94)
미취업	97.4	0.6	1.5	0.0	0.5	0.0	100.0( 618)
$X^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91.0	1.5	3.0	0.0	4.5	0.0	100.0( 97)
200~349만원	95.0	2.0	2.7	0.0	0.0	0.2	100.0( 443)
350~499만원	84.7	7.0	5.7	0.4	0.9	1.3	100.0( 229)

(표 IV-2-9 계속)

구분	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	육아전문인력	기타	친인척	계(수)
500만원 이상	69.1	17.0	8.3	4.3	0.9	0.4	100.0( 230)
$X^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양육수당을 수혜받는 대상의 가정 양육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2.6%(매우 만족+만족)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5점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도 3.73점으로 양육수당 수혜자들은 가정 양육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영아인 경우 부모는 기관을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6세로 취학 직전인 경우 가정 양육 만족도가 타 연령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휴직 중인 경우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인 경우 가정 양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가정 양육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7.4	45.2	31.6	4.9	1.0	100.0(1,001)	3.73
영유아구분							
영아	18.4	45.5	30.0	5.4	0.7	100.0( 827)	3.75
유아	12.6	43.7	39.1	2.3	2.3	100.0( 174)	3.62
$X^2(df)/t$	13.05(4)*						1.90#
자녀연령							
0세	18.9	49.6	27.3	3.9	0.3	100.0( 359)	3.83
1세	17.7	43.4	30.6	6.7	1.5	100.0( 327)	3.69
2세	18.4	39.7	35.5	6.4	0.0	100.0( 141)	3.70
3세	16.4	41.0	37.7	3.3	1.6	100.0( 61)	3.67
4세	13.5	45.9	32.4	2.7	5.4	100.0( 37)	3.59
5세	8.5	55.3	31.9	2.1	2.1	100.0( 47)	3.66
6세	10.3	27.6	62.1	0.0	0.0	100.0( 29)	3.48
$X^2(df)/F$	na						1.69
모 취업상태							
취업	17.5	40.9	34.6	4.5	2.4	100.0( 286)	3.66
휴직중	21.3	58.5	17.0	2.1	1.1	100.0( 94)	3.97
미취업	17.0	44.7	32.6	5.4	0.3	100.0( 611)	3.73
$X^2(df)/F$	23.6(8)**						4.69**

(표 IV-2-10 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9	43.3	28.4	16.4	0.0	100.0( 67)	3.51
200~349만원	15.8	45.2	33.6	4.8	0.7	100.0( 438)	3.71
350~499만원	15.4	46.1	32.9	4.4	1.3	100.0( 228)	3.70
500만원 이상	24.3	42.0	30.5	2.2	0.9	100.0( 226)	3.87
$X^2(df)/F$			na				3.9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1$ , \*  $p < .05$ , \*\*  $p < .01$ .

## 다. 양육수당의 효과

여기서는 양육수당이 수급자에게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양육수당 수혜 가구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게 된 후 ‘양육비 부담’, ‘가정양육 만족도’, ‘출산의지’, ‘취업의지’, ‘자녀양육방식(시설이용계획)’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로 살펴보았다.

### 1) 양육비 부담 경감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61.5%(많이 줄었다 6.9%+어느 정도 줄었다 54.6%)에 달하여 양육수당은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서, 해당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인 경우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자녀의 영유아 여부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수급으로 양육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녀가 영아인 경우 7.6%, 유아인 경우 4.0%이며, 영아가구는 57.6%, 유아가구는 40.6%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응답하여 그 격차가 더욱 컸다.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많이 + 어느 정도)는 응답은 자녀가 0세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67.7%), 반면 4세에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27.0%).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광역시나 중소도시 거주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50%이상으로

나타나 고소득 가구에서도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 자녀 연령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 10만원씩만 지급되는 유아 가구에서의 부담 경감 효과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1〉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단위: %(명)

구분	많이 줄었음	어느 정도 줄었음	별로 줄지 않았음	전혀 줄지 않았음	계(수)
전체	6.9	54.6	33.4	5.1	100.0(982)
영유아구분					
영아	7.6	57.6	31.0	3.8	100.0(807)
유아	4.0	40.6	44.6	10.9	100.0(175)
X <sup>2</sup> (df)	32.15(3) <sup>***</sup>				
자녀연령					
0세	8.6	59.1	30.3	2.0	100.0(347)
1세	6.9	58.4	29.7	5.0	100.0(320)
2세	6.4	52.1	35.7	5.7	100.0(140)
3세	4.9	49.2	42.6	3.3	100.0( 61)
4세	0.0	27.0	62.2	10.8	100.0( 37)
5세	8.5	36.2	38.3	17.0	100.0( 47)
6세	0.0	46.7	36.7	16.7	100.0( 30)
X <sup>2</sup> (df)	na				
지역 규모					
광역시	7.1	53.8	33.5	5.6	100.0(468)
중소도시	6.7	54.2	34.0	5.2	100.0(465)
읍면	8.2	65.3	26.5	0.0	100.0( 49)
X <sup>2</sup> (df)	4.69(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2	63.1	24.6	6.2	100.0( 65)
200~349만원	7.0	57.3	32.2	3.5	100.0(429)
350~499만원	7.2	51.4	35.6	5.9	100.0(222)
500만원 이상	6.2	51.8	35.4	6.6	100.0(226)
X <sup>2</sup> (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01.

## 2) 가정양육의 만족도 제고

앞서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sup>27)</sup>. 현재 가정양육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답한 626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 후 가정양육만족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V-2-12>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비율이 15%, '조금 높아졌다'는 응답이 43.9%로 현재 가정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 중 58.9%는 양육수당으로 인해 만족도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반면, 오히려 양육수당 지급 후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는 0.3%에 불과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일 경우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비율이 유아일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양육수당이 특히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1세 자녀를 둔 경우 양육수당 지급 후 가정양육 만족도가 상승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65.5%가 이에 해당하였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 비율도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22.0%).

지역규모별로는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21.4%), 가정양육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전반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규모는 중소도시로 60.9%가 양육수당수급으로 가정양육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을 수급받은 기간에 따라서는 수급기간 6개월~1년 사이인 가구의 가정양육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비율이 높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수급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가구로 나타났다.

또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자영업·재택근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경우보다 취업상태인 경우에서 양육수당 지급 후 가정양육 만족도가 상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양육수당에 대한 보편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엔 양육수당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취업상태인 경우 구체적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특히 '시간제근무' 중인 경우 가정양육에 대한 만족도 상승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일제 근무이거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그리고 재택·자영업인 경우에 비해 만족도 상승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제 근로 중인 어머니는 종일제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근로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큰데, 그로 인한 소득

27) 매우만족+만족한다는 비율이 61.9%이었음.

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양육수당이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반대로 종일제근로를 하는 경우 가정 내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 양육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대리 양육비용은 양육수당으로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대리 양육자를 두더라도 단시간만을 이용하여 양육수당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머니 자신이 근로와 가정 내 양육을 어느 정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 양육수당 지급이후 만족도가 상승되었다는 응답이 73%를 차지해 기타 소득 구간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500~599만원 소득가구의 만족도도 상승된 경우가 많았고(67.1%) 특히 '만족도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응답비율은 전 소득 구간 중 가장 높았다(18.4%).

〈표 IV-2-12〉 (가정 양육 만족하는 경우) 양육수당 수혜 후 가정 양육 만족도 변화  
단위: %(명)

구분	만족도가 많이 높아짐	만족도가 조금 높아짐	만족도에 변화없음	만족도가 약간 낮아짐	계(수)
전체	15.0	43.9	40.7	0.3	100.0(626)
영유아구분					
영아	17.0	43.9	38.6	0.4	100.0(528)
유아	4.1	43.9	52.0	0.0	100.0( 98)
X <sup>2</sup> (df)	na				
자녀연령					
0세	15.0	44.3	40.7	0.0	100.0( 246)
1세	22.0	43.5	34.5	0.0	100.0( 200)
2세	11.0	43.9	42.7	2.4	100.0( 82)
3세	2.9	57.1	40.0	0.0	100.0( 35)
4세	4.5	22.7	72.7	0.0	100.0( 22)
5세	3.3	53.3	43.3	0.0	100.0( 30)
6세	9.1	18.2	72.7	0.0	100.0( 11)
X <sup>2</sup> (df)	na				
지역 규모					
광역시	13.5	44.3	41.9	0.3	100.0(296)
중소도시	15.9	45.0	38.7	0.3	100.0(302)
읍면	21.4	28.6	50.0	0.0	100.0( 28)
X <sup>2</sup> (df)	na				
양육수당 수혜 기간					
6개월 미만	14.5	38.7	46.0	0.8	100.0(124)
6개월~1년 미만	12.8	48.9	38.4	0.0	100.0(219)
1년 이상~2년 미만	17.5	42.8	39.4	0.4	100.0(269)
2년 이상	7.1	35.7	57.1	0.0	100.0( 14)
X <sup>2</sup> (df)	na				

(표 IV-2-12 계속)

구분	만족도가 많이 높아짐	만족도가 조금 높아짐	만족도에 변화없음	만족도가 약간 낮아짐	계(수)
모 취업상태					
종일제	18.8	43.8	37.5	0.0	100.0( 96)
시간제	13.6	59.1	27.3	0.0	100.0( 22)
휴직중	12.0	48.0	40.0	0.0	100.0( 75)
자영업·재택	8.2	42.9	49.0	0.0	100.0( 49)
미취업	15.6	42.2	41.6	0.5	100.0(377)
모름/무응답	20.0	40.0	40.0	0.0	100.0( 5)
$\chi^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5	59.5	27.0	0.0	100.0( 37)
200-299만원	14.7	46.2	37.8	1.3	100.0(156)
300-399만원	14.7	42.3	42.9	0.0	100.0(163)
400-499만원	13.6	38.6	47.7	0.0	100.0( 88)
500-599만원	18.4	48.7	32.9	0.0	100.0( 76)
600만원 이상	16.2	37.8	45.9	0.0	100.0( 74)
모름/무응답	12.5	40.6	46.9	0.0	100.0( 32)
$\chi^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3) 자녀 시설 이용 시기 지연 효과

현재 양육수당 수급 가구가 양육수당을 받게 됨으로써 원래 계획하던 시기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기가 늦추어졌는지 질문한 결과, 80%는 변화가 없고 20%의 가구가 양육수당을 받음으로써 원래 계획시기보다 시설 이용 계획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1년 정도를 늦춘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으로 연기한 경우 6.1%, 1년 이상~2년 이내에서 늦춘 경우는 4.5%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현재 자녀 연령 3세인 경우 양육수당 수급으로 인해 시설 이용 계획 시기를 늦추었다는 응답 비율이 30%로 가장 높고, 1세가 그 다음순위를 차지하였다.

또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시간제인 경우 양육수당수급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기존 계획보다 늦추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30.5%), 2년 이상 장기간을 늦추었다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우 희소한데, 이렇게 상당한 시기를 연기한 경우도 어머니가 시간제 취업중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으로 인해 시설 이용 계획을 늦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수당이 저소득가구의 시설이용을 좀 더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13〉 양육수당 수혜로 보육관련시설 이용 계획 시기 변동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늦춤	6개월 이상~1년 미만 늦춤	1년 이상~2년 미만 늦춤	2년 이상~3년 미만 늦춤	3년 이상 늦춤	영향 없다	계(수)
전체	6.1	8.3	4.5	0.5	0.5	80.0	100.0(1,011)
자녀연령							
0세	3.0	7.9	4.6	0.8	0.3	83.3	100.0( 366)
1세	9.4	7.6	4.9	0.6	0.6	76.9	100.0( 329)
2세	6.4	11.3	2.1	0.0	0.7	79.4	100.0( 141)
3세	8.2	11.5	9.8	0.0	0.0	70.5	100.0( 61)
4세	5.4	8.1	5.4	0.0	2.7	78.4	100.0( 37)
5세	2.1	8.5	2.1	0.0	0.0	87.2	100.0( 47)
6세	10.0	0.0	3.3	0.0	0.0	86.7	100.0( 30)
$\chi^2(df)$				na			
모 취업여부							
종일제	5.7	8.2	4.4	0.0	0.0	81.6	100.0( 158)
시간제	15.2	6.1	3.0	3.0	3.0	69.7	100.0( 33)
휴직중	5.3	13.8	5.3	1.1	0.0	74.5	100.0( 94)
자영업·재택	7.1	4.1	3.1	0.0	0.0	85.7	100.0( 98)
미취업	5.7	8.4	4.7	0.5	0.6	80.1	100.0( 618)
모름/무응답	14.3	0.0	14.3	0.0	0.0	71.4	100.0( 7)
$\chi^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0	7.5	4.5	1.5	3.0	77.6	100.0( 67)
200~299만원	6.3	11.8	4.1	0.7	0.4	76.8	100.0( 271)
300~399만원	7.1	5.6	6.0	0.8	0.8	79.8	100.0( 252)
400~499만원	4.0	10.7	3.4	0.0	0.0	81.9	100.0( 149)
500~599만원	9.8	6.6	1.6	0.0	0.0	82.0	100.0( 122)
600만원 이상	3.7	7.4	4.6	0.0	0.0	84.3	100.0( 108)
모름/무응답	2.4	2.4	11.9	0.0	0.0	83.3	100.0( 42)
$\chi^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4) 출산의지 제고 효과

여기서는 양육수당 제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양육수당 수급으로 실제 추가 출산 의사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양육수당수급가구에서 양육수당 수급으로 추가 출산의사가 실제로 생겼다(상당히+어느 정도)는 응답은 21.4%에 해당하였다.

현재 자녀가 영아일 경우 유아일 경우보다 양육수당 수급으로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추가 출산 의사 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3세의 경우 1~2

세보다 오히려 추가 출산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추가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은 높으나 실제 출산에 있어 2~3년 정도의 터울을 두는 행태를 고려하면 자녀연령이 3세일 때 실제 추가 자녀 임신이나 출산의도가 뚜렷해질 수 있어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자녀수는 현재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수당 수급 후 추가 출산 의도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인 경우 양육수당 수급 후 추가자녀 출산 의사가 생겼다는 경우가 28.3%이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8.3%, 3명 이상인 경우 10.3%로 양육수당으로 인해 추가 자녀 출산 의도가 증진되는 효과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크며 자녀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01$ ).

지역규모별로는 양육수당 수급으로 인해 읍면지역보다 광역시, 중소도시 거주자의 추가 출산 의사가 많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출산 의사가 '상당히 생겼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은 200~349만원 소득구간일 때 양육수당으로 인한 추가 출산 의사 증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350만원 이상 가구는 양육수당으로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양육수당이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출산율 증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보였다( $p < .05$ ).

마지막으로 추가 출산 의사는 어머니의 연령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즉, 어머니 연령 35세 이상에서는 양육수당으로 인해 추가 출산 의사가 생겼다는 응답은 17%이나, 30~34세는 24%, 29세 이하에서는 32.6%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수도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출산 의사는 향후의 출산 의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임기간 등을 고려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사료된다.

〈표 IV-2-14〉 양육수당으로 인한 추가 출산 의사

구분	단위: %(명)			계(수)
	상당히 생겼다	어느 정도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전체	3.2	18.2	78.6	100.0(1,007)
영유아구분				
영아	3.6	19.2	77.2	100.0( 832)
유아	1.1	13.1	85.7	100.0( 175)
$\chi^2(df)$		7.05(2)*		
자녀연령				
0세	3.3	21.4	75.3	100.0( 365)
1세	4.9	19.3	75.8	100.0( 327)

(표 IV-2-14 계속)

구분	상당히 생겼다	어느 정도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계(수)
2세	1.4	13.6	85.0	100.0( 140)
3세	3.3	21.3	75.4	100.0( 61)
4세	0.0	5.4	94.6	100.0( 37)
5세	0.0	12.8	87.2	100.0( 47)
6세	0.0	6.7	93.3	100.0( 30)
$X^2(df)$		na		
자녀수				
1명	3.4	24.9	71.7	100.0(410)
2명	3.2	15.1	81.7	100.0(471)
3명 이상	2.4	7.9	89.7	100.0(126)
$X^2(df)$		25.26(4) <sup>***</sup>		
지역 규모				
광역시	3.0	18.4	78.6	100.0( 473)
중소도시	2.7	19.0	78.4	100.0( 485)
읍면	10.2	8.2	81.6	100.0( 49)
$X^2(df)$		11.01(4) <sup>*</sup>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1	16.7	77.3	100.0( 66)
200~349만원	3.4	23.0	73.6	100.0( 440)
350~499만원	2.6	16.2	81.2	100.0( 229)
500만원 이상	2.6	13.9	83.5	100.0( 230)
무응답/모름	2.4	4.8	92.9	100.0( 42)
$X^2(df)$		18.30(8) <sup>*</sup>		
모 연령				
29세 이하	7.6	25.0	67.4	100.0( 94)
30~34세	2.6	21.3	76.0	100.0( 417)
35세 이상	2.8	14.2	83.0	100.0( 493)
$X^2(df)$		18.18(4)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취업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거나 여성의 노동권과 충돌할 우려가 존재한다(유해미 외, 2011: 85; 서문희·이혜민, 2013: 142). 이에 2014년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에 실제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양육수당을 수급하게 된 후 어머니 근로형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15>에 제시하였다. 전체 1,011사례 중 어머니가 부재한 부자가정이거나 어머니의 취업경험이 전무한 경우는 제외한 나머지 928사례에 대해서만 양육수당 수급 전후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수급

전·후간 어머니 근로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81.4%로 양육수당 수급 후 어떠한 형태든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나머지 약 18.6%로 나타났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던 일을 그만 둔 경우'가 10.6%로 가장 많아 근로형태 변화 있는 경우 중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던 일을 줄였다'는 1.8%로 나타났다. 이밖에 양육수당 수급 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응답도 5.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육수당을 수급한다는 것은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 양육'을 하겠다는 선택을 반영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과 같은 형태로 가정 양육과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근로중인 어머니 중 일부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15〉 양육수당 수혜 후 어머니의 근로형태 변화

단위: %(명)

구분	변동 없다	하던 일을 그만뒀다	육아휴직	하던 일을 줄였다	취업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기타	계(수)
전체	81.4	10.6	5.6	1.8	0.5	0.1	100.0(92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9.0	16.1	0.0	1.6	1.6	1.6	100.0( 62)
200~349만원	79.6	13.4	5.2	1.2	0.5	0.0	100.0(402)
350~499만원	74.4	12.6	10.1	2.4	0.5	0.0	100.0(207)
500만원 이상	89.9	2.8	4.6	2.3	0.5	0.0	100.0(218)
모름/무응답	92.3	5.1	0.0	2.6	0.0	0.0	100.0( 39)
$X^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에서 '변동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89.9%), 350~499만원 소득구간에서는 '변동없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74.4%)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육아휴직을 한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육수당 수급 후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는 비율은 대체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는 16.1%에 달하며,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2.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수당이 저소득 취업여성의 취업의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된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 가구의 어머니가 취업중인 일자리가 가정 내 양육

을 하고자 할 때 일정 기간 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지 못하며 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양육수당으로 인한 취업의지의 저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나, 주로 저소득 가구의 어머니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경직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 이루어진 양육수당 수급자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수당 지급 후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거나 하던 일을 줄였다는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17.9%로 나타났으나(서문희·이혜민, 2013: 142), 2014년에는 12.4%로 약 5.5% 감소하였고, 대신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8)</sup>

앞서 양육수당 수급 후 근로형태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양육수당이 여성의 근로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해 보고자 하였는데, 이번에는 양육수당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줄여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그러한 변화가 양육수당 수급으로 인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양육수당 수급 후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줄인 115사례 중 양육수당이 관련 있다는 경우는 총 32사례(많은 영향을 미쳤다 7사례+다소 관련 있다 25사례)에 해당하였다. 즉, 양육수당을 수급하였기 때문에 근로를 중단하거나 줄인 부정적 사례는 총 32사례로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어머니 등 비해당 사례를 제외한 총 928명 중 3.4%에 불과하였다. 즉, 전체 양육수당 수급 가구 중에서 양육수당 수급 후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때문에 근로를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은 3.4%에 불과해 여성 취업의지에 대한 우려에 비해 실제 그 효과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표 IV-2-16〉 양육수당 수급과 근로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축의 관련성

단위: %(명)

구분	근로중단,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규취업, 근로시간 증가	근로형태 변화 없음	계(수)
	양육수당과 관련 있음	양육수당과 관련 없음			
비율	3.4	9.1	6.1	81.4	100.0(9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28) 2013년에는 육아휴직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0.6%에 불과하였음. '변동없음'의 비율은 2013년에 도 81.2%로 유사하게 나타남.

## 라. 양육수당 만족도

### 1) 전반적 만족도

#### 가)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1.2%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5%로 10% 미만이었다.

자녀가 영아일수록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5점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유의하였다. 자녀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에도 0세의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만 4~5세의 유아인 경우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350~499만원인 경우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양육수당 정책 전반적인 만족도: 양육수당 수혜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9.9	41.3	29.3	7.1	2.4	100.0(1,011)	3.69
영유아구분							
영아	21.1	40.9	30.3	5.9	1.9	100.0( 836)	3.73
유아	14.3	43.4	24.6	13.1	4.6	100.0( 175)	3.50
$X^2(df)/t$			20.24(4) <sup>***</sup>				2.79 <sup>**</sup>
자녀연령							
0세	22.1	41.8	28.1	6.3	1.6	100.0( 366)	3.77
1세	19.1	42.6	30.4	5.5	2.4	100.0( 329)	3.71
2세	22.7	34.8	35.5	5.7	1.4	100.0( 141)	3.72
3세	23.0	42.6	23.0	8.2	3.3	100.0( 61)	3.74
4세	8.1	40.5	35.1	13.5	2.7	100.0( 37)	3.38
5세	14.9	38.3	21.3	14.9	10.6	100.0( 47)	3.32
6세	3.3	56.7	20.0	20.0	0.0	100.0( 30)	3.43
$X^2(df)/F$			na				2.70 <sup>*</sup>
모 취업여부							
취업	17.6	43.3	26.3	10.0	2.8	100.0( 289)	3.63
휴직중	18.1	47.9	23.4	7.4	3.2	100.0( 94)	3.70
미취업	21.4	39.0	31.7	5.8	2.1	100.0( 618)	3.75
$X^2(df)/F$			12.31(8)				0.8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6.4	41.8	35.8	3.0	3.0	100.0( 52)	3.66

(표 IV-2-17 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200~349만원	20.3	39.5	31.2	7.4	1.6	100.0( 343)	3.70	
350~499만원	21.0	46.3	23.1	6.1	3.5	100.0( 284)	3.75	
500만원 이상	19.6	40.9	29.6	7.0	3.0	100.0( 280)	3.67	
$\chi^2(df)/F$							11.41(12)	0.35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현재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44.6%로 나타났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나타났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양육수당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에도 ‘양육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지지는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6.6% 더 적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 정도 더 많아 양육수당 수혜자보다는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IV-2-18> 양육수당 정책 전반적인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9.5	35.1	35.1	16.4	3.9	100.0(1,008)	3.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2) 항목별 만족도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정책 관련 세부사항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육수당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체 수혜자의 93%가 이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2013년 3월 이전에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다가 전연령으로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하여는 전체 수혜자의 76.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의 신청 및 수급 절차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75.8%로 나타나 이 역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연령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하여는 전체의 5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IV-2-19 참조).

〈표 IV-2-19〉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전계층 수급대상 확대	22.2	40.0	22.3	10.6	4.5	0.5	100.0(1,011)
전연령 수급대상 확대	29.0	47.4	16.3	5.4	1.5	0.4	100.0(1,011)
신청 및 수급 절차	22.1	53.7	16.2	5.4	1.2	1.4	100.0(1,011)
현금 지급 방식	41.6	51.5	5.7	0.8	0.3	-	100.0(1,011)
연령 차등 지원 방식	17.9	38.1	22.7	17.8	2.8	0.8	100.0(1,0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3) 금액 만족도 및 적정 금액 요구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현재 수급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질문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23.4% 정도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4%였다.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2.86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영아보다 유아인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자녀 연령별로도 살펴보면 만 0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만 4~5세인 경우 금액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가구소득별 양육수당 만족도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2-20 참조).

〈표 IV-2-20〉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3.6	19.8	42.6	26.9	7.1	100.0(1,011)	2.86
영유아구분							
영아	3.9	19.7	44.5	25.5	6.3	100.0( 836)	2.89
유아	1.7	20.0	33.7	33.7	10.9	100.0( 175)	2.68
$X^2(df)/t$			13.77(4)**				2.68**
자녀연령							
0세	5.2	21.3	44.3	23.0	6.3	100.0( 366)	2.96
1세	3.0	18.5	45.6	27.1	5.8	100.0( 329)	2.86
2세	2.8	18.4	42.6	28.4	7.8	100.0( 141)	2.80
3세	3.3	16.4	34.4	37.7	8.2	100.0( 61)	2.69
4세	2.7	10.8	40.5	40.5	5.4	100.0( 37)	2.65
5세	0.0	27.7	25.5	25.5	21.3	100.0( 47)	2.60
6세	0.0	26.7	36.7	30.0	6.7	100.0( 30)	2.83
$X^2(df)/F$			na				2.11*

(표 IV-2-20 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	20.9	35.8	37.3	4.5	100.0( 52)	2.78
200~349만원	3.4	18.7	40.6	30.2	7.0	100.0( 343)	2.81
350~499만원	3.9	17.5	45.0	24.9	8.7	100.0( 284)	2.83
500만원 이상	4.8	21.7	46.1	20.4	7.0	100.0( 280)	2.97
$X^2(df)/F$			14.95(12)				1.66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  $p < .01$ .

양육수당 금액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 지원이 적어서'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유아인 경우 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시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적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나,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IV-2-21 참조).

〈표 IV-2-21〉 양육수당 금액 불만족 이유

구분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비해 금액이 부족해서	보육료 지원에 비해 금액이 적어서	계(수)
전체	69.4	30.6	100.0(343)
영유아구분			
영아	71.7	28.3	100.0(265)
유아	61.5	38.5	100.0( 78)
$X^2(df)$		2.93(1)	
지역 규모			
광역시	69.2	30.8	100.0(172)
중소도시	69.1	30.9	100.0(152)
읍면	73.7	26.3	100.0( 19)
$X^2(df)$		0.18(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7.9	32.1	100.0( 28)
200~349만원	70.9	29.1	100.0(165)
350~499만원	67.5	32.5	100.0( 77)
500만원 이상	71.0	29.0	100.0( 62)
$X^2(df)$		0.37(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양육수당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우 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양육수당 금액에 불만족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이들은 평균 347,600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평균 366,500원을 수혜받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아의 경우 284,400원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 부모의 경우 417,200원으로 현재 실제로 0세 영아에게 지급되고 있는 비용인 2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1세의 경우도 역시 양육수당 불만족시 원하는 금액이 342,100원으로 실제 지급되고 있는 비용인 15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만 2세의 경우에는 310,600원, 만 3세의 경우 278,600원, 만 4세의 경우 267,300원, 만 5세의 경우 290,000원, 만 6세의 경우 315,000원으로 실제 지급되고 있는 비용인 10만원보다 2~3배 정도 높은 금액을 수혜받는 것을 원하였다.

〈표 IV-2-22〉 양육수당 금액 불만족시 원하는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20만원 이하	21~25만원	26~30만원	31~35만원	36~40만원	40만원 초과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14.5	5.2	34.9	4.7	13.4	19.5	7.8	100.0( 344)	34.76
영유아구분									
영아	10.9	4.1	32.7	4.5	15.8	23.7	8.3	100.0( 266)	36.65
유아	26.9	9.0	42.3	5.1	5.1	5.1	6.4	100.0( 78)	28.44
$X^2(df)/t$				31.05(5)***					6.70***
자녀연령									
0세	1.9	0.0	24.3	5.6	27.1	33.6	7.5	100.0( 107)	41.72
1세	12.0	7.4	41.7	4.6	7.4	17.6	9.3	100.0( 108)	34.21
2세	27.5	5.9	31.4	2.0	9.8	15.7	7.8	100.0( 51)	31.06
3세	32.1	0.0	60.7	0.0	3.6	3.6	0.0	100.0( 17)	27.86
4세	17.6	29.4	35.3	0.0	5.9	0.0	11.8	100.0( 28)	26.73
5세	22.7	9.1	36.4	13.6	4.5	4.5	9.1	100.0( 22)	29.00
6세	36.4	0.0	18.2	9.1	9.1	18.2	9.1	100.0( 11)	31.50
$X^2(df)/F$				na					10.81***
2013년 연구	0.6	18.0		40.3	36.2	4.9		100.0( 834)	35.40
2012년 연구								100.0(1,000)	36.60
2011년 연구									
12개월 미만아	0.4	56.1		26.9	16.6	-		100.0( 674)	35.86
12~24개월 미만아	36.1	42.5		11.1	10.4	-		100.0( 821)	29.56
24~36개월 미만아	52.2	27.8		8.7	11.3	-		100.0( 831)	28.02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01$ .

한편 양육수당의 전계층·전연령 지원이 시작되었던 2013년의 연구<sup>29)</sup>에서는 수혜자 중 양육수당 금액에 불만족하는 경우 평균 35만 4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조사보다 6,000원 정도가 높았다.

2012년에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였다.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15만원, 25~36개월 미만의 유아의 경우 10만원으로, 지원 수준은 현재와 같았다.

2012년 연구<sup>30)</sup>에서는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세 집단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적정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원하는 양육수당 적정 액수의 평균은 36만 9천원이었으며,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43만 5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수당을 수혜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31만 6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자가 더 높은 금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역시 차상위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지원 비용은 2012년과 동일하였다. 2011년 연구<sup>31)</sup>에서 양육수당 수혜자 중 현재 지급받고 있는 비용에 불만족하는 12개월 미만 영아 부모의 경우 평균 35만 9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4개월 미만의 경우 29만 6천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36개월 아동의 경우 평균 28만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최근 3년간의 양육수당 연구에서 양육수당으로 평균 35만원 정도의 금액을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더 높은 비용을 원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 마. 양육수당 정책 변화 시 효과 예측

여기서는 양육수당의 금액인상이나 다자녀 추가지원 등 변화를 가정하여, 변화에 대해 영유아 부모의 행동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29)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0) 서문희·김혜진(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1)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1) 양육수당 금액 인상 효과

### 가) 양육수당 수혜가구의 가정양육지속 효과

가장 먼저 양육수당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인상될 경우 현재 보육관련 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기보다 이용 시기를 늦추고 가정양육을 더 연장하여 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 무응답 6사례를 제외한 1,006사례 중 34.1%는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을 더 연장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7.8%는 금액 인상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이들은 인상 금액이 충분할 경우 가정양육을 연장할 수 있는 잠재인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현재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을 일정기간 지속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연령별로는 현재 자녀가 5세인 경우에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가장 높았다. 또한 현재 4~6세 유아인 경우에도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 양육 지속 의사가 2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체로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정양육을 선호하지만 연령이 높은 경우에도 가정양육을 할 수밖에 없거나 선호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양육수당을 인상하더라도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없다는 견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양육수당이 저소득가구일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는 역할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35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 중소득 가구에서는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는 고소득 가구보다 낮고 소득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았지만 '인상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률은 가장 높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의 지원 금액과 양육수당 지원 수준에 따른 행동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계층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표 IV-2-23〉 양육수당 인상시 가정양육할 의향

구분	의향 있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름	의향 없다	단위: %(명)
				계(수)
전체	34.1	27.8	38.1	100.0(1,006)
영유아구분				
영아	35.7	27.7	36.6	100.0( 831)
유아	26.4	28.2	45.4	100.0( 174)
$\chi^2(df)$		6.60(2)*		

(표 IV-2-23 계속)

구분	의향 있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름	의향 없다	계(수)
<b>자녀연령</b>				
0세	38.2	28.6	33.2	100.0( 364)
1세	35.8	28.4	35.8	100.0( 327)
2세	29.3	23.6	47.1	100.0( 140)
3세	19.7	34.4	45.9	100.0( 61)
4세	21.6	27.0	51.4	100.0( 37)
5세	41.3	26.1	32.6	100.0( 46)
6세	23.3	20.0	56.7	100.0( 30)
X <sup>2</sup> (df)		24.31(12) <sup>*</sup>		
<b>가구소득</b>				
199만원 이하	41.8	25.4	32.8	100.0( 67)
200~349만원	39.2	31.1	29.7	100.0( 441)
350~499만원	26.4	33.0	40.5	100.0( 227)
500만원 이상	30.1	18.3	51.5	100.0( 229)
모름/무응답	31.7	19.5	48.8	100.0( 41)
X <sup>2</sup> (df)		43.13(8) <sup>***</sup>		
<b>모 연령</b>				
29세 이하	37.2	40.4	22.3	100.0( 94)
30~34세	35.2	26.3	38.6	100.0( 415)
35세 이상	32.6	26.9	40.5	100.0( 491)
X <sup>2</sup> (df)		13.53(4)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금액수준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그 정도 금액에서의 가정양육 지속 의향을 살펴보았다.

〈표 IV-2-24〉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가정양육 지속 의향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의향 있다	의향 없다	모름/무응답	
<b>금액 인상 수준</b>				
5~10만원	36.2	61.6	2.2	100.0(279)
10~15만원	22.7	76.2	1.2	100.0(172)
15~20만원	51.9	47.3	0.8	100.0(1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자(279사례)에 대해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결과, 5~10만원 인상 시 보육관련 시설 이용을 늦추고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

사가 있는 경우는 279사례 중 36.2%(101사례)이며, 5~10만원 인상 시에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여전히 없다는 대상자 172사례 중 10~15만원 인상 시 보육관련 시설 이용을 늦추고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22.7%(39사례)에 해당하였다.

10~15만원 인상 시에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여전히 없다는 대상자 131사례 중 15~20만원 인상 시 보육관련 시설 이용을 늦추고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51.9%(68사례)로 대폭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보육관련 시설 이용을 늦추고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33.9%(343사례)였으나, 금액 인상에 따라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가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금액을 15~2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응답가구 1,011사례 중 총 551사례가 가정양육을 지속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54.5%).

이처럼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유동적이라는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인상금액에 따른 응답을 자녀연령, 모 취업상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V-2-25>~<표 IV-2-27>에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사례의 응답을 분석해 제시하였다.

먼저 유동적인 의사를 지닌 사례를 대상으로 월 5~10만원 양육수당 금액이 인상된다면 자녀의 시설 이용을 미루고 가정양육을 좀더 지속할 수 있겠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불가능하였지만 자녀연령별로는 5~6세의 경우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3세의 경우도 40%가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도 가정양육 지속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0~2세 영아자녀를 둔 경우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5~10만원 수준의 인상 시 가정양육지속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사례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유아 자녀를 둔 경우의 응답 비율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부분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기에 여전히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유아라면 가정양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특수한 경우이거나, 고소득 가구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시간제근무중인 경우 양육수당 5~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55.6%를 차지하였고, 휴직중 43.5%, 자영업·재택 근무 중인 경우도 40.0%로 비교적 가정양

육 지속의향이 높았다. 반대로 종일제 근무중인 경우 가정양육지속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 5~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 지속의향이 현저히 높고(62.5%),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낮아(25.0%)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수당 인상에 의해 가정양육지속의사가 증진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25〉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월 5~10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수)
전체	37.0	63.0	100.0(273)
자녀연령			
0세	39.0	61.0	100.0(100)
1세	35.9	64.1	100.0( 92)
2세	27.3	72.7	100.0( 33)
3세	40.0	60.0	100.0( 20)
4세	30.0	70.0	100.0( 10)
5세	50.0	50.0	100.0( 12)
6세	50.0	50.0	100.0( 6)
$X^2(df)$	na		
모 취업상태			
종일제	25.0	75.0	100.0( 36)
시간제	55.6	44.4	100.0( 9)
휴직중	43.5	56.5	100.0( 23)
자영업·재택	40.0	60.0	100.0( 30)
미취업	36.8	63.2	100.0(171)
$X^2(df)$	4.09(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2.5	37.5	100.0( 16)
200~349만원	36.0	64.0	100.0(136)
350~499만원	38.4	61.6	100.0( 73)
500만원이상	25.0	75.0	100.0( 40)
$X^2(df)$	7.06(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다음으로 양육수당 5~10만원 인상 시에는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연령별 금액에서 양육수당을 월 10~15만원씩 더 인상한다면 자녀의 시설 이용을 미루고 가정양육을 좀더 지속할 수 있겠는

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불가능하였지만 자녀연령별로는 5세의 경우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0~2세 영아자녀를 둔 경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10~15만원 수준 더 인상 시 가정양육지속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분석에서 자녀 연령이 3세 이상 유아인 사례의 경우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응답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다만, 영아 자녀를 둔 사례에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하겠다는 응답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5~10만원 인상시 영아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양육 지속 의사가 높아졌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로 흥미롭다.

다음으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경우 양육수당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26.4%를 차지하였고, 시간제 근무 25.0%, 휴직중 23.1%로 가정양육지속의사가 높은 취업 상태로 분류되었다. 반대로 종일제 근무중인 경우 가정양육지속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양육수당 5~10만원 인상 시 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응답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10만원 인상시의 경향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만원 이하 소득가구의 사례수가 매우 작아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다.

〈표 IV-2-26〉 (월 5~10만원에 가정양육 지속의향 없는 경우) 월 10~15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 여부

구분	단위: %(명)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수)
전체	22.9	77.1	100.0(170)
자녀연령			
0세	21.7	78.3	100.0( 60)
1세	24.1	75.9	100.0( 58)
2세	29.2	70.8	100.0( 24)
3세	16.7	83.3	100.0( 12)
4세	14.3	85.7	100.0( 7)
5세	33.3	66.7	100.0( 6)
6세	0.0	100.0	100.0( 3)
X <sup>2</sup> (df)	na		

(표 IV-2-26 계속)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수)
모 취업여부			
종일제	14.8	85.2	100.0( 27)
시간제	25.0	75.0	100.0( 4)
휴직중	23.1	76.9	100.0( 13)
자영업·채택	16.7	83.3	100.0( 18)
미취업	26.4	73.6	100.0(106)
X <sup>2</sup> (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66.7	100.0( 6)
200~349만원	24.7	75.3	100.0( 85)
350~499만원	22.2	77.8	100.0( 45)
500만원 이상	16.7	83.3	100.0( 30)
X <sup>2</sup> (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다음으로 양육수당 10~15만원 인상 시에도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연령별 금액에서 양육수당을 월 15~20만원 씩 더 인상한다면 자녀의 시설 이용을 미루고 가정양육을 좀더 지속할 수 있겠는지 다시 살펴보았다. 사례수의 대폭 감소로 인해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못하였으나, 자녀연령별로는 2세의 경우 가정 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아서 10~15만원 인상 시 자녀 연령 5세인 경우 가정양육 지속 의사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대조되었다. 그러나, 0~2세 영아자녀를 둔 경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지속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15~20만원 인상시 10~15만원 인상 시에 비해 가정양육 지속의사가 0~2세에서 대폭 상승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또한 2세의 경우 10~15만원, 15~20만원이라는 다소 높은 금액의 인상액이 제시되자 가정양육지속의사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현재 2세가 영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의 금액 수준이 다소 낮음으로 인해 기관을 조기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으나, 어머니가 현재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 미취업상태인 경우 양육수당 15~2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55%이상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10~15만원 인상 시에 비해서도 가정양육 지속 의향이 대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종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34.8%가 15~20만원 인상시

가정 양육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가장 낮은 가정양육지속의향을 보임은 5~10만원, 10~15만원 인상 시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350~499만원 수준의 사례에서 15~20만원 인상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65.7%를 차지하였고, 199만원 이하가 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나 200~349만원 소득가구 47.6%, 500만원 이상 44%로 전 소득 가구대에서 고르게 높은 가정양육지속의향을 보여, 고소득 가구에서도 15~20만원 정도의 금액 인상은 가정양육과 기관이용의 선택 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되었다.

〈표 IV-2-27〉 (월 10~15만원에 가정양육 지속의향 없는 경우) 월 15~20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을 지속할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계(수)
전체	52.3	47.7	100.0(130)
자녀연령			
0세	45.7	54.3	100.0( 46)
1세	54.5	45.5	100.0( 44)
2세	70.6	29.4	100.0( 17)
3세	60.0	40.0	100.0( 10)
4세	33.3	66.7	100.0( 6)
5세	0.0	100.0	100.0( 4)
6세	100.0	0.0	100.0( 3)
$X^2(df)$	na		
모 취업여부			
종일제	34.8	65.2	100.0( 23)
시간제	66.7	33.3	100.0( 3)
휴직중	60.0	40.0	100.0( 10)
자영업·재택	46.7	53.3	100.0( 15)
미취업	57.1	42.9	100.0( 77)
$X^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0.0	50.0	100.0( 4)
200~349만원	47.6	52.4	100.0( 63)
350~499만원	65.7	34.3	100.0( 35)
500만원 이상	44.0	56.0	100.0( 25)
$X^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나)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가정양육 전환효과

양육수당의 금액 인상으로 현재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무응답을 제외한 1,001사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가정 내 양육을 하며 양육수당을 수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전체 6.8%에 해당하였고, 19.2%는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유동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현재 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비해서는 인상에 따른 행동 변화는 적지만 유동적인 경우까지 포함해 약 26.0%는 전환 가능성이 있어 금액 인상의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유아보다는 영아인 경우, 즉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01$ ). 개별 연령 중에서는 자녀가 현재 0세일 경우 명확한 전환 의향이 가장 컸고 2세의 전환의사도 8.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유동적인 경우는 0세보다는 1~2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유동적 의사는 3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0세의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고 1~2세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호도 있으나 기관 이용도 급증하는 시기로 금액 수준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기관 이용 혹은 가정 내 양육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개별 연령에 따른 전환의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1$ ).

〈표 IV-2-28〉 양육수당 인상시 가정 양육으로의 전환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의향 있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의향 없다	계(수)
전체	6.8	19.2	74.0	100.0(1,001)
영유아구분				
영아	7.9	23.1	69.0	100.0( 594)
유아	5.2	13.5	81.3	100.0( 407)
$X^2(df)$		19.12(2) <sup>***</sup>		
자녀연령				
0세	11.3	18.9	69.8	100.0( 106)
1세	6.0	23.0	71.0	100.0( 217)
2세	8.1	24.7	67.2	100.0( 271)
3세	4.6	16.8	78.6	100.0( 173)
4세	5.0	14.3	80.7	100.0( 140)
5세 이상	6.4	6.4	87.2	100.0( 94)
$X^2(df)$		28.13(10) <sup>**</sup>		
양육수당 수혜 경험				
있음	9.7	26.6	63.7	100.0( 391)

(표 IV-2-28 계속)

구분	의향 있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의향 없다	계(수)
없음	4.9	14.4	80.7	100.0( 610)
$X^2(df)$		35.76(2) <sup>***</sup>		
모 취업상태				
종일제	4.6	15.7	79.6	100.0( 452)
시간제	3.1	16.9	80.0	100.0( 65)
휴직중	13.3	20.0	66.7	100.0( 15)
자영업·재택	12.1	23.2	64.6	100.0( 99)
미취업	8.5	22.7	68.8	100.0( 365)
$X^2(df)$		22.14(8) <sup>**</sup>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8	19.6	68.6	100.0( 51)
200~349만원	9.4	26.7	63.9	100.0( 341)
350~499만원	5.7	16.0	78.4	100.0( 282)
500만원 이상	4.0	14.4	81.7	100.0( 278)
$X^2(df)$		31.35(6)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  $p < .01$ , \*\*\*  $p < .001$ .

한편 현재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과거 양육수당 수혜 경험에 따라서도 양육수당 인상시 가정내 양육으로 전환할 의사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01$ ). 과거에 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명확히 전환의사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도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금액 인상시 다시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수혜 경험 없는 가구에 비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도 전환 의사에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어머니가 휴직 중이거나 자영업/재택근무 중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 전환의사가 현재 종일제나 시간제로 취업중인 어머니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금액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p < .01$ ).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명확히 전환하겠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액수준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그 정도 금액에서의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향을 살펴보았다.

〈표 IV-2-29〉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어린이집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의향 있다	의향 없다	모름/무응답	계(수)
금액 인상 수준				
5~10만원	20.8	77.1	2.1	100.0(192)
10~15만원	26.4	70.9	2.7	100.0(148)
15~20만원	32.4	66.7	1.0	100.0(1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가정양육 전환 의사에 대해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사례(192사례)에 대해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결과, 5~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192사례 중 20.8%(40사례)였다.

5~10만원 인상 시에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여전히 없다는 대상자 148사례 중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26.4%이며(39사례), 여전히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여전히 없는 105사례 중 15~2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32.4%였다(34사례).

결과적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 의사는 최초 6.8%(68사례)에서 유동적인 경우 15~20만원 인상 시 응답가구 1008사례 중 181사례가 가정양육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약 18%).

현재 양육수당 수급 가구가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을 계획보다 지속할 가능성에 비해서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재선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양육수당의 금액 인상은 가정 내 양육 가구의 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양육수당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이 유동적으로 이라고 응답한 사례를 그 인상 금액 수준별로 자녀연령, 모 취업 상태, 가구소득에 따른 전환의사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IV-2-30> ~ <표 IV-2-32>에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사례의 응답을 분석해 제시하였다.

먼저 유동적인 의사를 보였던 188사례(무응답 제외) 대상으로 월 5~10만원 양육수당 금액이 인상된다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불가능하였지만 자녀연령별로는 3세의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7.6%), 자녀 연령이 4세인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전환의사를 보였다(26.3%). 기타 다른

연령대는 가정양육으로 전환의사가 20% 초반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0세의 경우 가장 낮은 가정양육 전환의사를 보였다. 가정양육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영아기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 보육이 불가피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양육수당 금액 인상분이 상당히 크지 않은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대로 3~4세의 경우 대리양육 필요성이 없더라도 기관 이용이 본격화되는 연령으로 양육수당의 인상은 기관 대리양육이 반드시 필요치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시간제근무중인 경우 양육수당 5~10만원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36.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미취업중인 경우에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0%). 휴직중인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자 중 휴직중인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 5~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사례는 전무하였고, 200~349만원에 해당하는 사례(23.6%)와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23.1%)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가 유사하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구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구에서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수당 수혜가구의 가정양육지속의사의 차이와는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표 IV-2-30〉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월 5~10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21.3	78.7	100.0(188)
자녀연령			
0세	10.0	90.0	100.0( 20)
1세	20.4	79.6	100.0( 49)
2세	21.2	78.8	100.0( 66)
3세	27.6	72.4	100.0( 29)
4세	26.3	73.7	100.0( 19)
5세 이상	20.0	80.0	100.0( 5)
$X^2(df)$	na		

(표 IV-2-30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수)
모 취업여부			
종일제	15.7	84.3	100.0( 70)
시간제	36.4	63.6	100.0( 11)
휴직중	0.0	100.0	100.0( 3)
자영업·재택	9.5	90.5	100.0( 21)
미취업	28.0	72.0	100.0( 82)
$X^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100.0	100.0( 10)
200~349만원	23.6	76.4	100.0( 89)
350~499만원	18.2	81.8	100.0( 44)
500만원 이상	23.1	76.9	100.0( 39)
$X^2(df)$	3.34(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다음으로 양육수당 5~10만원 인상 시에는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연령별 금액에서 양육수당을 월 10~15만원씩 더 인상한다면 자녀의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불가능하였지만 자녀연령이 2세인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31.4%), 그 다음으로 4세, 0세 순으로 가정양육으로 전환의사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경우 양육수당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9.3%). 5~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간제 근로중인 경우에는 10~15만원 인상 시 더 이상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시간제 근로중인 사례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높거나 자녀 연령이 더 어린 경우 등 가정양육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5~10만원 인상 수준에서도 이미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표명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즉, 남아있는 시간제 근로 사례는 기관 보육의 필요성이 금액인상으로 얻는 이득보다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4.4%), 350~500만원 가구가 30.6%, 200~349만원에 해당하는 가구 27.7%, 500만원 이상

가구 20.0% 순으로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가 높게 나타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1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일정부분 주의를 요하나, 5~10만원 수준에서 전혀 가정양육으로 전환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199만원 이하 가구가 10~15만원 인상시 대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고자 한 점은 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저소득층의 유인 효과를 가늠하는데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겠다.

〈표 IV-2-31〉 (월 5~10만원에 전환할 의향 없는 경우) 월 10~15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27.1	72.9	100.0(144)
자녀연령			
0세	27.8	72.2	100.0( 18)
1세	24.3	75.7	100.0( 37)
2세	31.4	68.6	100.0( 51)
3세	20.0	80.0	100.0( 20)
4세	29.6	71.4	100.0( 14)
5세 이상	25.0	75.0	100.0( 4)
$X^2(df)$	na		
모 취업상태			
종일제	19.0	81.0	100.0( 58)
시간제	0.0	100.0	100.0( 7)
휴직중	0.0	100.0	100.0( 3)
자영업·재택	31.6	68.4	100.0( 19)
미취업	39.3	60.7	100.0( 56)
$X^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4.4	55.6	100.0( 9)
200~349만원	27.7	72.3	100.0( 65)
350~499만원	30.6	69.4	100.0( 36)
500만원 이상	20.0	80.0	100.0( 30)
$X^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같은 방식으로 양육수당 10~15만원 인상 시에는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월 15~20만원씩 더 인상할 경우 자녀의 시설향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를 살펴보았다.

사례수의 유실에 따라 역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불가능하였지만 100.0%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을 보인 5세자녀를 둔 3사례를 제외하면, 자녀연령은 3세인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3.8%). 1, 2세의 경우도 30% 이상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를 보였고, 오히려 0세의 경우는 15.4%로 가정양육으로 전환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1~2세 뿐 아니라 기관 이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3세의 경우도 양육수당이 충분히 인상될 경우에는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반면 기관을 이용하는 0세의 경우는 기관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가구로 양육수당 인상에 따른 유인 효과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현재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사례수가 매우 적은 휴직중인 경우를 제외하면(3사례)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경우 양육수당 15~2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2.9%). 시간제 근로중인 경우 10~15만원 인상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가 전무하였으나, 15~20만원으로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14.3%로 나타나는 등 종일제, 자영업·재택 근로 등 취업상태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사례수가 매우 적지만,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사례에서 15~20만원 인상 시의 가정양육 전환 의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외에도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를 포함해 전 소득계층에서 고르게 30% 전후한 가정양육 전환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 전환 의사 비율에 비해 대폭 상승한 가정양육 전환의사를 보여, 15~20만원 정도의 인상 수준은 비교적 고소득 가구에도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고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은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더라도 결국 다른 형태의 사교육 기관 이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액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 IV-2-32〉 (월 10~15만원에 전환할 의향 없는 경우) 월 15~20만원 정도  
인상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32.7	67.3	100.0(104)
자녀연령			
0세	15.4	84.6	100.0( 13)
1세	33.3	66.7	100.0( 27)
2세	31.4	68.6	100.0( 35)
3세	43.8	56.2	100.0( 16)
4세	20.0	80.0	100.0( 10)
5세 이상	100.0	0.0	100.0( 3)
$\chi^2(df)$	na		
모 취업여부			
종일제	21.7	78.3	100.0( 46)
시간제	14.3	85.7	100.0( 7)
휴직중	66.7	33.3	100.0( 3)
자영업·재택	23.1	76.9	100.0( 13)
미취업	52.9	47.1	100.0( 34)
$\chi^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0	60.0	100.0( 5)
200~349만원	34.0	66.0	100.0( 47)
350~499만원	28.0	72.0	100.0( 25)
500만원 이상	30.4	69.6	100.0( 23)
$\chi^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 2) 출산의지 제고 효과

다음으로 양육수당 수혜가구와 어린이집 이용가구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자녀 출산 의사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양육수당 수혜가구의 응답 결과는 <표 IV-2-33>에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양육수당 수혜가구 중 24.5%가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9.1%는 금액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양육수당 수급자녀의 연령과 총자녀수, 거주지역 규모, 어머니의 취업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의 연령은 유아보다는 영아일 경우 양육수당 금액 인상으로 인해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자녀수가 적을 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 거주가구에서 금액 인상으로 인한 추가 출산 의사가 뚜렷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자영업이나 재택근무를 할 경우 추가 출산 의사가 가장 높고, 인상금액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견해는 미취업상태인 경우(42.9%)가 가장 높고 휴직중인 경우도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39.8%).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경우 가장 낮아서 (33.4%) 양육수당이 충분히 인상될 경우 미취업모 가구의 추가 출산 의도가 증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구소득은 대체로 낮을수록 양육수당 인상에 추가 출산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29.9%는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 응답했고, 금액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경우도 41.8%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양육수당 인상에 따라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30세 이상보다 높았으나 이 같은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3〉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 출산 의사(양육수당 수혜가구)

구분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위: %(명) 계(수)
전체	24.5	39.1	36.0	100.0(1011)
영유아구분				
영아	26.0	39.9	34.1	100.0( 832)
유아	18.3	36.0	45.7	100.0( 175)
$X^2(df)$		9.38(2)**		
자녀수				
1명	31.2	39.5	29.3	100.0( 410)
2명	20.2	37.8	42.0	100.0( 471)
3명	19.8	43.7	36.5	100.0( 126)
$X^2(df)$		22.99(4)***		
지역 규모				
광역시	25.3	38.3	36.4	100.0( 475)
중소도시	21.6	41.5	36.9	100.0( 485)
읍면	48.0	26.0	26.0	100.0( 50)
$X^2(df)$		17.47(4)**		
모 취업상태				
종일제	26.6	32.9	40.5	100.0( 158)

(표 IV-2-33 계속)

구분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수)
시간제	21.2	36.4	42.4	100.0( 33)
휴직중	19.4	39.8	40.9	100.0( 93)
자영업·재택	34.7	24.5	40.8	100.0( 98)
미취업	23.7	42.9	33.4	100.0( 616)
$X^2(df)$		18.47(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9.9	41.8	28.4	100.0( 67)
200~349만원	28.2	40.2	31.6	100.0( 440)
350~499만원	20.5	41.9	37.6	100.0( 229)
500만원 이상	19.6	35.7	44.8	100.0( 230)
모름/무응답	29.3	29.3	41.5	100.0( 41)
$X^2(df)$		18.59(8)*		
모 연령				
29세 이하	35.1	39.4	25.5	100.0( 94)
30~34세	24.1	39.8	36.1	100.0( 415)
35세 이상	23.1	38.5	38.3	100.0( 493)
$X^2(df)$		8.3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자 대상」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금액수준에 따른 추가 출산 의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395 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그 정도 금액에서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5~10만원 인상 시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395 사례 중 35.7%(매우 높아질 것 2.8%+약간 높아질 것 32.9%)로 141사례에 해당하였다. 5~10만원 인상 시에는 추가 출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251사례 중 10~15만원 인상 시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우는 32.3%였다(81사례).

다시, 10~15만원 인상 시에도 추가 출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169 사례를 대상으로 15~20만원 인상 시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46.8%가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응답하였다(79사례).

요컨대 양육수당 인상 시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우는 최초 24.5%에서 금액 인상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 순차적으로 15~2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총 응답가구 1011사례 중 549사례가 추가 출산의향이 증진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약 54.3%). 특히 현재 각 연령별 양육수당 금액에서 15~20만원 가량 대폭 인상될 경우 추가 출산 증진 의사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34〉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추가출산의사 증진 여부(양육수당 수혜 가구)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아질 것임	약간 높아질 것임	영향을 받지 않음	모름/무응답	계(수)
금액 인상 수준					
5~10만원	2.8	32.9	63.5	0.8	100.0(395)
10~15만원	0.0	32.3	67.3	0.4	100.0(251)
15~20만원	1.2	45.6	53.3	0.0	100.0(1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자 대상」 자료임.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 중 19.8%가 양육수당 인상 시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양육수당 수혜가구의 추가 출산 의사 증진 가능성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금액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도 24.8%로 양육수당 수혜가구의 39.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과 총 자녀수,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양육수당 수혜가구와는 달리 거주지역 규모,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은 유아보다는 영아일 경우 양육수당 금액 인상으로 인해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자녀수가 적을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라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양육수당 수혜 가구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양육수당 금액 인상 시 추가 출산 의사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가구소득 350만원을 기준으로 350만원 미만 가구는 약 25%~26%수준으로 유사하며, 35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5.1%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의해 추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추가 출산 의사 증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는 응답이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29세 이하에서 양육수당 인상에 따라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35.3%에 달하였음에 반해 35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의사가 16.8%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는 자녀 연령과 어머니 연령, 총 자녀수라는 인구학적 변인이 추가 출산 의사의 주된 영향요인이며, 이에 더하여 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의한 추가 출산 의사는 가구소득에 따라 영향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5〉 양육수당 인상시 추가 출산의사(어린이집 이용가구)

구분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이다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위: %(명)
				계(수)
전체	19.8	24.8	55.4	100.0(1,000)
영유아구분				
영아	23.4	26.0	50.6	100.0( 593)
유아	14.7	22.9	62.4	100.0( 407)
$X^2(df)$		16.21(2) <sup>***</sup>		
자녀수				
1명	27.3	26.5	46.2	100.0( 253)
2명	19.2	24.9	56.0	100.0( 579)
3명 이상	11.3	21.4	67.3	100.0( 168)
$X^2(df)$		22.48(4) <sup>***</sup>		
지역 규모				
광역시	19.0	25.6	55.4	100.0( 399)
중소도시	21.1	24.7	54.2	100.0( 559)
읍면	14.0	18.0	68.0	100.0( 50)
$X^2(df)$		4.03(4)		
모 취업상태				
종일제	16.7	24.8	58.5	100.0( 455)
시간제	26.6	18.8	54.7	100.0( 64)
휴직중	13.3	33.3	53.3	100.0( 15)
자영업·재택	22.2	28.3	49.5	100.0( 99)
미취업	22.1	24.6	53.3	100.0( 362)
$X^2(df)$		8.83(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5.0	25.0	50.0	100.0( 52)
200~349만원	26.3	24.2	49.6	100.0( 339)
350~499만원	15.1	27.8	57.0	100.0( 284)
500만원 이상	15.1	23.7	61.2	100.0( 278)
$X^2(df)$		19.47(6) <sup>**</sup>		
모 연령				
29세 이하	35.3	19.1	45.6	100.0( 68)
30~34세	21.8	26.5	51.6	100.0( 339)
35세 이상	16.8	24.5	58.7	100.0( 588)
$X^2(df)$		16.08(4) <sup>**</sup>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  $p < .01$ , \*\*\*  $p < .001$ .

양육수당 수혜가구에 질문한 방식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 양육수당 금액 인상 수준에 따른 추가 출산 의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247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그 정도 금액에서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5~10만원 인상 시 지금보다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247사례 중 31.1%(매우 높아질 것 2.0%+약간 높아질 것 29.1%)로 77사례에 해당하였다. 5~10만원 인상 시에는 추가 출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168사례 중 10~15만원 인상 시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우는 32.1%였고(54사례), 10~15만원 인상 시에도 추가 출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111사례 중 15~20만원 인상 시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우는 43.2%로 집계되었다(48사례).

결과적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우는 최초 19.7%(198사례)에서 금액을 15~2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총 응답가구 1,008사례 중 378사례가 추가 출산의향이 증진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37.5%).

양육수당 수혜가구와 동일하게 금액수준이 현재 수급가능 양육수당 수준에 15~20만원이 추가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출산 의사가 증가될 것이라는 응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육수당수급가구와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응답을 비교해 볼 때,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현재 양육수당 수급가구에 비해서는 인상금액 수준별 추가 출산 증진 의사와 전체적 추가 출산 증진 효과는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IV-2-36〉 (인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인상수준에 따른 추가출산의사 증진 여부(어린이집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아질 것임	약간 높아질 것임	영향을 받지 않음	모름/무응답	계(수)
금액 인상 수준					
5~10만원	2.0	29.1	68.0	0.8	100.0(247)
10~15만원	0.0	32.1	66.1	1.8	100.0(168)
15~20만원	2.7	40.5	56.8	0.0	100.0(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자료임.

### 3) 다자녀 추가 지원 도입 효과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양육수당 수혜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이용자 조사에 서는 양육수당제도에 같은 연령대 아동이라도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게 추가금액이 지원되는 ‘다자녀 추가지원’ 방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찬성하는 사례에 한해 이러한 방식 도입시 추가자녀 출산의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표 IV-2-37〉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방안 찬성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양육수당 수혜가구	88.2	10.8	1.0	100.0(1,011)
어린이집 이용가구	87.1	11.6	1.3	100.0(1,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자 대상」,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자료임.

응답 결과, 현재 양육수당 수혜가구와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의견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양 집단 모두 이러한 ‘다자녀 추가지원 방식’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87~88%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찬성한다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다자녀 가정 추가지원 방식이 현 양육수당제도에 도입된다면, 후속 자녀 출산의향이 지금보다 제고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IV-2-38〉 (찬성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제도 도입 시 추가출산 의향 상승 정도(양육수당 수혜 가구)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체	13.5	54.1	32.4	100.0(888)
영유아구분				
영아	14.9	55.1	30.0	100.0(739)
유아	6.7	49.0	44.3	100.0(149)
$X^2(df)$		14.75(2)**		
자녀수				
1명	18.0	60.9	21.2	100.0(373)
2명	10.8	50.8	38.5	100.0(400)
3명 이상	8.7	43.5	47.8	100.0(115)
$X^2(df)$		43.59(4)***		

(표 IV-2-38 계속)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수)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4	53.2	27.4	100.0( 62)
200~349만원	15.7	56.9	27.4	100.0(401)
350~499만원	11.6	55.6	32.9	100.0(207)
500만원 이상	10.4	46.4	43.2	100.0(183)
모름/무응답	5.7	54.3	40.0	100.0( 35)
$\chi^2(df)$	19.8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자 대상」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응답결과 전체적으로는 다자녀 추가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면, 후속 자녀 출산의사가 지금보다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5%, 약간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4.1%로 약 67.6%가 추가 출산의향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추가 출산 의사 증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인 자녀 연령과 총 자녀 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현재 자녀가 0~2세 영아일 경우 유아인 경우보다 다자녀추가지원 도입 시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는 적을수록,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다자녀 추가 지원으로 추가 출산 의사가 지금보다 증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에서는 다자녀 가정 추가지원 방식이 양육수당에 도입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지금보다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3%, 약간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4.2%로 총 58.5% 정도 추가 출산 의향이 지금보다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승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2-39>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차분석 결과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연령, 총 자녀 수, 과거 양육수당 수혜 경험, 가구소득, 어머니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수당 수혜 가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 것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 자녀 연령과 총 자녀 수였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인 경우보다, 총 자녀 수가 적을수록 다자녀 추가지원 도입 시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수당 수혜가구와는 달리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다자녀 추가지원 방식 도입 시

추가 출산 의사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고소득 가구보다는 중·저소득 가구에서의 출산의지 제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199만원 이하 소득 가구보다는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349만원 이하 가구에서 다자녀 추가 지원 도입에 따라 추가 출산 의사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과거 양육수당 수혜 경험에 따라 다자녀 추가 지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출산 의사 증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과거 양육수당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추가 자녀 출산 의사가 지금보다 증진될 것이라는 비율이 수혜 경험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V-2-39〉 (찬성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제도 도입 시 추가출산 의향 상승 정도(어린이집 이용 가구)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수)
전체	14.3	44.2	41.5	100.0(874)
영유아구분				
영아	14.2	47.5	38.3	100.0(522)
유아	14.5	39.2	46.3	100.0(352)
$X^2(df)$		6.53(2)*		
자녀수				
1명	19.7	50.2	30.0	100.0(213)
2명	13.2	43.8	43.0	100.0(507)
3명 이상	10.4	37.0	52.6	100.0(154)
$X^2(df)$		21.58(4)***		
양육수당 수혜 경험				
있음	14.3	50.9	34.8	100.0(342)
없음	14.3	39.8	45.9	100.0(532)
$X^2(df)$		11.87(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7.4	43.5	39.1	100.0( 46)
200~349만원	19.4	46.2	34.4	100.0(299)
350~499만원	10.9	49.2	39.9	100.0(248)
500만원 이상	11.2	37.6	51.2	100.0(242)
모름/무응답	12.8	38.5	48.7	100.0( 39)
$X^2(df)$		23.64(8)**		
모 연령				
29세 이하	19.7	50.8	29.5	100.0( 61)
30~34세	15.9	49.7	34.5	100.0(296)

(표 IV-2-39 계속)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수)
35세 이상	12.7	40.0	47.3	100.0(512)
$X^2(df)$		17.00(4)**		
모 학력				
고등학교 이하	17.3	44.1	38.6	100.0(221)
대학 졸	17.0	47.7	35.3	100.0(153)
대학교 졸	12.8	42.2	45.1	100.0(449)
대학원 이상	4.3	53.2	42.6	100.0( 47)
모름/무응답	33.3	0.0	66.7	100.0( 3)
$X^2(df)$		13.6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양육수당 수혜자 및 어린이집 이용자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영유아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실제 추가 출산을 유인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다자녀 출산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추가 출산 의사를 강력히 유인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자녀 수와 자녀 연령임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가 출산가능성이 낮은 가구에 경제적 유인으로 출산을 유인한다기 보다는 자녀수나 기존 자녀와의 터울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추가 출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을 가구에 출산결정을 좀 더 강력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바. 양육수당 해외사례

제 6절에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양육수당 정책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실제 양육수당 수혜율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1) 핀란드

핀란드는 기관보육 뿐 아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던 국가로 알려져 있다(이윤진·송신영, 2009:

6). 핀란드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각종 현금 지원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MSA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근로에 관한 입법에서 '부모됨'을 더욱 고려하며, ②재정지원은 자녀를 위한 최적의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③아동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화하며, ④자녀양육에 부모간에 더욱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www.stm.fi: 검색일 2012. 6. 19; 이정원 외, 2012: 77에서 재인용).

이하에서는 핀란드 정부에서 중시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 선택권, 부모권이라는 측면에서 핀란드의 '양육수당'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에 만 3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공공보육서비스의 이용과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선택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 73).

현재 핀란드에서는 취학전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부모가 3세 미만 자녀를 집에서 직접 돌보고자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개인보육모를 고용해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보육수당(private day care allowance)'이다. '사보육수당'은 공공 보육서비스 기관이 아닌 민간 보육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개인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 연령은 취학전까지이다. 가정에서 개인보육모를 고용해 자녀를 돌볼 경우에는 '사보육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Kela, 2014: 17).

즉,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직접 양육 보다는 '공·사의 보육기관 미이용'을 지급 조건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양육수당'과 지급조건과 취지면에서 유사하다 하겠다(이정원 외, 2012: 83).

가정양육수당은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각각 지급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양육수당과 동일하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 양육수당(care allowance) 부분과 가구규모

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care supplement)’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이정원 외, 2012: 83). 또한 ‘양육보조금’ 부분은 가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3세 미만 자녀 중 단 한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된다(Kela, 2014: supplement 3).

가정양육수당의 전 수급대상자 동일지급액 부분인 ‘양육수당(care allowance)’은 2014년 기준 3세 미만아 1명에 대해 341.06€<sup>32)</sup>이며, 3세 미만아 자녀가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추가 1명당 102.11€<sup>33)</sup>, 3세 이상 취학전 아동 1명당 65.61€<sup>34)</sup> 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Kela, 2014: supplement 3).

〈표 IV-2-40〉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지급액(동일금액 양육수당 부분)\_2014

양육수당 지급액(€)	
3세 미만 자녀 1명(입양아의 경우 3세 이상까지)	341.06
3세 미만 자녀 추가 1명당	102.11
취학전 자녀 추가 1명당	65.61

자료: Kela(2014). Guide to benefits.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양육수당 금액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된다.

먼저, 3세 미만 자녀 1명까지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추가적으로 3세 미만아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별 양육수당이 동일하게 추가 지급되는데 반해 핀란드에서는 추가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3세를 기준으로 금액수준이 차이가 나서 3세 이상이 3세 미만에 비해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증가에 따른 차등지급과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등지급부분인 ‘양육보조금’은 2014년 현재 전액 지급받을 경우 매월 182.52€<sup>35)</sup>이며 가구내 수급 대상 자녀 중 1명에게만 지급된다. 양육보조금은 가구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이 있고,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도 정해져 있다. 전액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보조금이 감액된다(Kela, 2014: supplement 4).

32) 2014.7.23.일 기준 원화 약 47만원에 해당함.

33) 2014.7.23.일 기준 원화 약 14만 750원에 해당함.

34) 2014.7.23.일 기준 원화 약 9만 440원에 해당함.

35) 2014.7.23.일 기준 원화 약 25만 1,600원에 해당함.

〈표 IV-2-41〉 가구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기준: 2014

가구규모	양육보조금 전액 수급을 위한 소득 상한(€/월)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 소득 상한(€/월)
2	1,160	2,747.09
3	1,430	3,371.65
4	1,700	4,010.32

자료: Kela(2014). Guide to benefits.

가정양육수당은 매달 말일에 실제 해당 자녀를 돌보는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과세소득이다(Kela, 2014: 17).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전 수급대상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과 가구규모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되는 부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과 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나 추가 3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액이 있고, 3세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즉,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취약한 계층(다자녀, 저소득)에 대한 배려가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3세 미만아가 있는 경우 상당한 양육수당을 보장하여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본 1자녀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나 3세 미만 추가 자녀에 대해서는 금액이 대폭 감소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하겠다.

## 2)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수당 제도(cash-for-care)를 199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녀 양육 방식으로 보육 관련 기관을 이용할지, 부모가 직접 돌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서문희 외, 2011: 80).

노르웨이에서 양육수당이 도입될 당시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논쟁이 있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 양육수당은 돌봄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부모들의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되었으며, 이에 반해 비판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감소시켜 전통적인 젠더-차별화된 가족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 반박하였다(Ellingsæter & Leria, 2006; 한경현,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기독교민당이 다수당이 된 중도연합 정부는 '양육수당으로 질 좋은

아동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양육수당 도입을 추진시켰다.

노르웨이 양육수당은 1998년 8월 도입 당시에는 1살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가 1999년 1월 1~2세 아동의 가족에게 확대되었으나 (Lappegård, 2010; 한경현, 2010에서 재인용), 2012년 8월에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개정법<sup>36)</sup>이 발효되어 현재는 만 2세아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육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이상~2세 미만의 자녀에게 공적 보조금을 제공하는 양육수당 제도는 아동의 기관 이용 시간과 아동 월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만약 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100% 제공받게 되는데, 2014년 현재 생후 13~18개월의 아동에게는 5,000 NOK(약 834\$)가 지급되며, 생후 19~23개월 아동에게는 3,303 NOK(약 502\$)가 지급된다. 기관을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50%를 제공받는다. 이 경우 생후 13~18개월 아동에게는 최대 2,500 NOK(약 417\$)가 지급되며, 생후 19~23개월 아동에게는 1,652 NOK(약 276\$)가 지급된다. 최대 수혜할 수 있는 기간은 11개월이다(표 IV-2-42 참조). 양육수당의 금액은 국회(the Storting)가 매년 정하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과세 대상이다(이정원·이세원, 2013).

〈표 IV-2-42〉 노르웨이 양육수당 지원 체계

기관 이용 시간	양육수당 비율	13~18개월 지원액/월	19~23개월 지원액/월
미이용	100%	NOK 5,000	NOK 3,303
주당 19시간 이하	50%	NOK 2,500	NOK 1,652
주당 20시간 이상	-	-	-

자료: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2014). Cash-for-care benefits for the parents of toddlers.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2세아 중 양육수당을 수혜받는 비율은 전체의 68%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6세 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수혜 비율이 높아진다. 모의 근로시간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일주일에 3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가구가 그 이상으로 일하는 가구보다 양육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어머니가 미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수혜 비율이 높음이 나타났다(표 IV-2-43 참조).

36)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August, 2012). Family Policy(www.regjeringen.no)에서 인출

〈표 IV-2-43〉 노르웨이 제 특성별 양육수당 수혜 비율: 2010

단위: %

구분	1~2세 전체	아동 연령		6세 미만 자녀 수			모의 근로시간			
		1세	2세	1명	2명	3명	주37시간 이상	주37시간 미만	휴직	미취업
비율	68	68	67	71	66	64	61	69	44	85

자료: Statistics Norway(2011). Children aged 1~2 Proportion of children in different groups for whose parents receive cash-for-care; 서문희 외(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노르웨이 양육수당의 수혜자 수와 소요 예산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수혜받고 있는 가구는 총 50,500가구로 전년도의 63,700가구보다 13,200가구가 줄었다. 2007년에 91,112가구가 수혜받던 것과 비교할 때 44.6%가 감소한 결과이다. 소요예산으로 살펴보면 2013년 양육수당 예산은 1,176,000,000 NOK로 미국 환율로 약 18억 6천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소요예산도 마찬가지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2013년 예산은 2007년 1,942,000,000 NOK에 비하면 39.4%가 감소한 예산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가 만 1세 영아로 제한된 것으로 수혜자 수 감소의 원인을 찾고 있다.

〈표 IV-2-44〉 노르웨이 양육수당 수혜자 수 및 예산: 2007~2013

단위: 명, NOK mill.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혜자 수	91,112	80,059	72,639	68,000	65,600	63,700	50,500
소요 예산	1,942	1,649	1,462	1,354	1,308	1,223	1,176

자료: Statistics Norway(2013).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013.

## 사. 요약 및 정책 시사점

그간 차상위 계층 이하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2013년 3월 이후 취학전 전 연령, 전 소득계층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보편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용과 현금지급 방식의 양육수당에 대해 모두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후 부모의 양육방식의 선택권과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정책 인지와 만족도도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양육수당 지원 실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육수당 수혜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대해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점검하고, 현재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이 인상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점검하고자 양육수당 수혜가구와 어린이집 이용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양육수당 수혜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 모두 낮지 않으나,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 시 양육수당 수혜 가구는 3.7점,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3.3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양육수당 수혜 가구는 특성상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고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양육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 가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양육수당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육수당의 제 특성 및 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93.1%).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액이 낮아지는 연령차등지급방식'으로 5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양육수당 지급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약 85%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문희·이혜민, 2013: 156), 현재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은 이전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이다.

이밖에 양육수당 수혜 가구는 지급대상의 전연령 확대에 대해 전소득 계층으로의 확대 보다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목별 편차는 존재하나 양육수당의 전연령·전계층으로의 지급대상 보편화라는 '취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신청 및 수급절차'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영아기 뿐 아니라 유아기에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연령별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양육수당을 자녀 양육 이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적 용도 내 이용으로 제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도 고려된 바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155). 그러나, 현금이 지니는 사용의

편의성이라는 부분에 부모 만족도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급 방식은 좀 더 고수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할 경우, 현재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양육수당 수급을 선택하여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6.7%로 많지 않고, 금액인상 수준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19.0%로 부모들은 기관이용-가정 양육 선택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경우, 인상금액 수준이 높게 제시될수록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려는 비율이 높아져, 양육수당을 15~20만원으로 인상할 시 기관이용자 중 약 18% 정도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동일한 방식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양육수당 수혜 가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기관 이용 시기를 더 연기할 가능성(가정양육을 계획보다 지속할 가능성)은 33.9%로 나타나, 양육수당 인상으로 인한 '관성효과'는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상금액 수준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는 27.6%였으며, 역시 인상금액이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으로 높게 제시될수록 가정양육을 지속하겠다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5~20만원까지 인상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전체 사례 대비 약 54.5%가 가정양육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양육수당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는 기관을 이용하고자 했던 계획보다 가정양육을 연장하여 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양육수당 인상으로 추가자녀 출산 의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 금액 수준이 인상될 경우 지금보다 추가 출산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4.5%였으며, 39.1%는 인상금액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상금액을 가정하여 제시한 결과 5~10만원 인상, 10~15만원 인상, 15~20만원 인상에 따라 추가 출산 의향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꾸준히 상승해 15~20만원까지 인상 시에는 전체 사례 대비 약 54.3%의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도 양육수당이 15~2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응답자 중 약 37.5%에서는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섯째, 다자녀 추가지원 도입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가구 대부분 찬성하여 동일하게 87.1%의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다자녀 추가지원 도입시 추가 출산 의향이 증진될 것인지에 대해 양육수당 수급 가구 중

67.6%,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5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추가 출산 의향 제고 여부는 현재 자녀 연령, 총 자녀 수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현재 자녀수가 적거나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추가출산의향이 높아서,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있더라도 이미 출산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출산을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 이용 가구가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가정 양육가구가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어 전반적으로 가정 내 양육 가구의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수당 인상을 통해 지나치게 빠른 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양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금액 인상 여부나 인상 수준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 인상이나 다자녀 추가지원 도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수당 인상이나 다자녀 추가지원을 도입할 경우 특히 추가 출산 의사가 증진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자녀수가 적거나 자녀연령이 어린 경우로 이미 어느 정도는 출산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러한 시도는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으나 여건에 따라 출산계획을 미루고 있는 가구의 출산 결정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3. 과제 2: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와 개선 요구

#### 가. 부모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 개요

어린이집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본 영유아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대상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 가구 중 시범실시 지역(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볼 수 있었던 가구는 전체의 31% 정도였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부산과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선

정하여 2013년 11월부터 미리 운영한 바가 있고,<sup>37)</sup> 2014년 4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sup>38)</sup>

본 조사 대상의 43.4%는 대도시 지역 가구였으며 44.3%는 중소도시 지역 가구였고, 전체의 12.3%는 읍면 지역 가구였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약 48%였으며, 전체의 약 52%는 외벌이 가구였다.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은 49%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전국 영유아 모가 취업한 비율인 39.5%보다 약 10% 가량 높았다. 이는 본 조사의 대상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임을 고려해 볼 때 취업모가 있는 가구가 전체 영유아 가구에서 많이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의 이용자가 된 아동의 연령은, 만 1세가 32.8%로 가장 많았고, 만 2세 23.6%, 0세 20.1%로 영아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 소득은 200~350만원 정도라는 응답이 38.9%였고, 350~500만원 정도라는 비율은 24.8%였다.

〈표 IV-3-1〉 조사대상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명)	구분	비율(명)
시범 실시 지역 여부		연령	
해당	31.1(218)	0세	20.1(141)
비해당	68.9(484)	1세	32.8(230)
지역 규모		2세	23.6(166)
대도시	43.4(305)	3세	12.4( 87)
중소도시	44.3(311)	4세	6.4( 45)
읍면	12.3( 86)	5세	4.7( 33)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맞벌이	48.1(338)	200만원미만	3.6( 25)
외벌이	51.9(364)	200만원~350만원 미만	38.9(273)
모 취업 여부		3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8(174)
취업	49.0(344)	500만원 이상	22.2(156)
미취업	51.0(358)	무응답	10.5( 74)
계(수)	100.0(702)	계(수)	100.0(702)

다음은 조사 대상의 부모 특성에 관련된 결과이다. 조사대상 영유아 부의 경

37) 보건복지부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2013년 11월 8일부터 부산,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0. 17).

38) 보건복지부는 2013년 11월부터 부산,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기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4. 21).

우 종일제로 근로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약 77%였고, 자영업을 한다는 응답도 18.7%로 나타났다. 영유아 모는 취업한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종일제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휴직 중이라는 응답도 전체 영유아 모의 7.3%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무 비율은 영유아 부모보다 모의 경우에 더 많았는데, 전체 영유아 모의 약 6%가 시간제 근무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었다.

영유아 부의 연령은 35~39세가 가장 많았으며, 모의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42%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영유아 부와 모의 경우 모두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영유아 부의 경우 9시간 14분, 영유아 모의 경우 7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2〉 조사대상 부모 특성

단위: %(명), 시간

구분	부	모	구분	부	모
근로형태			연령		
종일제	76.8(539)	28.9(203)	29세이하	2.0( 14)	8.5( 60)
시간제	2.1( 15)	5.8( 41)	30세~34세	28.8(202)	42.2(296)
휴직 중	0.3( 2)	7.3( 51)	35세~39세	42.9(301)	38.9(273)
자영업	18.7(131)	6.1( 43)	40세~44세	23.5(165)	9.7( 68)
채택 작업	0.7( 5)	0.9( 6)	45세이상	2.3( 16)	0.7( 5)
구직중	0.9( 6)	1.0( 7)	부재	0.6( 4)	-
미취업	-	50.0(351)	계(수)	100.0(702)	100.0(702)
부재	0.6( 4)	-	하루 평균 근로시간		
계(수)	100.0(702)	100.0(702)	8시간미만	2.5( 17)	22.7( 78)
시간제 근무시 주당 근로시간			8시간	46.4(321)	52.9(182)
주 20시간이하	40.0( 6)	46.3( 19)	9시간	15.3(106)	13.1( 45)
주 20~30시간	-	22.0( 9)	10시간	18.2(126)	7.8( 27)
주 30~40시간	26.7( 4)	26.8( 11)	10시간초과	17.6(122)	3.5( 12)
주 40시간이상	33.3( 5)	4.9( 2)	평균(시간)	9.24	7.82
계(수)	100.0( 15)	100.0( 41)	계(수)	100.0(692)	100.0(344)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본 가구의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 5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5.5%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유아의 경우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향이 많았으며, 영아는 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았다.

〈표 IV-3-3〉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계(수)
전체	15.1	10.4	53.3	20.9	0.1	0.1	100.0(702)
자녀 연령							
0세	12.1	9.9	31.2	46.1	0.7	0.0	100.0(141)
1세	13.0	8.7	53.5	24.8	0.0	0.0	100.0(230)
2세	13.3	8.4	66.3	12.0	0.0	0.0	100.0(166)
3세	19.5	11.5	65.5	2.3	0.0	1.1	100.0( 87)
4세	37.8	24.4	35.6	2.2	0.0	0.0	100.0( 45)
5세	9.1	12.1	72.7	6.1	0.0	0.0	100.0( 33)
X <sup>2</sup> (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2)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실태

### 가) 입소대기 경험

다음 <표 IV-3-4>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 전 기존 수기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대기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고, 대기했던 어린이집이 어디였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질문 결과 기존 수기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대기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58.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수기 방식으로 입소 대기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수기 방식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대기해봤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체의 약 42%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수기 방식으로 대기해봤다고 응답해봤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30%로 비교적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가정 어린이집을 대기해봤다는 응답도 전체의 16%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대기 경험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았고, 읍면 지역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기 경험이 더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대기 경험이 더 많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대기 경험이 많았다.

<표 IV-3-4>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대기해 본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있음	계(수)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수)
전체	58.4	100.0(702)	29.3	7.6	3.9	42.4	16.3	0.5	100.0(410)
지역 규모									
대도시	56.4	100.0(305)	32.0	5.2	1.7	44.2	15.7	1.2	100.0(172)
중소도시	59.6	100.0(311)	26.5	7.6	5.4	41.6	18.9	0.0	100.0(185)
읍면지역	61.6	100.0(86)	30.2	15.1	5.7	39.6	9.4	0.0	100.0(53)
$\chi^2(df)$	1.03(2)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다음은 수기 방식으로 어린이집 대기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했던 기간을 나타낸 결과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전체의 61.2%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전체 수기 방식 대기자의 약 15%가 이에 응답하였다. 1년 이상 대기해보았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9.3%로 나타났다.

또한 외별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수기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1년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추가적으로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대기 기간을 주관식으로 응답했던 조사 대상자들의 대기 기간을 분석하였다. 수기 방식으로 최대 대기했던 기간은 평균적으로 5.22개월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맞벌이 가구의 평균 최대 기간이 5.31개월로, 외별이 가구의 5.13개월보다 길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가 외별이 가구보다 어린이집을 수기 방식으로 더 길게 대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대기했던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계(수)	평균 (개월)
전체	61.2	15.4	14.1	6.6	1.0	1.7	100.0(410)	5.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7	13.6	16.0	5.3	1.0	2.4	100.0(206)	5.31
외별이	60.8	17.2	12.3	7.8	1.0	1.0	100.0(204)	5.13
$\chi^2(df)/t$	na							0.4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다음 <표 IV-3-6>은 어린이집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해 본 기관의 개소수를 질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최대로 대기해 본 기관 개소수는 1~2개가 75.9%로 가장 많았고, 3~5개 정도를 대기해보았다는 응답도 전체 수기 방식 대기 경험자의 20%로 나타났다. 6~8개소에 대기한 비율은 2.2%, 9개 이상은 2%로 대부분 5개소 이하로 대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어린이집에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대기 기관 개소수를 주관식으로 응답했던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수기 방식으로 대기해 본 기관의 최대 개소수는 평균 2.28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2.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2.17개소, 읍면 지역 2.03개소 순이었다.

<표 IV-3-6>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해 본 기관 개소수

단위: %(명), 개소

구분	1-2개	3-5개	6-8개	9-10개	11개 이상	평균 (개소수)	계(수)
전체	75.9	20.0	2.2	1.5	0.5	2.28	100.0(410)
지역 규모							
대도시	77.3	19.8	2.3	0.6	0.0	2.17	100.0(172)
중소도시	73.0	21.1	2.2	2.7	1.1	2.46	100.0(185)
읍면지역	81.1	17.0	1.9	0.0	0.0	2.03	100.0( 53)
$X^2(df)/F$			na			0.6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나)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경험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이 시스템으로 대기해 본 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대기해 본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체 입소 대기자의 약 42%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기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체 응답자의 32%가 대기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기 방식으로 입소 대기한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시범 실시 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비시범 지역보다 많았고, 비시범 지역

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도시 지역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외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3-7>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대기해 본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계(수)
전체	32.2	6.7	3.0	16.2	41.9	100.0(702)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37.2	6.0	4.1	9.2	43.6	100.0(218)
비시범지역	30.0	7.0	2.5	19.4	41.1	100.0(484)
$X^2(df)$			13.97(4)**			
지역 규모						
대도시	31.5	4.3	1.3	13.8	49.2	100.0(305)
중소도시	31.2	7.4	4.5	19.6	37.3	100.0(311)
읍면지역	38.4	12.8	3.5	12.8	32.6	100.0( 86)
$X^2(df)$			25.3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7	7.4	3.6	16.9	38.5	100.0(338)
외벌이	30.8	6.0	2.5	15.7	45.1	100.0(364)
$X^2(df)$			3.6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p < .01$ .

다음 <표 IV-3-8>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해 본 기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그 결과 3개월이라는 응답이 약 6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6개월 미만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하였으며, 6개월 이상 대기해본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시범실시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시범 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18% 이상인 반면, 비시범지역의 경우 시범지역보다 5개월 가량 늦게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도 대기 경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도시의 경

우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10%를 넘었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없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는 경우 최대 대기 기간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최대 대기 기간은 평균 3.58개월로 나타났으며, 시범지역에서의 대기기간이 비시범지역에서보다 길었고, 대도시 지역에서 대기해본 기간이 타지역 대기 기간보다 길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의 평균 최대 기간은 3.55개월로 외벌이 가구의 3.61개월보다 짧은 기간동안 대기한 것으로 나타나, 수기 입소 대기 시의 기간과 반대 경향을 나타냈다. 즉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어린이집 입소를 더 빨리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8〉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대기해본 기간

구분	단위: %(명), 개월				계(수)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평균(개월)	
전체	67.9	26.4	5.7	3.58	100.0(702)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61.0	20.6	18.3	4.22	100.0(218)
비시범지역	71.1	28.9	0.0	3.29	100.0(484)
$X^2(df)/t$		94.96(2)***		6.53***	
지역 규모					
대도시	68.5	20.7	10.8	3.80	100.0(305)
중소도시	68.2	29.6	2.3	3.42	100.0(311)
읍면지역	65.1	34.9	0.0	3.35	100.0(86)
$X^2(df)/F$		32.91(4)***		8.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0	26.9	5.0	3.55	100.0(338)
외벌이	67.9	25.8	6.3	3.61	100.0(364)
$X^2(df)/t$		0.59(2)		-0.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p < .001$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최대로 대기해본 기관 개소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약 70%가 1~2개의 어린이집에만 대기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으나, 3~5개 어린이집을 대기해봤다는 응답도 전체의 23.4%로 나타났으며, 6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동시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5개소 이하로 대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수기 입소 대기시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기 입소 대기시에 비해 1~2개 대기한 비율이 감소하고 3개소 이상 대기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비시범지역보다는 시범지역에서 더 많은 어린이집을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2개 어린이집에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68.4%로 나타난 반면, 6개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은 경우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입소대기 최대 기관 수를 주관식으로 응답한 경우의 평균 개소 수는 2.56개소로, 수기 입소 대기시 최대 대기해봤다는 평균 개소수인 2.28개소보다 증가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평균 2.6개소로 가장 많은 기관에 대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도시 2.58개소, 읍면 지역 2.33개소 순이었다.

〈표 IV-3-9〉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로 대기해 본 기관 개소수

단위: %(명), 개소수

구분	1~2개	3~5개	6개 이상	평균(개소수)	계(수)
전체	69.8	23.4	6.8	2.56	100.0(702)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62.4	26.6	11.0	2.94	100.0(218)
비시범지역	73.1	21.9	5.0	2.38	100.0(484)
$X^2(df)$		11.96(2)**			
지역 규모					
대도시	69.2	24.6	6.2	2.58	100.0(305)
중소도시	70.1	21.2	8.7	2.60	100.0(311)
읍면지역	70.9	26.7	2.3	2.33	100.0( 86)
$X^2(df)$		5.5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1.3	21.6	7.1	2.55	100.0(338)
외벌이	68.4	25.0	6.6	2.56	100.0(364)
$X^2(df)$		1.1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p < .01$ .

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

(1) 만족도

다음 <표 IV-3-10>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9.1%,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58.5%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는 2.68점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7.2%로 타 지역에 비해 불만족 정도가 더 많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유아에게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의 전체적인 만족 비율은 외벌이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맞벌이 가구는 9.5%, 외벌이 가구는 8.8%로 맞벌이 가구의 매우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0>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대기 경험이 있을 경우)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9.1	58.5	23.5	8.8	100.0(702)	2.68
지역 규모						
대도시	7.9	61.6	23.3	7.2	100.0(305)	2.70
중소도시	10.3	56.9	22.8	10.0	100.0(311)	2.68
읍면지역	9.3	53.5	26.7	10.5	100.0( 86)	2.62
$X^2(df)/F$		4.08(6)				0.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9.5	57.4	23.1	10.1	100.0(338)	2.66
외벌이	8.8	59.6	23.9	7.7	100.0(364)	2.70
$X^2(df)/t$		1.40(3)				-0.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입소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우선 입

소를 위하여 서류를 일일이 어린이집에 찾아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전체의 11%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는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도시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읍면 지역에서는 우선 입소를 위한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과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과 우선 입소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입소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만족 시) 만족스러운 점

단위: %(명)

구분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음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입소 대기 기관 수 제한이 없음	우선 입소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 없음	기타	계(수)
전체	48.2	27.6	4.0	11.2	7.6	1.5	100.0(475)
지역 규모							
대도시	44.8	31.1	3.3	10.8	8.0	1.9	100.0(212)
중소도시	53.6	24.4	4.8	10.5	6.2	0.5	100.0(209)
읍면지역	40.7	25.9	3.7	14.8	11.1	3.7	100.0( 54)
X <sup>2</sup> (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9	31.0	3.1	11.9	5.8	1.3	100.0(226)
외벌이	49.4	24.5	4.8	10.4	9.2	1.6	100.0(249)
X <sup>2</sup> (df)				5.03(5)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다음 <표 IV-3-12>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이유는 대기 번호만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결과는 실제적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기해야만 한다는 불만으로 전체의 약 24%를 나타냈다. 입소 대기 사이트에 가입이 필요하며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도 전체의 약 18%로 비교적 많았으며, 입소대기 번호가 수시로 변동하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에 있어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응답도

11.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는 입소 희망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기하는 경향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소도시에서는 대기 번호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간에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1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불만족 시) 불만족스러운 점  
단위: %(명)

구분	입소대기 사이트 등 시스템 이용 어려움	주민번호 가입 부여 후에만 대기 가능한 점	대기 번호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입소 희망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기하는 경향	입소대기 번호가 수시로 변동하여 예측성이 떨어짐	기타	계(수)
전체	17.6	2.6	34.4	23.8	11.5	10.1	100.0(227)
대도시	18.3	3.2	33.3	26.9	10.8	7.5	100.0( 93)
중소도시	16.7	2.0	36.3	19.6	12.7	12.7	100.0(102)
읍면지역	18.8	3.1	31.3	28.1	9.4	9.4	100.0( 32)
$\chi^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라) 수기방식 대비 만족도

(1) 대기기간

다음 <표 IV-3-13>은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수기 대기 시스템 모두를 사용해 본 41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기 대기 방식 대비 온라인 입소 시스템 사용이 대기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그 결과 대기 기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4 정도로, 대기 기간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에서 입소 대기 기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이 모든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13>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이전의 수기 대기 시스템을 둘 다 사용해본 경우) 수기 대기 방식 대비 온라인 입소 시스템 도입 후 대기 기간 감소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함	그렇지 않음	계(수)
전체	26.3	73.7	100.0(410)
지역 규모			
대도시	28.5	71.5	100.0(172)
중소도시	27.0	73.0	100.0(185)

(표 IV-3-13 계속)

구분	그리함	그렇지 않음	계(수)
읍면지역	17.0	83.0	100.0( 53)
$X^2(df)$	2.8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2	74.8	100.0(206)
외벌이	27.5	72.5	100.0(204)
$X^2(df)$	0.2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2) 수기방식 대비 만족도 변화

현재 입소 대기 시스템과 시스템 도입 전에 이용했던 수기 방식을 비교하여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만족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높아졌다는 응답은 37.1%로 낮아졌다는 응답보다 많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비교적 높아졌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 39.6%, 중소도시 33.5%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 간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 항상 비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 방식 대비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은 맞벌이의 경우 43.2%, 외벌이 30.9%로 나타났다. 이러한 맞벌이 여부 간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고소득 가구에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간 만족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4>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이전의 수기 방식을 둘 다 사용해본 경우) 수기 입력 대기 대비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크게 높아짐	대체로 높아짐	변화없음	대체로 낮아짐	크게 낮아짐	계(수)	평균
전체	7.8	29.3	42.0	15.1	5.9	100.0(410)	3.18
지역 규모							
대도시	8.1	32.0	43.0	12.8	4.1	100.0(172)	3.27
중소도시	7.6	25.9	41.1	17.3	8.1	100.0(185)	3.08
읍면지역	7.5	32.1	41.5	15.1	3.8	100.0( 53)	3.25
$X^2(df)/F$			5.53(8)				1.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7	32.5	35.9	14.1	6.8	100.0(206)	3.26
외벌이	4.9	26.0	48.0	16.2	4.9	100.0(204)	3.10
$X^2(df)/t$			10.40(4)*				1.70

(표 IV-3-14 계속)

구분	크게 높아짐	대체로 높아짐	변화없음	대체로 낮아짐	크게 낮아짐	계(수)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7	15.4	38.5	38.5	0.0	100.0( 13)	2.92
200만원~350만원 미만	7.6	24.7	40.5	18.4	8.9	100.0(158)	3.04
350만원~500만원 미만	9.0	31.0	44.0	11.0	5.0	100.0(100)	3.28
500만원 이상	8.4	37.9	38.9	10.5	4.2	100.0( 95)	3.36
무응답	4.5	27.3	50.0	15.9	2.3	100.0( 44)	3.16
X <sup>2</sup> (df)/F			na				2.74*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p < .05.

어린이집 입소 대기 대기 방식에 비해 온라인 입소 대기 시스템 사용 이후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만족도에 변화가 없었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하는 1순위 이유는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체의 53.1%가 이에 응답했다. 그 밖에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하다는 응답이 29.9%, 많은 기관에 동시 대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6.2%, 우선입소를 위한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예전보다 대기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 순이었다.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밖에 많은 기관에 동시 대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우선입소를 위한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점과 예전보다 대기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3-15> (만족도가 변화없거나 높아진 경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구분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음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짐	많은 기관에 동시에 대기할 수 있게 됨	예전보다 대기 기간이 줄어든 것 같음	우선 입소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위: %(명)	
						기타	계(수)
1순위	53.1	29.9	6.2	2.8	5.6	2.5	100.0(324)
2순위	8.9	40.1	22.6	6.2	21.6	0.7	100.0(2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반면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도입 이후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대기 번호만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약 31%가 이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그 밖에 예전에 비해 융통성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27.9%,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25.6%, 예전에 비해 일찍 대기하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11.6%로 나타났다.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보기는 실제로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싶은 시기와 관계없이 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대기하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 밖에 예전에 비해 입소대기 번호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2.8%, 예전에 비해 융통성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17.7%,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다.

<표 IV-3-16>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  
단위: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움	예전에 비해 융통성이 줄어들	대기 번호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입소 희망시기 관계없이 일찍 대기하는 경향 증가	기타	(수)
1순위	25.6	27.9	31.4	11.6	3.5	100.0(86)
2순위	8.9	17.7	22.8	48.1	2.5	100.0(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3)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다음 <표 IV-3-17>은 현재 사용 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가장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어린이집 허수 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체 33.5%가 이에 응답하였다. 입소 대기 시스템을 통해 부여 받은 대기 번호가 실제 입소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는 경향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 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이 23.2%로 비교적 많았다. 그 밖에 입소희망시점 등 입소대기를 위한 입력 정

보를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응답도 18.7%로 나타났으며,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한 특별 전형을 둘 것을 요구하는 응답은 9%, 입소대기 시 우선 순위 관련 파일을 첨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응답은 7%였다.

〈표 IV-3-17〉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단위: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 적용 필요	입소 희망시점 등 입소 대기를 위한 입력 정보를 더 구체화함	입소대기 시 우선순위 관련 서류 파일을 첨부하도록 함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한 특별 전형도 둠	허수 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기타	계(수)
전체	23.2	18.7	7.0	9.0	33.5	8.7	100.0(7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5개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7.1%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1~2개소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1% 정도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시스템상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 기관 수를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읍면 지역의 경우 1~2개만 대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응답이 20% 이상이었던 반면, 대도시 지역의 경우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18〉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 의견

단위: %(명)

구분	1~2개	3~5개	6개 이상	제한할 필요없음	계(수)
전체	16.5	67.1	5.6	10.8	100.0(702)
지역 규모					
대도시	15.1	70.2	4.6	10.2	100.0(305)
중소도시	16.7	64.0	6.4	12.9	100.0(311)
읍면지역	20.9	67.4	5.8	5.8	100.0( 86)
$X^2(df)$			6.5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부모」 자료임.

## 나. 기관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2013년 11월 제주와 부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 실시되어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어린이집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2014년 8월 18일~27일의 10일간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는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의 조사라는 한계로 인해 가급적 정확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 파악을 위해 도입 이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시범지역(제주, 부산)의 표본 비율을 30% 선으로 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총 300개 기관을 목표로 진행하였는데, 지역규모와 시설유형, 정원규모를 고려해 할당한 응답 기관의 특징은 <표 IV-3-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3-19> 응답기관의 특징

		단위: %(개소)	
구분	비율(개소)	구분	비율(개소)
시범실시 지역 여부		설립유형	
시범지역	29.8( 90)	국공립어린이집	10.9( 33)
비시범지역	70.2(21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9.6( 29)
지역 규모		법인단체어린이집	7.6( 23)
대도시	40.7(123)	민간어린이집	34.4(104)
중소도시	44.0(133)	가정어린이집	37.4(113)
읍면	15.2( 46)		
총 정원		총 현원	
20명 이하	38.4(116)	20명 이하	42.1(127)
21~39명	16.2( 49)	21~39명	17.9( 54)
40~80명	24.5( 74)	40~80명	23.8( 72)
81명 이상	20.9( 63)	81명 이상	16.2( 49)
계(수)	100.0(302)	계(수)	100.0(302)

### 2) 입소대기자 관리 경험

#### 가) 평소 소재지역 어린이집 입소 수요(입학 시기)

응답대상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소재 지역의 평소 입소 수요를 질문하였다. 평소 입소 수요라 함은 신입생이 대거 입학하는 '입학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연 설명을 하였는 바, 이에 45%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입소 수요가 많은 편이라 응답하였다(매우 많음 5.6%+많은 편 39.4%). 즉, 입소 수요가 '별

로 없다'는 응답이 51.3%로 입소수요가 많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시범지역<sup>39)</sup> 여부와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지역규모별 차이는 없고, 설립유형, 정원에 따라서는 평소 입소 수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범지역/비시범지역 여부나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른 지역 입소 수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설립유형과 시설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따르면 국공립기관에 대한 입소 수요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소수요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국공립(66.7%)> 사회복지법인(55.2%)> 민간(50.0%)> 가정(34.5%)> 법인·단체(3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정원'이 많은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소 입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충정원 81명 이상 시설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66.7%이나 충정원 40~80명 이하는 44.6%, 21~39명 이하는 40.8%, 20명 이하는 35.3%가 평소 입소수요가 '많은 편'이라 응답하였다.

〈표 IV-3-20〉 평소 어린이집의 위치 지역 입소 수요 수준

구분	단위: %(사례)			
	많은 편	별로 없음	잘 모름	계(수)
전체	45.0	51.3	3.6	100.0(302)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47.8	47.8	4.4	100.0( 90)
비시범지역	43.9	52.8	3.3	100.0(212)
$X^2(df)$		4.77(2)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66.7	24.2	9.1	100.0( 3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5.2	41.4	3.4	100.0( 29)
법인단체어린이집	30.4	69.6	0.0	100.0( 23)
민간어린이집	50.0	48.1	1.9	100.0(104)
가정어린이집	34.5	61.1	4.4	100.0(113)
$X^2(df)$		46.72(8)***		
지역 규모				
대도시	47.2	49.6	3.3	100.0(123)
중소도시	42.1	53.4	4.5	100.0(133)
읍면지역	47.8	50.0	2.2	100.0( 46)
$X^2(df)$		1.75(4)		
총 정원				
20명 이하	35.3	59.5	5.2	100.0(116)
21~39명	40.8	55.1	4.1	100.0( 49)

39) 2013년 11월부터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도입·실시된 제주와 부산은 시범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비시범지역으로 분류됨.

(표 IV-3-20 계속)

구분	많은 편	별로 없음	잘 모름	계(수)
40~80명	44.6	52.7	2.7	100.0( 74)
81명 이상	66.7	31.7	1.6	100.0( 63)
X <sup>2</sup> (df)	21.9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1$ , \*\*\*  $p < .001$ .

#### 나)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 및 현재 입소대기자

다음으로 각 기관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를 살펴보았다. 전체 302사례 중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의 수가 10명 이하라는 응답이 67.9%로 나타났고, 11~29명 12.9%, 30~49명 5.6% 순으로 최대 대기자수가 10명 이하였던 경우가 70%에 가까웠다.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는 평균 20.8명 수준이었는데, 이는 시범/비시범지역 여부, 설립유형,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시범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시범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는 평균 27.6명, 비시범지역은 평균 17.9명으로 약 10명 정도 차이가 났다. 이 질문은 새로 도입된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기한 대기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기관이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를 묻는 것이었지만 시범지역에서 관리해 본 입소대기자의 수가 뚜렷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의 수기관리시스템에 비해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도입 후 온라인으로 대기한 대기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75.4명)>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26.3명)> 법인·단체(19.1명)> 민간(18.0명)> 가정(6.3명)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총정원이 많은 시설일수록 관리해본 최대 대기자수가 많았다. 총정원 81명 이상 시설에서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는 평균 49.3명이었고, 40~80명 이하 시설은 평균 26.0명, 21~39명 시설은 9.4명, 20명 이하는 6.8명으로 규모가 클수록 대기하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큼을 보여주는 한편,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규모가 대체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서 관리해본 최대 대기자

수가 23.7명, 중소도시 19.2명, 읍면지역 17.6명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3-21〉 어린이집에서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 수

단위: %(명), 명

구분	10명 이하	11~ 29명	30~ 49명	50~ 69명	70~ 99명	100~ 149명	150~ 199명	200명 이상	계(수)	평균(명)
전체	67.9	12.9	5.6	4.3	2.6	4.0	0.7	2.0	100.0(302)	20.78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55.6	17.8	8.9	5.6	3.3	4.4	1.1	3.3	100.0( 90)	27.56
비시범지역	73.1	10.8	4.2	3.8	2.4	3.8	0.5	1.4	100.0(212)	17.90
X <sup>2</sup> (df)/t					na					1.99*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24.2	6.1	9.1	18.2	3.0	24.2	0.0	15.2	100.0( 33)	75.3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62.1	13.8	3.4	3.4	13.8	0.0	0.0	3.4	100.0( 29)	26.34
법인단체어린이집	73.9	4.3	8.7	4.3	4.3	4.3	0.0	0.0	100.0( 23)	19.09
민간어린이집	65.4	16.3	7.7	3.8	1.9	2.9	1.9	0.0	100.0(104)	17.99
가정어린이집	83.2	13.3	2.7	0.9	0.0	0.0	0.0	0.0	100.0(113)	6.31
X <sup>2</sup> (df)/F					na					27.95***
지역 규모										
대도시	60.2	14.6	6.5	7.3	4.9	4.9	0.8	0.8	100.0(123)	23.67
중소도시	75.2	9.8	4.5	3.0	0.0	3.8	0.8	3.0	100.0(133)	19.21
읍면지역	67.4	17.4	6.5	0.0	4.3	2.2	0.0	2.2	100.0( 46)	17.58
X <sup>2</sup> (df)/F					na					0.61
총 정원										
20명 이하	82.8	12.9	2.6	1.7	0.0	0.0	0.0	0.0	100.0(116)	6.76
21-39명	77.6	12.2	6.1	4.1	0.0	0.0	0.0	0.0	100.0( 49)	9.39
40-80명	59.5	14.9	8.1	5.4	1.4	8.1	0.0	2.7	100.0( 74)	26.02
81명 이상	42.9	11.1	7.9	7.9	11.1	9.5	3.2	6.3	100.0( 63)	49.28
X <sup>2</sup> (df)/F					na					22.07***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5$ , \*\*\*  $p < .001$ .

다음으로 현재 시설에 입소대기자의 유무와 수를 살펴보았다.

현재 입소대기자가 '있다'는 경우가 66.6%로 '없다' 33.4% 보다 많았다. 이러한 '현재 입소대기자 유무'는 시범/비시범지역 여부,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 현원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시범지역이 입소대기자가 있다(78.9%)는 경우가 비시범지역(61.3%)에 비해 많았으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평균 28.8명, 비시범지역은 평균 24명의 대기자가 있어 차이를 보였

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은 93.9%가 입소대기자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72.4%)> 법인·단체(69.6%)> 민간(64.4%)> 가정(58.4%)의 순으로 입소대기자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응답되었고( $p < .01$ ), 대기자가 있는 경우 국공립 평균 75.9명, 사회복지법인 평균 32.7명, 법인단체 평균 15.6명, 민간 평균 20.7명, 가정 평균 7.5명으로 시설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p < .001$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소재 시설 중 74.8%가 입소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읍면지역(63%) > 중소도시(60.2%) 순으로 대기자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규모별 입소대기자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5$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평균 대기자 수는 중소도시가 가장 많아 27.2명이 평균 대기자이며, 대도시 26.6명, 읍면지역 19.0명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평균 대기자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원규모가 클수록 입소대기자가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1$ ). 즉, 정원 81명 이상은 84.1%가, 40~80명은 73.0%, 21~39명은 57.1%, 20명 이하는 56.9%가 현재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입소대기자가 있는 경우 평균대기자 수도 정원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원 81명이상 시설은 평균 54.3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정원 40~80명은 27.3명, 21~39명은 11.4명, 20명 이하는 7.6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원규모별 현재 입소대기자 수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표 IV-3-22〉 현재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자 유무 및 입소대기자 수

단위: %(명)

구분	현재 입소대기자 유무			입소대기자 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66.6	33.4	100.0(302)	25.7	(201)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78.9	21.1	100.0( 90)	28.8	( 71)
비시범지역	61.3	38.7	100.0(212)	24.0	(130)
$X^2(df)/t$	8.76(1)**			0.72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93.9	6.1	100.0( 33)	75.9	( 3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2.4	27.6	100.0( 29)	32.7	( 21)
법인단체어린이집	69.6	30.4	100.0( 23)	15.6	( 16)
민간어린이집	64.4	35.6	100.0(104)	20.7	( 67)
가정어린이집	58.4	41.6	100.0(113)	7.5	( 66)
$X^2(df)/F$	15.24(4)**			17.03***	

(표 IV-3-22 계속)

구분	현재 입소대기자 유무			입소대기자 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지역 규모					
대도시	74.8	25.2	100.0(123)	26.6	( 92)
중소도시	60.2	39.8	100.0(133)	27.2	( 80)
읍면지역	63.0	37.0	100.0( 46)	19.0	( 29)
$\chi^2(df)/F$	6.46(2)*			0.38	
총 정원					
20명 이하	56.9	43.1	100.0(116)	7.6	( 66)
21~39명	57.1	42.9	100.0( 49)	11.4	( 28)
40~80명	73.0	27.0	100.0( 74)	27.3	( 54)
81명 이상	84.1	15.9	100.0( 63)	54.3	( 53)
$\chi^2(df)/F$	16.92(3)**			13.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 현황

#### 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 유무

다음으로 새로 도입 실시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는지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302개 시설 중 85.8%의 시설이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다고 응답하여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자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는 시설 259사례 중 85.3%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은 '10명 이하'인 것으로 응답되었고, 평균 8.25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 유무는 시범/비시범지역 여부, 지역규모, 정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2013년 11월부터 도입되어 도입 후 기간이 긴 시범지역에서는 100%의 시설이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시범지역은 79.7%가 응답해 차이가 있었다. 입소 아동 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는 시설 중에서도 시범지역 시설은 평균 15.1명이, 비시범지역 시설은 평균 4.6명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기해 입소한 아동이었는데, 이는 시범지역이 새 시스템이 도입·시행된 후의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시기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범지역은 도입 이후의 기간이 비시범지역보다 5개월 가량 길 뿐 아니라, 최초 도입 시기가 2013년 11월로 어린이집에서 차년도 입학생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는 시점에 도입되어 입학시기인 3월 전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시범지역의 경우도 2015년부터는 입소대기시스템을 이용해 대기한 입소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아동이 있다는 비율이 각각 90.9%, 89.7%로 가장 많고,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80.5%로 가장 적었으나 시설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입소아동 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평균 15.7명, 국공립이 12.8명, 민간 8.9명,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6.2명, 가정 4.8명 순으로 시설유형별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지역규모가 클수록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도시 지역 시설의 91.9%, 중소도시 지역 시설의 82.7%, 읍면지역 시설의 78.3%가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이 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의 수도 차이가 있어, 대도시(10.5명) >중소도시(7.1명) >읍면지역(4.8명) 순으로 지역규모가 큰 지역의 시설일수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규모에 따른 입소 아동 유무와 입소아동 수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 있다는 응답은 정원 81명 이상 시설이 가장 높고(93.7%), 21~39명 시설(89.8%), 40~80명 규모 시설(86.5%), 20명 이하 규모 시설(79.3%) 순으로 시설규모가 클수록 높게 응답되었다. 입소한 아동이 있는 경우, 입소 아동의 수는 81명 이상 규모 어린이집에서 현저히 높아 16.7명이었으며, 40~80명 규모 평균 7.3명, 21~39명 규모 5.7명, 20명 이하 4.8명으로 정원규모가 클수록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한 아동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 아동 유무 및 입소 아동 수  
단위: %(명), 명

구분	입소 아동 유무			입소 아동 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85.8	14.2	100.0(302)	8.3	259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100.0	0.0	100.0( 90)	15.1	90
비시범지역	79.7	20.3	100.0(212)	4.6	169
$\chi^2(df)/F$	21.29(1)***			33.52***	

(표 IV-3-23 계속)

구분	입소 아동 유무			입소 아동 수	
	있음	없음	계(수)	평균	수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90.9	9.1	100.0( 33)	12.8	3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89.7	10.3	100.0( 29)	14.7	26
법인단체어린이집	87.0	13.0	100.0( 23)	6.2	20
민간어린이집	88.5	11.5	100.0(104)	8.9	92
가정어린이집	80.5	19.5	100.0(113)	4.7	91
$X^2(df)/F$	na			2.95*	
지역 규모					
대도시	91.9	8.1	100.0(123)	10.5	113
중소도시	82.7	17.3	100.0(133)	7.1	110
읍면지역	78.3	21.7	100.0( 46)	4.8	36
$X^2(df)/F$	6.89(2)*			2.33	
총 정원					
20명 이하	79.3	20.7	100.0(116)	4.8	92
21~39명	89.8	10.2	100.0( 49)	5.7	44
40~80명	86.5	13.5	100.0( 74)	7.3	64
81명 이상	93.7	6.3	100.0( 63)	16.7	59
$X^2(df)/F$	7.85(3)*			7.92***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5$ , \*\*\*  $p < .001$ .

#### 4) 수기방식 대비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변화 정도

새로 도입·실시되고 있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시 만족도를 기존의 수기방식 이용 시 만족도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수기방식으로 대기자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02개 응답 대상 어린이집 중 82.8%가 수기방식 입소대기자 관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기방식 입소대기자 관리 경험은 시범/비시범 지역 여부, 설립유형,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단 정원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었다. 정원 21~39명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가장 수기방식으로 대기자를 관리해 본 경험이 적었고(71.4%), 그 외에는 규모가 커질수록 수기방식의 대기자 관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4〉 수기 방식으로 입소대기자를 관리해 본 경험 유무

구분	단위: %(명)		계(수)
	있음	없음	
전체	82.8	17.2	100.0(302)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84.4	15.6	100.0( 90)
비시범지역	82.1	17.9	100.0(212)
$X^2(df)$	0.25(1)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97.0	3.0	100.0( 3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93.1	6.9	100.0( 29)
법인단체어린이집	78.3	21.7	100.0( 23)
민간어린이집	79.8	20.2	100.0(104)
가정어린이집	79.6	20.4	100.0(113)
$X^2(df)$	na		
지역 규모			
대도시	79.7	20.3	100.0(123)
중소도시	83.5	16.5	100.0(133)
읍면지역	89.1	10.9	100.0( 46)
$X^2(df)$	2.18(2)		
총 정원			
20명 이하	80.2	19.8	100.0(116)
21~39명	71.4	28.6	100.0( 49)
40~80명	83.8	16.2	100.0( 74)
81명 이상	95.2	4.8	100.0( 63)
$X^2(df)$	11.90(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1$

과거 수기방식으로 대기자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219사례를 대상으로 수기 방식에 비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후 결원 시 충원이 더 용이해졌는지 여부, 관리상 만족도 등 새 대기자 관리 시스템의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수기 입력 방식에 비해 온라인 입소 시스템 이용 후 결원의 충원이 용이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결원 충원이 수기방식 대비 더 용이해 졌다는 의견은 9.1%로 나타나 많지 않았다. 나머지 90.9%는 결원 충원의 용이성은 그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시범지역/비시범지역 여부, 설립유형, 지역 규모, 정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원충원이 용이해 졌다는 응답은 '시범지역'(10.5%)이 '비시범지역(8.4%)보다, '국공립'(10.3%), '민간(10.7%)', '가정(9.6%)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3.8%)', '법인단체어린이집

(6.2%)'에 비해 결원충원이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10.9%)'에서 결원 충원이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규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25〉 수기 입력 방식에 비해 온라인 입소 시스템 이용 후 결원 충원의 용이성

단위: %(명)

구분	그러함	그렇지 않음	계(수)
전체	9.1	90.9	100.0(219)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10.5	89.5	100.0( 76)
비시범지역	8.4	91.6	100.0(143)
$X^2(df)$	0.27(1)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10.3	89.7	100.0( 2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8	96.2	100.0( 26)
법인단체어린이집	6.2	93.8	100.0( 16)
민간어린이집	10.7	89.3	100.0( 75)
가정어린이집	9.6	90.4	100.0( 73)
$X^2(df)$	1.32(4)		
지역 규모			
대도시	10.9	89.1	100.0( 92)
중소도시	7.4	92.6	100.0( 94)
읍면지역	9.1	90.9	100.0( 33)
$X^2(df)$	0.66(2)		
총 정원			
20명 이하	9.5	90.5	100.0( 74)
21~39명	9.7	90.3	100.0( 31)
40~80명	8.8	91.2	100.0( 57)
81명 이상	8.8	91.2	100.0( 57)
$X^2(df)$	0.0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다음으로 수기방식 대비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자 관리의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전 수기 방식 대비 '만족도가 크게 낮아짐=1'~'크게 높아짐=5'의 5점 만점으로 측정된 결과 평균 점수는 2.3점으로 나타났다. 이전 방식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크게 높아짐+대체로 높아짐)는 경우는 전체의 9.1%에 해당하였고, '변화없음'이 34.7%, '낮아졌다'라는 응답은 56.2%로 많은 어린이집이 새 입소대기자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관리상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시범실시 지역 여부, 지역규모, 정원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은 설립유형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타유형의 어린이집 보다 높았으며,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은 타 시설유형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6.2%) '변화없다'는 비율은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아, 5점 평균으로 측정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법인단체어린이집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이 2.3점으로 나타난 만족도 점수는 시설유형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2.59점)과 법인단체어린이집(2.69점)이 높고 민간어린이집(2.0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21~39명 이하 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원규모가 커질수록 기존 수기방식 대비 새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관리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26〉 이전의 수기 방식의 입소대기자 관리 방식에 비해 새로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상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낮아짐	변화없음	높아짐	계(수)	5점 평균
전체	56.2	34.7	9.1	100.0(219)	2.32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41.4	44.8	13.8	100.0( 29)	2.5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0.0	38.5	11.5	100.0( 26)	2.42
법인단체어린이집	25.0	68.8	6.2	100.0( 16)	2.69
민간어린이집	68.0	22.7	9.3	100.0( 75)	2.09
가정어린이집	58.9	34.2	6.8	100.0( 73)	2.32
X <sup>2</sup> (df)/F		16.9(8)*			2.4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5$ , \*\*  $p < .01$ .

다음으로 기존 수기방식 대비 새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만족도 차이가 없거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92사례를 대상으로 새 시스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 경우 33.3%의 응답자가 '서류관리·보관 등 번거로운 일이 줄었다'를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시스템에서 순위가 결정되니 관리할 부분이 없어 편리하다' 26%, '대기자 순위를 즉각 확인 가능해 결원시 충원이 편리하다' 26.0%, '부모 민원이 줄었다' 4.2% 순으로 응답되었다.

사례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못하였지만, '설립유형'에 따라 새 시스템에서 만족하는 부분은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스템에서 대기 순위가 결정되어 관리할 부분이 없어 편리하다'(58.8%)를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 꼽은 반면, 사회복지법인인 '대기자 순위를 즉각 확인 가능해 결원 충원시 편리하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30.8%). 또한 '서류관리·보관 등 번거로운 일이 줄었다'를 가장 많이 꼽은 시설유형은 법인단체어린이집(58.3%)과 민간어린이집(37.5%)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은 '대기자 순위를 즉각 확인 가능해 결원시 충원이 편리하다'를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 응답하였다(43.3%).

〈표 IV-3-27〉 (변화없음 또는 만족도가 높아졌다면)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단위: %(명)

구분	서류관리, 보관 등 번거로운 일이 줄었다	시스템에서 대기 순위가 결정되거나 관리할 부분이 없어 편리하다	부모 민원이 줄었다	대기자의 순위를 즉각 확인 가능해 결원 충원시 편리하다	기타	계(수)
전체	33.3	26.0	4.2	26.0	10.4	100.0(96)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17.6	58.8	5.9	5.9	11.8	100.0(17)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3.1	23.1	15.4	30.8	7.7	100.0(13)
법인단체어린이집	58.3	25.0	0.0	8.3	8.3	100.0(12)
민간어린이집	37.5	20.8	4.2	25.0	12.5	100.0(24)
가정어린이집	33.3	13.3	0.0	43.3	10.0	100.0(30)
$\chi^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123 사례를 대상으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경우 '실질적 수요 파악이 어렵다'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인 것으로 응답되었다(48.8%). 이는 현재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입소를 하고자 하는 시기를 기입하지 않고 제한없이 다수의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입소대기 신청자들이 모두 즉시 입소 가능한 대상으로 보아 결원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나 입소희망시기가 각각 다르고 입소대기를 하고 있는 다수의 어린이집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입소대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범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면담에서도 제기된 주요한 불만사항이었다.

이밖에 '입소아동 결정에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음'도 주요한 불만사항으로 22.0%가 응답하였고, 이밖에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에 대한 관리업무 증가' 13.0%, '지나치게 빨리 대기하는 경향 증가' 4.9%, '부모 민원 증가' 4.1% 순으로 응답되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소 대기는 시간, 거리에 상관없이 대기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진됨으로써 더 많은 시설에 대기하는 경향을 증가시켰을 수 있고, 이로인해 시설 입장에서는 충원이 필요할 때 곧장 입소할 수 있는 아동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허수가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기관 측에서의 이러한 불만은 일일이 직접 가서 대기하기 어려운 부모에게는 많은 시설에 대기하여 시설에 대한 선택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 부모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허수의 발생은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자간에도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IV-3-28〉 (만족도가 낮아졌다면)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단위: %(명)

구분	입소아동 결정에 대한 어린이집 재량권이 없어짐	부모 민원 증가	실질적 수요 파악이 어려움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에 대한 관리 업무 증가	태아의 입소 대기를 지나치게 빨리 받아들 수 없게 됨	수요자 등이 지나치게 빨리 입소 대기를 하게 됨	기타	계(수)
전체	22.0	4.1	48.8	13.0	0.8	4.9	6.5	100.0(1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앞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렇다면 기관들은 부모들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원장들은 새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부모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높다(매우 높다+대체로 높다)'는 경우가 19.5%, '낮다(대체로 낮다+매우 낮다)'가 80.5%로, 평균 만족도는 2.0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에서 파악한 부모 만족도 평균 점수는 시범지역 여부, 지역규모, 설립유형, 정원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현원'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원 21~39명 이내 시설에서 부모 만족도가 가장 낮고(1.78점), 그 외에는 현원이 많을수록 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실제 부모의 만족도가 어떤지 비교해 판단할 부분일 것이다.

〈표 IV-3-29〉 새로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모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높음	대체로 높음	대체로 낮음	매우 낮음	계(수)	4점 평균
전체	2.6	16.9	59.9	20.5	100.0(302)	2.02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1.1	23.3	63.3	12.2	100.0( 90)	2.13
비시범지역	3.3	14.2	58.5	24.1	100.0(212)	1.97
$X^2(df)/t$		8.86(3)*				1.91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6.1	24.2	45.5	24.2	100.0( 33)	2.1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0.0	13.8	69.0	17.2	100.0( 29)	1.97
법인단체어린이집	4.3	30.4	56.5	8.7	100.0( 23)	2.30
민간어린이집	2.9	11.5	60.6	25.0	100.0(104)	1.92
가정어린이집	1.8	17.7	61.9	18.6	100.0(113)	2.03
$X^2(df)/F$		na				1.71
지역 규모						
대도시	0.8	23.6	55.3	20.3	100.0(123)	2.05
중소도시	3.8	11.3	63.9	21.1	100.0(133)	1.98
읍면지역	4.3	15.2	60.9	19.6	100.0( 46)	2.04
$X^2(df)/F$		na				0.38
총 정원						
20명 이하	1.7	19.0	60.3	19.0	100.0(116)	2.03
21~39명	2.0	8.2	59.2	30.6	100.0( 49)	1.82
40~80명	2.7	20.3	58.1	18.9	100.0( 74)	2.07
81명 이상	4.8	15.9	61.9	17.5	100.0( 63)	2.08
$X^2(df)/F$		na				1.70
총 현원						
20명 이하	1.6	19.7	59.8	18.9	100.0(127)	2.04
21~39명	3.7	3.7	59.3	33.3	100.0( 54)	1.78
40~80명	1.4	20.8	62.5	15.3	100.0( 72)	2.08
81명 이상	6.1	18.4	57.1	18.4	100.0( 49)	2.12
$X^2(df)/F$		na				2.8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5$ .

### 5)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 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도입 1년이 되지 않은 초기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1순위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 적용 필요’가 25.2%로 가장 높고, ‘허수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21.9%, ‘입소아동선정 일정부분 기관 재량권 부여, 특별전형 인원 등 부여’ 20.9%, ‘입소대기자의 입소가능일, 입소희망일 입력하도록 함’ 19.9%, ‘부모가 입소대기시 관련 서류파일 첨부로 정확한 정보 입력’ 7.0% 순으로 응답되었다.

2순위로 요구되는 개선 사항으로는 ‘허수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29.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입소아동선정 일정부분 기관 재량권 부여, 특별전형 인원 등 부여’ 21.8%, ‘입소대기자의 입소가능일, 입소희망일 입력하도록 함’ 17.7%, ‘부모가 입소대기시 관련 서류파일 첨부로 정확한 정보 입력’ 15.4%,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 적용 필요’가 12.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3-30〉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 적용 필요	입소대기 시 입소 가능일 혹은 입소 희망일을 입력 하도록 함	부모가 입소대기 시 관련 서류파일 첨부로 정확한 정보 입력	입소아동 선정 일정부분 기관 재량권 부여, 특별전형 인원부여	허수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기타	계(수)
1순위	25.2	19.9	7.0	20.9	21.9	5.3	100.0(302)
2순위	12.0	17.7	15.4	21.8	29.7	3.4	100.0(2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넓게 보면 ‘입소대기시 입소 가능일 혹은 입소희망일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과 ‘입소대기 시 관련서류파일 첨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라는 부분은 ‘허수대기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즉, 기관측에서는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의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수적으로 입소대기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입소가능자

를 찾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가수요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예전 수기 방식에 비해 일면 융통성이 줄어든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결함(온라인 입소대기를 하기 어려운 집단의 문제)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기관에 관리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 허수대기자 증가 문제는 기관측과 부모 측의 실익을 비교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대기 가능 적정 기관 수 제한

허수대기자 감소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온라인 입소 대기 시 대기가능 어린이집의 수를 적정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정한 최대 대기 기관 수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평균 1.7개가 적당하다고 응답되었다. 대기기관 수를 '제한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7.0%에 해당하였다.

〈표 IV-3-3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  
단위: %(명), 개

구분	1~2개	3~5개	9~10개	11개 이상	제한할 필요없음	계(수)	평균(개)
전체	53.0	39.4	0.3	0.3	7.0	100.0(302)	1.68
시범실시 여부							
시범지역	37.8	52.2	1.1	0.0	8.9	100.0( 90)	1.88
비시범지역	59.4	34.0	0.0	0.5	6.1	100.0(212)	1.60
$X^2(df)/t$			na				2.36*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39.4	57.6	0.0	0.0	3.0	100.0( 33)	1.8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8.6	31.0	0.0	0.0	10.3	100.0( 29)	1.48
법인단체어린이집	82.6	13.0	0.0	4.3	0.0	100.0( 23)	1.50
민간어린이집	55.8	36.5	0.0	0.0	7.7	100.0(104)	1.66
가정어린이집	46.9	44.2	0.9	0.0	8.0	100.0(113)	1.74
$X^2(df).F$			na				1.11
지역 규모							
대도시	43.1	46.3	0.8	0.0	9.8	100.0(123)	1.75
중소도시	60.2	35.3	0.0	0.0	4.5	100.0(133)	1.60
읍면지역	58.7	32.6	0.0	2.2	6.5	100.0( 46)	1.77
$X^2(df)/F$			na				1.04

(표 IV-3-31 계속)

구분	1~2개	3~5개	9~10개	11개 이상	제한할 필요없음	계(수)	평균(개)
총 정원							
20명 이하	46.6	44.8	0.9	0.0	7.8	100.0(116)	1.75
21~39명	59.2	30.6	0.0	2.0	8.2	100.0( 49)	1.72
40~80명	60.8	32.4	0.0	0.0	6.8	100.0( 74)	1.55
81명 이상	50.8	44.4	0.0	0.0	4.8	100.0( 63)	1.68
$\chi^2(df)/F$			na				0.74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조사: 기관」 자료임.

\*  $p < .05$ .

대기가능 적정 기관 수로는 '1~2개'가 53.0%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밖에 '3~5개' 39.4%, '제한할 필요없음' 7.0%, 기타 의견 0.6%순이었다.

평균 대기가능 적정 기관 수는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단 시범지역(1.89개)은 비시범지역(1.6개)보다 대기 가능 적정 기관 수를 더 많이 제시하여 차이가 있었다( $p < .05$ ).

## 6)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013년 11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실태 파악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부모와 어린이집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조사에서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부모의 대기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만족도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기 방식인 수기 방식으로 대기 시의 대기 기간(평균 5.2개월)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후 대기 기간(평균 3.6개월)이 감소하였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수기 입소대기 시에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대기 기간이 더 길었으나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시 기간은 외벌이 가구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입소하기까지 대기기간 감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최대 대기기관 수에 있어서도 수기 방식에서 평균 2.28개소 대기한 것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는 평균 2.56개소에 대기하여 예전보다 쉽게 다수의 기관에 대기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전 대기 방식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37.1%) 이전보다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21.0%)에 비해 많았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하는 경우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이유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시간·장소에 상관없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기관에 대기할 수 있다' 등 부모의 편의성과 선택성 증진 부분을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예전보다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 '대기 번호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31.4%). 또한 '예전에 비해 융통성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27.9%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만족 이유에서 대기의 편의성 증진과 다수 기관 동시 대기 가능성이 응답되었으나, 중복 대기로 인한 허수도 상당 부분 발생함으로 인해 부모 입장에서도 반대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 대상 조사에서는 부모 조사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수기 방식에 비해 결원 발생 시 충원이 용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90.9%가 '그렇지 않다(충원이 용이해지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수기 방식 대비 하락한 경우가 56.2%에 달하였고, 이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경우는 9.1%에 불과했다.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경우 '실질적 수요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지적하였다(48.8%). 이는 입소대기 가능 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입소 희망시기를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원아 모집 시점에 입소의사가 없는 대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모의 불만족 이유와도 상통하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의 편의성 증진과 대기 기관 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중복 대기에 의한 '허수 대기자'가 수기방식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나친 중복 대기는 기관에는 결원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대기자를 접촉해야 하는 수고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도 대기 번호로 대기 가능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향후 중복 대기자에 대한 관리와 융통성 증진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부모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 모두에서 공통되는 의견으로 부모 입장에서

도 대기번호를 통한 입소의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기관에서도 결원충원의 용이성과 원아모집의 예측을 가능케 하기 위해 향후 지향해야 하는 개선 방향이다. 단,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과 부모 입장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기관에서는 주로 대기 가능 기관 수를 1~2개 내외로 제한할 것을 원하는데 반해, 부모는 대기 시 입소희망시점 등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든가, 입소우선순위와 관련된 자격 파일을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부모의 편의성도 중시하나 허수대기자를 줄여 대기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약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도입에 대한 부모와 기관측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부모와 기관측의 인식과 만족도에 차이가 났고, 공통적인 의견이나 허수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대기 가능 기관 수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대기 가능 적정 기관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1~2개만으로 제한하자는 응답은 5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급자 측에서는 대기 가능 기관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에서는 3~5개 정도는 대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적정선'이 무엇인가는 절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무한정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기관의 관리 편의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관 쪽에서 선호하는 1~2개의 대기기관수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 기관수에 대한 제한은 두되, 선택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부모가 적정하다고 보는 3~5개 정도의 개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향후 개선방향으로 시스템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정교화가 필요한 한편, 시스템의 규율을 다소 벗어날 수 있는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순번 부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는 경직성을

통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부여된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은 뒤처지더라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어느 정도 개별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시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융통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기 수요는 주로 대규모 기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부모의 대기 수요가 높지 않은 소규모,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의 일부에 대해 이전의 수기 방식을 융통적으로 적용하는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V. 향후 정책과제

### 1. 정책 과제

이 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보육정책의 현황과 심층 주제, 보육지표 분석 결과에 의거해 보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일반적 보육 정책 과제와 심층주제 관련 정책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가. 일반적 정책 과제

##### 1) 어린이집의 맞춤형 공급

2013년 말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의 공급률은 64.4%로 2013년 61.1%에 비해서도 약 3.3%p 증가하였다. 또한 현원기준으로 보면 0~2세 영아 인구 중 63.3%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3~5세 유아 중 91.3%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sup>40)</sup> 0~2세 영아는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는 시기로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100% 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영아의 63.3%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은 아님을 시사한다 하겠다.

총 공급 수준의 확대보다 시설 공급에 있어 요구되는 과제는 ‘맞춤 공급’을 통한 균형 배치라 하겠다. ‘맞춤 공급’이란 아동이 근접 거리 내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제공하며, 한편 국공립 기관 등 질 높은 기관의 공급이 지역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공급을 계획함에 있어 지역별 어린이집 공급 현황 뿐 아니라 유치원의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육·유아교육 기관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만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

40) 단, 이는 취학전 연령을 주민등록인구 0~5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로 실제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0~6세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상당히 감소한다.

우선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분포에도 너무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로 인식하는 국공립 기관의 비중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설유형별 정원충족률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90% 이상 충족되는 반면, 기타 유형의 시설은 80% 중반 아래에 머물러 있다. 즉,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보다는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어린이집'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국공립 기관 설립에 지자체의 부담이 큰 만큼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내 수요 대비 공급률이 이미 높으나 국공립 기관이 적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에 높은 지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과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질 낮은 기관에 대한 퇴출을 유도하는 것도 '맞춤형 공급'의 일환으로 고려할만 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실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 확대와 맞춤형 정책 마련

2014년도 국고 지원예산 중 약 86.1%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할애되어 있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원 양성지원과 같은 보육인프라 구축, 국공립 신축이나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총 국고지원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보육예산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보육재정이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13년 기준 시 국고지원 사업의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 관련 예산은 472억 2천 만원으로 전체 국고지원 보육사업 예산의 0.6%이며, 인프라 구축 등 기타 예산은 0.4%인 365억 1천 6백 만원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하여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총 국고지원 보육재정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인력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일정 부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환경 개선비 등 인건비 지원도 분명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일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에서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당 지급이나 보조인력 파견(보육도우미 등)이나 지원 사업, 냉난방비 지원, CCTV 설치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역의 기관 수급 상황(국공립 포함)에 대한 파악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보다는 특수시책사업에서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 특수시책예산으로 배정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인력 인건비 지원 등 국가 주력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지금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국고보조율)은 2013년 49.5%에서 61.6%로 증가해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며 지역 보육환경에 따라 다른 맞춤형 질 제고 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성 제고

그간 어린이집의 공급은 민간어린이집의 진입 장벽을 낮춰 우선적으로 수요 대비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영유아 인구의 유지 혹은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공급 수준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저렴하고 질 높은 국공립 시설'에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전반적 질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지속적으로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간시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평가인증제도는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통과 후 유지율은 2014년 9월 기준 73.8%에 머무르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4a). 특히 통과 후 유지율은 시설유형별 차이가 커서 국공립과 법인의 인증유지율이 90%를 전후하여 비교적 높은 반면에 가정, 민간어린이집은 7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대상의 사후점검과 유지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인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좀더 강력한 방안으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은기·원종욱·송신영, 2013: 229). 평가인증 통과 여부나 점수에 연계하여 재정 지원 여부나 차등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유지하려는 노력을 유인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

현재 시·도, 시·군·구의 지자체 수준에서는 그러한 특수시책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평가인증 여부 정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유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보육사업(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보육료 지원 등)과의 연계가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평가인증 통과 자체보다는 '통과 후 유지'와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 3) 보육재정의 안정화

2014년 말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반대 논의가 거세다<sup>41)</sup>. 이밖에도 무상보육·교육 도입 후 매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성토가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양육수당 수혜 가구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상향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핵심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확보 부담으로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조차 중앙-지방정부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부모들도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및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여건 조성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보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핵심 보육사업

41) 조선일보(2014. 11. 6).“돈 떨어진 지방정부…무상 급식·보육(3~5세 누리과정) U턴하나”. 연합뉴스(2014. 11. 5).“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확산…유아 무상보육 ‘휘청’(종합)”

은 가능한 국비 지원률을 최대한 확대하고, 핵심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지자체로 이관해 특수시책처럼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사업간 중앙-지방정부 역할의 재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간 역할 분담과 예산 비율을 재조정하여 이를 통한 우선적으로 핵심 보육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4)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 하나 지자체별 보육료 수납상한액에 차이가 있고 정부지원단가와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육료 외 다양한 명칭의 '필요 경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지원 보육료 외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전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줄어든 상태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보육료 외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정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정부지원단가 간 차액을 지원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 지자체 특수시책은 어디까지나 지자체 자율로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폭넓은 시책을 마련하여 지자체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추가비용 지원과 같은 특수시책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보다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표준 비용을 산출 혹은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고 지나친 비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심층주제 관련 정책 과제

#### 1) 양육수당제도의 개선

양육수당제도는 2009년 최초 도입된 후 지속적 확대를 통해 2013년부터는 국가책임보육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2014년 부모 조사 결과에서 양육수당 수혜 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기관 보육이 반드시 필요치 않은 영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정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양육수당 제도의 취지와 정책 지향점 규명

본 연구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가지는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금액 인상을 구체적으로 가정할 때 그것이 가정 양육을 지속하거나 기관이용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되는지, 출산의향을 제고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지 등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는 관점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도, 또는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결과였다. 특히 가정양육에 대한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금액 인상으로 상당한 가정에서 가정 양육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이용자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떠한 유인이 있더라도 기관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아라 하더라도 가정 양육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부모 입장에서 가정 양육이 불가한 상황들도 존재한다.

양육수당의 향후 개선 방안 제시에 앞서 우선 근본적으로 양육수당에 정책으로서 기대하는 역할과 효과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양육수당의 주 역할과 양육수당의 수혜 대상, 금액 수준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나) 연령별 차등 방식 유지와 영아 대상 양육수당의 인상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연령별 차등 방식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취학전 아동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 조사 결과 이러한 연령별 차등이라는 양육수당의 특징에 대해 부모의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기관 보육과 가정 내 양육 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도입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선택권의 보장은 주로 영아기에 한정되어 있어, 영아기에는 가능할 경우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며 지원할 수 있다는 철학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즉, 만3세 이상 유아기에는 기관 보육이 보편적이며 오히려 기관보육이 아동에게 적절한 자극과 경험을 부여하여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영아만큼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은 대부분 영아들로서 유아 중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다. 유아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더 고가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유아도 대거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양육수당 수혜대상자들의 불만은 다소 높더라도 현재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금액이 낮아지는 '연령 차등 방식'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양육수당이 주로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영아의 가정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를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수당은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3세 미만아 1명에 대해 우선 한화 47만원 정도에 해당되며(kela, 2014) 이 외에도 자녀수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등지원 부분이 있고, 노르웨이의 경우 만 1세~2세 미만 아동에게만 약 52만5천원~79만 4천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 2014).<sup>42)</sup>

부모 조사 결과 자녀 연령에 따라 현재 수급 받는 금액 대비 2~3배 정도의 금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의 경우는 기관 이용이 유아기에 버금갈 정도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므로, 0~1세 정도에 대해서 양육수당의 금액 인상을 다소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부모 대상 조사에서 현재 금액 수준에서 15~20만원 정도의 금액 인상 시 기관 이용에서 가정 내 양육으로의 전환 의사, 가정 내 양육 가구의 기관 이용 지연 의사, 출산의향 제고 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책 효과까지를 고려한다면 금액 수준의 대폭 인상도 타당성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향 조사에 나타나는 결과는 말 그대로 '의향'일 뿐으로 금액 인상시 반드시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기 어려우며, 영아의 가정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의지를 낮추고 양육 환경이 좋지 못한 저소득 가구의 가정 내 양육을 유인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감지되므로 금액 인상 수준은 부모 희망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2) 2014. 11. 6일 기준 환율에 의함.

#### 다)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양육수당제도를 통해 출산률 제고까지 부수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면, 양육수당에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실제 본 연구의 부모 조사 결과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같은 연령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액을 높일 경우 출산 의향이 제고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도 높았다. 단, 이는 양육수당 제도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좀더 배려한다는 측면에 대한 부모들의 찬성의견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다자녀 인센티브 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2)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개선

#### 가)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 증진

기존의 수기방식 대기에서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는 분명 대기자 입장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기자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는데,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시스템 접근이 어렵고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에 익숙치 못한 대기자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여 대기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조손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낮추는 심리적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구를 배려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 대신 대기신청을 해주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입소대기를 위한 사이트 회원 가입에서부터 입소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특별 전형으로 수기 방식의 대기를 가능케 하는 등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 나) 대기 순번의 예측성 강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본 부모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불만족 사항으로 '중복 대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즉각적

인 대기 번호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 번호로 자신의 실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었고, 어린이집에서는 대기자 수로 결원 충원이나 원아모집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즉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에 나타나는 '대기자 수(번호)'가 상당부분 허수가 많아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였다.

이는 상당부분 대기 편의성 증진으로 인해 다수의 기관에 중복으로 대기하는 경향, 실제 희망 시기보다 조기에 입소 대기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우선순위로 선호하는 기관이 있더라도 입소 가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기관에 대기하여 입소 가능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입소가 가능할 경우 선택권을 높이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그간 법정 입소우선순위 항목이 있고 이에 의한 입소대기번호를 결정짓는 점수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수기 방식으로 대기자를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입소우선순위 항목에 따른 정확한 순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우선적으로 대기순번 부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 성과가 있으나, 입소대기 가능 기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허수대기자의 다량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많은 허수대기자 발생은 기관에게도 결원 충원 시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모 입장에서도 대기번호에 의한 입소예측가능성을 낮추어 대기번호순번 부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효율성 저하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수준의 수로 대기가능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기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2개의 기관은 부모가 응답한 수기방식에서의 평균 대기기관 수(2.28개) 보다도 적은 수이며, 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로 적절한 대기 기관 수로 부모가 가장 많이 응답한 3~5개 정도의 기관까지로 대기기관 가능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기 순번 결정과 관련된 입소우선순위사항의 관련 서류를 입소대기 신청 시 파일로 첨부하여 적격자를 미리 선별하거나, 실제 입소를 희망하는 시기, 대기기관의 우선순위 등의 세부 정보를 함께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 맺는 말

보육정책에 있어서 2013~2014년은 ‘양적 확대’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마침표를 찍고 ‘보육품질 개선’이라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다.

그간의 시설의 공급, 비용 지원의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와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되었다. 보육 재정 또한 양적 확대 정책과 함께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양적 확대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도 있으나, 보육서비스 수요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는 충분한 공급과 이용 지원이 필요했기에 양적 확대 정책의 결과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육 정책이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양적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개선의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음은 인지하고 향후 영유아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품질 개선’에 향후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업에의 국가적 관심과 투자 확대, 보육 재정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지속되어야 한다. 2014년 하반기에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책임 공방이 거세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의 급격한 확대로 무상보육·교육 시대가 도래한지 불과 1~2년만에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 부담 문제가 불거지고 전반적인 보편 복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무상보육’이 예산 파탄의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보육지표를 보면 보육·유아교육 관련 재정이 이제 겨우 OECD 최소 권고치인 1%를 조금 넘긴 수준일 뿐임이 드러나고 있다. ‘급속한 확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무상보육 전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이 영유아가 있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담이 가계소비 위축이나 출산의지를 축소시키는 등의 경제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무상보육의 효과성도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지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논의가 있더라도 보육재정의 확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단지 최소 수준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에게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단지, 앞으로는 보육 예산이 부모비용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보육품질 개선에 더 할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행복플랜(안)’에서 목표하는 바대로 향후에는 보육품질 개선에 보육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보육재정은 최소 1%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2014).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경기도.  
교육부(2014). 유아교육 예산(내부자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년도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 농림축산  
식품부.  
대전광역시(2014). 2014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전광역시.  
보건복지부(2010-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3a-2014a).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3b-2013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b).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c).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d).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2014e).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현황(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f). 2014년 보육정책 참고자료(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g). 2014년 보육 예산(안)(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2014a). 2014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14b).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  
백선정·김태형·김나은(2012). 어린이집 입소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  
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공립보육시설, 보  
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  
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은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2014a).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4b). 2014 세부사업내역-사회복지부문. 서울특별시(<http://finance.seoul.go.kr>에서 인출).
-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인구통계(2013. 12).
-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c).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2619호, 2014.5.20.,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9호, 2014.12.30.,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4.3.7., 일부개정].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이정원·이세원(2013). 어린이집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2).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13). 가정 내 양육 지원 방향과 정책 과제. 2013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

- 아지원 내실화 방안(II)-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세원(2013).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최효미·김진미·정주영(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원(2013).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제 204호, pp. 8-26.
- 인천광역시(2014). 2014년도 인천시 보육사업안내. 인천광역시.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a).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b). 2012-2013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3). 내부자료.
- 한경현(2010).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84-194.
- 한국보육진흥원(2014a). 평가인증 관련 통계(www.kcpi.or.kr에서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2014b).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지표(안). 한국보육진흥원.
- Ellingsaeter&Leira(2006).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Gender Relations in Welfare States. Bristol: The Policy Press.
- Kela(2014). Guide to benefits.
- Lappegård, T.(2010).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Norway, European Journal Population, 26.
- Statistics Norway(2011, 2013).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013.
-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2014). Cash-for-care benefits for the parents of toddlers.

**<참고 웹사이트>**

각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http://www.kcpi.or.kr))  
[www.regjeringen.no](http://www.regjeringen.no)  
[www.stm.fi](http://www.stm.fi)

**<신문기사·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5. 21). '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 대상지 9개소 선정-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농촌형 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추진 -(<http://www.mafra.go.kr>에서 2014년 8월 21일 인출)

보건복지부(2013. 1. 3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http://www.mw.go.kr>에서 2014년 4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2013. 3. 25).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http://www.mw.go.kr>에서 2014년 4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2013. 10. 17).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http://www.mw.go.kr>에서 2014년 7월 11일 인출)

보건복지부(2013. 12. 31.).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http://www.mw.go.kr>에서 2014년 6월 24일 인출)

보건복지부(2014. 4. 21).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더욱 수월해진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http://www.mw.go.kr>에서 2014년 9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2014. 4. 30).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http://www.mw.go.kr>에서 2014년 9월 26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4. 5.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http://www.mw.go.kr>에서 2014년 9월 26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4. 7. 14).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http://www.mw.go.kr>에서 2014년 10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4. 8. 5).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http://www.mw.go.kr>에서 2014년 10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4. 9. 19).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 논의-(<http://www.mw.go.kr>에서 2014년 10월 28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4. 11. 11). 「엄마 같은 시간제보육반이 생겨서, 필요한 때 마음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http://www.mw.go.kr>에서 2014년 12월 17일 인출)
- 여성가족부(2012. 12. 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매년 상승(<http://www.mogef.go.kr>에서 2014년 4월 4일 인출)
- 여성가족부(2014. 1. 28).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http://www.mogef.go.kr> 2014년 4월 4일 인출)
- 연합뉴스(2014. 11. 5).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확산...유아 무상보육 '회청'(<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0949> 2014년 12월 17일 인출)
- 조선일보(2014. 11. 6). 돈 떨어진 지방정부...무상 급식·보육(3~5세 누리과정) U턴하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6/201411060035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6/2014110600355.html) 2014년 12월 17일 인출)
- 한국은행(2014. 6. 5). 2014년도 1/4분기 국민소득(<http://www.bok.or.kr>에서 2014년 10월 17일 인출)

## Abstract

### **Achievements of the Childcare Policy in 2014 and Future Tasks**

Jeongwon Lee   Hyemin Lee

Since 2013, there has been a drastic change in the nature of childcare policy, such as generalized childcare and rearing expense support for all income levels, and the focus of childcare policy is now changing from quantitative outcome to quality improvement in childcare services. This study is a part of continuous research of 6 years, with year 5 analysis conducted in 2014.

At the time of drastic change in childcare policy, this study has its purpose in 1) building database of childcare policy by reviewing overall childcar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inly about annually budgeted services, and 2) proposing achievements and tasks for short/mid-term childcare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of childcare policy based on statistics on childcare policy and related data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t performed a survey to identify improvement areas for 'child home care allowance' and 'childcare center waiting list management system' which had been selected as in-depth subjects. The survey on child home care allowance was conducted among 1,000 families receiving child home care allowance and another 1,000 families using daycare services; the survey on childcare center waiting list management system was performed among 700 families using childcare center and 300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s.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upply rate of childcare center in 2013 was 64.4% and utilization rate of childcare centers compared to number of children was 53.7%, which were increased vs. previous year; however, utilization rate of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vs. total childcare centers was 10.4% which was not changed since 2010, and there showed a large gap by region in daycare supply rate and rate of meeting admission quota.

Second, childcare budget in 2014 was total 9,600,000,000,000won, accounting for 0.7% vs. GDP, and when adding up childhood education budget, it is estimated to be total 14,920,000,000won or 1.08% vs. GDP. These numbers show the minimal level of OECD recommendation has been accomplished.

Third, the portion of budget for service quality improvement such as childcare infrastructure building or function reinforcement was less than 1%, and qualitative aspects of the service did not meet up the quantitative achievements as shown in low sustaining rate vs. high passing rate for assessment accreditation and mere 0.72% of sub teacher-to-teacher ratio.

Fourth, it was found that child home care allowance increased at-home rearing satisfaction and it had effectiveness in delaying use of institution. Also, under condition of increased child home care allowance, intention of extending at-home rearing period reached as high as 34.1%.

Fifth, while parents' satisfaction on waiting list management system was high, excessive duplicated waiting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Based on these key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asks for childcare policies as follows.

First, there needs reasonable supply of quality institutions, compared to demands by region.

Second, there needs budget expansion in improving service quality, advancing from the current budgeting focus on relieving parents' burden.

Third, the assessment accreditation system should be utilized to actually secur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by connecting assessment results and financial support, etc.

Fourth, child home care allowance clearly has its role as an at-home rearing support system, and allowance raise to some extent may be necessary for 0-1 year olds to relieve actual burden of at-home rearing families.

Fifth,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waiting list management system, it is judged that number of duplicated waiting should be reasonably managed around 3-5 institutions, and system improvement is necessary to check preferred daycare admission date and priority list of institutions in waiting at the time of registering for waiting list.

## 부 록

---

부록 1. 양육수당 조사 부록 표

부록 2. 양육수당 수혜자/어린이집 이용자 조사표

부록 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자/기관 조사표



## 부록 1. 양육수당 조사 부록 표

〈부록 표 IV-2-1〉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전계층으로 수급대상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2.2	40.0	22.3	10.6	4.5	0.5	100.0(1,011)	3.65
영유아구분								
영아	23.0	40.1	22.4	9.7	4.3	0.6	100.0( 836)	3.68
유아	18.3	39.4	21.7	14.9	5.7	0.0	100.0( 175)	3.50
$\chi^2(df)/t$				6.80(5)				2.06*
자녀연령								
0세	27.6	38.8	20.8	8.5	3.8	0.5	100.0( 366)	3.78
1세	19.5	43.8	23.1	9.4	3.3	0.9	100.0( 329)	3.67
2세	19.1	34.8	24.8	13.5	7.8	0.0	100.0( 141)	3.44
3세	19.7	45.9	21.3	11.5	1.6	0.0	100.0( 61)	3.70
4세	8.1	40.5	24.3	13.5	13.5	0.0	100.0( 37)	3.16
5세	21.3	29.8	21.3	19.1	8.5	0.0	100.0( 47)	3.36
6세	23.3	40.0	20.0	16.7	0.0	0.0	100.0( 30)	3.70
$\chi^2(df)/F$				na				3.76**
지역 규모								
광역시	23.3	38.2	22.3	10.3	5.3	0.6	100.0( 476)	3.64
중소도시	21.2	41.4	22.5	10.3	4.1	0.4	100.0( 485)	3.66
읍면	20.0	42.0	20.0	16.0	2.0	0.0	100.0( 50)	3.62
$\chi^2(df)/F$				na				0.03
모 취업여부								
취업	26.0	40.1	19.4	9.7	4.8	0.0	100.0( 289)	3.73
휴직중	35.1	40.4	12.8	6.4	5.3	0.0	100.0( 94)	3.94
미취업	18.6	39.6	24.8	11.8	4.4	0.8	100.0( 618)	3.57
$\chi^2(df)/F$				na				5.8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6.4	43.3	28.4	10.4	1.5	0.0	100.0( 52)	3.63
200~349만원	20.8	37.5	24.6	11.3	5.2	0.7	100.0( 343)	3.58
350~499만원	23.1	43.2	19.2	10.0	3.9	0.4	100.0( 284)	3.72
500만원 이상	25.7	42.2	18.3	9.6	4.3	0.0	100.0( 280)	3.75
$\chi^2(df)/F$				na				1.69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IV-2-2〉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전연령으로 수급대상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9.0	47.4	16.3	5.4	1.5	0.4	100.0(1,011)	3.97
영유아구분								
영아	29.8	47.6	15.6	5.3	1.4	0.4	100.0( 836)	3.99
유아	25.1	46.3	20.0	6.3	1.7	0.6	100.0( 175)	3.87
$X^2(df)/t$			na					1.61
자녀연령								
0세	33.6	47.8	13.4	3.3	1.1	0.8	100.0( 366)	4.10
1세	26.4	50.2	15.8	6.7	0.9	0.0	100.0( 329)	3.95
2세	27.7	41.1	20.6	7.1	3.5	0.0	100.0( 141)	3.82
3세	26.2	50.8	16.4	4.9	1.6	0.0	100.0( 61)	3.95
4세	27.0	45.9	16.2	5.4	5.4	0.0	100.0( 37)	3.84
5세	23.4	42.6	21.3	10.6	0.0	2.1	100.0( 47)	3.80
6세	23.3	43.3	30.0	3.3	0.0	0.0	100.0( 30)	3.87
$X^2(df)/F$			na					2.52*
지역 규모								
광역시	30.9	46.0	14.5	6.5	1.5	0.6	100.0( 476)	3.99
중소도시	27.0	47.8	18.6	4.7	1.6	0.2	100.0( 485)	3.94
읍면	30.0	56.0	12.0	2.0	0.0	0.0	100.0( 50)	4.14
$X^2(df)/F$			na					1.27
모 취업여부								
취업	29.4	48.8	14.2	4.8	2.4	0.3	100.0( 289)	3.98
휴직중	28.7	46.8	16.0	7.4	1.1	0.0	100.0( 94)	3.95
미취업	29.0	46.6	17.3	5.5	1.1	0.5	100.0( 618)	3.97
$X^2(df)/F$			na					0.0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4	56.7	16.4	4.5	1.5	1.5	100.0( 52)	3.89
200~349만원	28.2	47.2	17.2	5.9	1.4	0.2	100.0( 343)	3.95
350~499만원	34.1	45.9	13.5	5.2	1.3	0.0	100.0( 284)	4.06
500만원 이상	28.3	47.4	17.0	5.7	1.3	0.4	100.0( 280)	3.96
$X^2(df)/F$			na					1.00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부록 표 IV-2-3〉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신청 및 수급 절차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2.1	53.7	16.2	5.4	1.2	1.4	100.0(1,011)	3.91
영유아구분								
영아	23.7	53.1	16.0	4.7	1.0	1.6	100.0( 836)	3.95
유아	14.3	56.6	17.1	9.1	2.3	0.6	100.0( 175)	3.72
X <sup>2</sup> (df)/t			14.73(5)*					3.17**
자녀연령								
0세	29.0	51.6	13.4	3.6	0.8	1.6	100.0( 366)	4.06
1세	17.0	56.5	18.2	5.8	0.6	1.8	100.0( 329)	3.85
2세	25.5	48.9	17.7	5.0	2.1	0.7	100.0( 141)	3.91
3세	13.1	54.1	19.7	11.5	1.6	0.0	100.0( 61)	3.66
4세	10.8	56.8	10.8	10.8	8.1	2.7	100.0( 37)	3.53
5세	17.0	55.3	19.1	8.5	0.0	0.0	100.0( 47)	3.81
6세	16.7	63.3	16.7	3.3	0.0	0.0	100.0( 30)	3.93
X <sup>2</sup> (df)/F			na					4.56***
지역 규모								
광역시	23.9	54.4	13.7	4.8	1.5	1.7	100.0( 476)	3.96
중소도시	20.6	53.4	18.6	5.4	1.0	1.0	100.0( 485)	3.88
읍면	18.0	50.0	18.0	12.0	0.0	2.0	100.0( 50)	3.76
X <sup>2</sup> (df)/F			na					1.98
모 취업여부								
취업	19.4	57.8	15.6	4.5	1.4	1.4	100.0( 289)	3.91
휴직중	27.7	54.3	14.9	1.1	1.1	1.1	100.0( 94)	4.08
미취업	22.7	51.6	16.7	6.5	1.1	1.5	100.0( 618)	3.89
X <sup>2</sup> (df)/F			na					1.8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4	55.2	11.9	11.9	0.0	1.5	100.0( 52)	3.83
200~349만원	21.9	52.8	16.9	6.3	0.7	1.4	100.0( 343)	3.90
350~499만원	21.4	55.0	17.5	3.5	0.9	1.7	100.0( 284)	3.94
500만원 이상	24.3	53.9	14.3	4.3	2.2	0.9	100.0( 280)	3.95
X <sup>2</sup> (df)/F			na					0.44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IV-2-4〉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현금 지급 방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41.6	51.5	5.7	0.8	0.3	100.0(1,011)	4.33
영유아구분							
영아	43.1	50.7	5.3	0.7	0.2	100.0( 836)	4.36
유아	34.9	55.4	8.0	1.1	0.6	100.0( 175)	4.23
$X^2(df)/t$			na				2.38*
자녀연령							
0세	43.4	51.6	3.3	1.1	0.5	100.0( 366)	4.36
1세	40.1	52.6	7.0	0.3	0.0	100.0( 329)	4.33
2세	48.9	44.0	6.4	0.7	0.0	100.0( 141)	4.41
3세	36.1	59.0	1.6	3.3	0.0	100.0( 61)	4.28
4세	37.8	54.1	8.1	0.0	0.0	100.0( 37)	4.30
5세	38.3	48.9	10.6	0.0	2.1	100.0( 47)	4.21
6세	23.3	60.0	16.7	0.0	0.0	100.0( 30)	4.07
$X^2(df)/F$			na				1.69
지역 규모							
광역시	42.9	50.2	5.5	1.1	0.4	100.0( 476)	4.34
중소도시	40.0	53.0	6.2	0.6	0.2	100.0( 485)	4.32
읍면	46.0	50.0	4.0	0.0	0.0	100.0( 50)	4.42
$X^2(df)/F$			na				0.58
모 취업여부							
취업	39.8	53.3	6.2	0.3	0.3	100.0( 289)	4.32
휴직중	48.9	46.8	2.1	2.1	0.0	100.0( 94)	4.43
미취업	41.6	51.1	6.1	0.8	0.3	100.0( 618)	4.33
$X^2(df)/F$			na				1.0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2.8	61.2	4.5	1.5	0.0	100.0( 52)	4.25
200~349만원	41.5	52.1	5.2	0.7	0.5	100.0( 343)	4.34
350~499만원	42.4	49.3	6.6	1.3	0.4	100.0( 284)	4.32
500만원 이상	42.2	51.3	6.1	0.4	0.0	100.0( 280)	4.35
$X^2(df)/F$			na				0.4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05$ .

〈부록 표 IV-2-5〉 양육수당 정책 세부사항 만족도-연령 차등 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 응답	계(수)	평균
전체	17.9	38.1	22.7	17.8	2.8	0.8	100.0(1,011)	3.51
영유아구분								
영아	18.8	37.8	22.7	16.7	3.1	0.8	100.0( 836)	3.53
유아	13.7	39.4	22.3	22.9	1.1	0.6	100.0( 175)	3.42
$X^2(df)/t$			7.37(5)					1.22
자녀연령								
0세	21.6	36.9	20.8	15.6	3.8	1.4	100.0( 366)	3.58
1세	14.3	39.5	24.0	18.5	3.0	0.6	100.0( 329)	3.44
2세	22.0	36.2	24.8	15.6	1.4	0.0	100.0( 141)	3.62
3세	14.8	47.5	16.4	19.7	1.6	0.0	100.0( 61)	3.54
4세	18.9	21.6	32.4	21.6	2.7	2.7	100.0( 37)	3.33
5세	10.6	40.4	19.1	29.8	0.0	0.0	100.0( 47)	3.32
6세	10.0	43.3	26.7	20.0	0.0	0.0	100.0( 30)	3.43
$X^2(df)/F$			na					1.17
지역 규모								
광역시	18.5	38.2	19.5	20.2	2.5	1.1	100.0( 476)	3.51
중소도시	17.7	36.9	25.6	16.1	3.1	0.6	100.0( 485)	3.50
읍면	14.0	48.0	24.0	12.0	2.0	0.0	100.0( 50)	3.60
$X^2(df)/F$			na					0.19
모 취업여부								
취업	16.3	41.5	20.4	19.7	2.1	0.0	100.0( 289)	3.50
휴직중	23.4	39.4	22.3	11.7	1.1	2.1	100.0( 94)	3.74
미취업	18.0	35.9	23.8	18.0	3.4	1.0	100.0( 618)	3.48
$X^2(df)/F$			na					2.44 <sup>#</sup>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9	38.8	17.9	29.9	1.5	0.0	100.0( 52)	3.30
200~349만원	19.2	36.8	23.5	17.2	2.7	0.7	100.0( 343)	3.53
350~499만원	17.9	41.5	17.9	16.6	4.4	1.7	100.0( 284)	3.53
500만원 이상	16.5	38.3	27.0	16.1	2.2	0.0	100.0( 280)	3.51
$X^2(df)/F$			na					0.95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sup>#</sup>  $p < .10$ .

〈부록 표 IV-2-6〉 양육수당 수혜 후 어머니의 근로형태 변화

단위: %(명)

구분	변동 없다	하던 일을 그만둠	해당 없음	육아 휴직	하던 일을 줄였다	취업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기타	계(수)
전체	74.7	9.7	8.2	5.1	1.7	0.5	0.1	100.0(1011)
영유아구분								
영아	74.8	9.9	7.1	5.7	1.9	0.5	0.1	100.0( 836)
유아	74.3	8.6	13.7	2.3	0.6	0.6	0.0	100.0( 175)
$\chi^2(df)$				na				
자녀연령								
0세	72.1	8.7	8.5	7.7	2.7	0.0	0.3	100.0( 366)
1세	78.7	12.5	2.1	4.9	1.5	0.3	0.0	100.0( 329)
2세	72.3	7.1	14.9	2.8	0.7	2.1	0.0	100.0( 141)
3세	60.7	13.1	21.3	3.3	0.0	1.6	0.0	100.0( 61)
4세	89.2	2.7	5.4	0.0	2.7	0.0	0.0	100.0( 37)
5세	70.2	12.8	14.9	2.1	0.0	0.0	0.0	100.0( 47)
6세	90.0	0.0	6.7	3.3	0.0	0.0	0.0	100.0( 30)
$\chi^2(df)$				na				
지역 규모								
광역시	74.2	9.0	8.2	5.3	2.7	0.6	0.0	100.0( 476)
중소도시	74.0	10.7	9.1	5.2	0.8	0.0	0.2	100.0( 485)
읍면	86.0	6.0	0.0	4.0	0.0	4.0	0.0	100.0( 50)
$\chi^2(df)$				na				
모 취업여부								
종일제	89.2	1.3	2.5	3.2	3.2	0.6	0.0	100.0( 158)
시간제	72.7	3.0	9.1	3.0	9.1	3.0	0.0	100.0( 33)
휴직중	56.4	3.2	0.0	40.4	0.0	0.0	0.0	100.0( 94)
자영업·재택	90.8	2.0	0.0	1.0	4.1	2.0	0.0	100.0( 98)
미취업	71.4	14.6	12.0	1.1	0.8	0.0	0.2	100.0( 618)
모름/무응답	85.7	0.0	0.0	0.0	0.0	14.3	0.0	100.0( 7)
$\chi^2(df)$				na				
모 취업고용형태								
정규직	79.4	1.3	1.3	14.3	2.5	1.3	0.0	100.0( 238)
계약직	86.7	0.0	0.0	6.7	6.7	0.0	0.0	100.0( 15)
시간제	80.3	3.8	3.0	7.6	3.8	1.5	0.0	100.0( 132)
미취업	71.4	14.6	12.0	1.1	0.8	0.0	0.2	100.0( 618)
모름/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100.0( 5)
$\chi^2(df)$				na				
모 하루 근로시간								
7시간 이하	71.1	2.2	8.9	2.2	15.6	0.0	0.0	100.0( 45)
8시간	78.2	0.8	2.5	14.3	2.5	1.7	0.0	100.0( 119)
9시간	79.2	4.2	0.0	14.6	0.0	2.1	0.0	100.0( 48)
10시간 이상	78.4	2.7	0.0	16.2	1.4	1.4	0.0	100.0( 74)
미취업	71.4	14.6	12.0	1.1	0.8	0.0	0.2	100.0( 618)
모름/무응답	88.5	1.9	0.0	7.7	1.0	1.0	0.0	100.0( 104)

(부록 표 IV-2-6 계속)

구분	변동 없다	하던 일을 그만둠	해당 없음	육아 휴직	하던 일을 줄였다	취업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기타	계(수)
$\chi^2(df)$	na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3.1	14.9	7.5	0.0	1.5	1.5	1.5	100.0( 67)
200~299만원	74.9	12.2	8.5	3.7	0.4	0.4	0.0	100.0( 271)
300~399만원	67.9	12.3	9.9	6.3	2.8	0.8	0.0	100.0( 252)
400~499만원	67.1	10.7	10.1	10.7	1.3	0.0	0.0	100.0( 149)
500~599만원	89.3	2.5	2.5	3.3	2.5	0.0	0.0	100.0( 122)
600만원 이상	80.6	2.8	8.3	5.6	1.9	0.9	0.0	100.0( 108)
모름/무응답	85.7	4.8	7.1	0.0	2.4	0.0	0.0	100.0( 42)
$\chi^2(df)$	na							
모 연령								
29세 이하	64.9	10.6	9.6	9.6	1.1	3.2	1.1	100.0( 94)
30~34세	73.4	12.0	6.0	6.0	2.6	0.0	0.0	100.0( 418)
35~39세	79.5	7.6	7.9	3.4	1.3	0.3	0.0	100.0( 380)
40세 이상	71.9	7.9	14.9	4.4	0.0	0.9	0.0	100.0( 114)
모름/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
$\chi^2(df)$	na							
모 학력								
고등학교 이하	75.8	9.5	9.1	3.0	1.3	0.9	0.4	100.0( 231)
대학 졸	74.4	14.1	7.7	2.6	1.3	0.0	0.0	100.0( 156)
대학교 졸	74.9	8.7	7.4	6.8	1.5	0.6	0.0	100.0( 526)
대학원 이상	75.0	7.6	7.6	5.4	4.3	0.0	0.0	100.0( 92)
모름/무응답	0.0	33.3	66.7	0.0	0.0	0.0	0.0	100.0( 3)
$\chi^2(df)$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부록 2. 양육수당 수혜자/어린이집 이용자 조사표

지역번호	시도	조사표 번호

##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반적인 보육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제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사 지침

- 아동코드는 연번(예: 0001)을 그대로 이기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귀댁에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살인지요?  
 (양육수당을 모르는 경우 설명 필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직접 계좌로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함.)

1. 귀 가정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1

1-1. (1명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  
 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 1-1

2.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아      ② 여아 2

3. 해당 자녀의 낮 시간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① 부모      ② 친조부모      ③ 외조부모      ④ 친인척  
 ⑤ 육아전문인력(베이비시터 등)      ⑥ 기타 3

4. 해당 자녀가 지금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 4

5. 현재 귀하께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5-1. (①,② 현재 만족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게 된 후 귀댁의 가정 양육 만족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① 만족도가 많이 높아짐      ② 만족도가 조금 높아짐      ③ 만족도에 변화가 없음  
 ④ 만족도가 조금 낮아짐      ⑤ 만족도가 많이 낮아짐 5-1

5-2. (①,② 현재 만족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가정양육을 하시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주양육자와 아이의 애착이 잘 형성됨  
 ②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됨  
 ③ 아이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짐  
 ④ 일-가정 양립이 수월해짐(출퇴근시 기관에 맡기는 번거로움이 없음)  
 ⑤ 기타( ) 5-2

6. 귀댁 자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육관련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여러 군데의 경우, 가장 최근에 다닌 시설을 기준으로 함)  
 ① 어린이집에 다녔음      ② 유치원에 다녔음  
 ③ 다른 시설에 다녔음      ④ 아무데도 안 다녔음 6

6-1. (①,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녔다고 응답한 경우만) 그 곳을 다니다 시설이용을 중단한 이유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① 그렇함      ② 양육수당과는 무관하게 중단하였음  
 ③ 기타( ) 6-1

7. 정부에서는 만0-5세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8. 귀댁에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작은 아이가 시설을 이용하기에 어리고, 가정 양육이 나올 것 같아서
- ② 자녀를 보낼만한 시설이 없어서
- ③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양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어서
- ④ 기타( )

8  
□

9.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

9-1. (④,⑤를 선택한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비해 금액이 부족해서
- ② 보육료 지원에 비해 금액이 적어서
- ③ 기타( )

9-1  
□

9-2. (④,⑤를 선택한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연령 기준으로 월 ( )원

9-2  
□ 원

10. 귀하는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기존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한정 지원에서 전체 계층으로의 수급 대상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기존 2세 이하 아동에서 취약전 전연령으로 수급 대상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수당 신청 및 수급 절차	①	②	③	④	⑤
4)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5)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연령 차등지원 방식	①	②	③	④	⑤

10  
□  
□  
□  
□  
□

11.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나요?

보육·교육비 \_\_\_\_\_ 원  
기타 비용 \_\_\_\_\_ 원

11  
□ 원  
□ 원

12.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예전보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었습니까?

- ① 많이 줄었음    ② 어느 정도 줄어듬    ③ 별로 줄지 않음    ④ 전혀 줄지 않음

12 □

13. 양육수당 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의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도움이 됨    ② 어느 정도 도움 됨    ③ 도움이 안됨

13 □

14. 귀하께서는 양육수당 수급으로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가 생겼나요?

- ① 상당히 생김    ② 어느 정도 생김    ③ 생기지 않음

14 □

15. 만약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인상한다면 지금에 비해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 ① 추가 출산할 의사가 높아질 것임    ②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15 □

15-1. (②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5~10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 ① 매우 높아질 것임    ② 약간 높아질 것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15-1 □





지역번호	시도	조사표 번호

##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반적인 보육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 사 지 칩

- 아동코드는 연번(예: 0001)을 그대로 이기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귀택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살인지요?  
(필요시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기타 반일제 학원 등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함)

1. 귀 가정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1	<input type="text"/>
1-1. (1명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 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이상	1-1	<input type="text"/>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아    ② 여아	2	<input type="text"/>
3. 귀택 자녀는 양육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4번 문항으로)	3	<input type="text"/>
3-1. (① 양육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최초로 받았을 때 아동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        )개월	3-1	<input type="text"/>
3-2. (① 양육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수혜를 중지하고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의 취업으로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② 양육의 체력적 부담이 커서 ③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④ 기관에 보내기 적당한 연령이 되어서 ⑤ 양육수당 금액이 적어서    ⑥ 기타(        )	3-2	<input type="text"/>
4. 귀하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할 시기에 양육수당 수급대상자이기도 했습니까? ① 예(☞ 5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4	<input type="text"/>
4-1. (② 이용시작 시기에 양육수당 수급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귀택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관 이용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에서 돌보고 기관 이용을 늦추었을 것이다 ②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그 시기에 기관을 보냈을 것이다	4-1	<input type="text"/>
5. 만약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인상한다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지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환할 의향이 있음    ② 인상 금액에 따라 다름    ③ 전환할 의향이 없음	5	<input type="text"/>
5-1. (②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5~10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시설 이용을 중지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5-1	<input type="text"/>
5-1-1. (② 없다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10~15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시설 이용을 중지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5-1-1	<input type="text"/>
5-1-1-1. (② 없다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15~20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시설 이용을 중지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5-1-1-1	<input type="text"/>

5-1-1-1. (문 5에서 ③ 또는 문 5-1-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 가정 사정상 시설을 꼭 이용해야만 하여서(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② 가정에서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③ 현 시설 이용에 불만이 없어서  
 ④ 가정보다 시설에서 돌보는 게 아이에게 좋은 것 같아서  
 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의 차이 때문에(보육료 지원액이 더 크기 때문에)  
 ⑥ 기타( )

5-1-1-1

6. 정부에서는 만0-5세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7. 귀하는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잘 모름
1) 기존 차상위 계층 한정 지원에서 전체 계층으로의 수급 대상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기존 2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전 전연령으로 수급대상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수당 신청 및 수급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4)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5)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연령 차등지원 방식	①	②	③	④	⑤	

7

8. 만약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인상한다면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지겠습니까?

①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짐    ②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8

8-1. (②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5~10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지겠습니까?  
 ① 매우 높아질 것임    ② 약간 높아질 것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8-1

8-1-1. (③에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10~15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지겠습니까?  
 ① 매우 높아질 것임    ② 약간 높아질 것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8-1-1

8-1-1-1. (③에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보다 월 15~20만원 정도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추가 출산 의사가 높아지겠습니까?  
 ① 매우 높아질 것임    ② 약간 높아질 것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8-1-1-1

9. 양육수당을 현행과 달리 첫째아보다는 둘째, 셋째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방안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다자녀 가정의 아동의 양육수당이 높은 형태임)

① 찬성    ② 반대

9

9-1. (① 찬성하는 경우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후속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지금보다 높아지  
 시겠습니까?  
 ① 매우 높아질 것임    ② 약간 높아질 것임    ③ 영향을 받지 않음

9-1



## 부록 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자/기관 조사표

지역번호	—	시도	—	조사표 번호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의견 조사: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올해 4월부터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에 따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 사 지 침

- 아동코드는 연번(예: 0001)을 그대로 이기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귀택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살인지요?  
(필요시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기타 반일제 학원 등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함)

<p>1. 귀택의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                        ④ 가정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                        ⑥ 부모협동어린이집</p>	<p>1</p> <p><input type="checkbox"/></p>
<p>2. 귀하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4월부터 도입 시행 중인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p> <p>① 알고 있음                              ② 모름(☞ 응답 종료)</p>	<p>2</p> <p><input type="checkbox"/></p>
<p>3. 귀하는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p> <p>① 있음(☞ 3-1번 문항으로)              ② 없음(☞ 응답 종료)</p>	<p>3</p> <p><input type="checkbox"/></p>
<p>3-1.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수기 방식으로 입소 대기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수기방식: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p> <p>① 그렇다, 수기 방식 대기 경험 있음      ② 수기방식 대기 경험 없음</p>	<p>3-1</p> <p><input type="checkbox"/></p>
<p>3-2.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그 곳은 어디입니까? (※ 여러 곳일 경우, 가장 오랫동안 대기한 어린이집 유형을 기입함)</p> <p>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p>	<p>3-2</p> <p><input type="checkbox"/></p>
<p>3-3.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최대 몇 개월을 대기해 보셨습니까?</p> <p>① 3개월 이내              ② 3~6개월 이내              ③ 6개월~1년 이내 ④ 1년~1년 6개월 이내    ⑤ 1년 6개월~2년 이내      ⑥ 2년 이상</p>	<p>3-3</p> <p><input type="checkbox"/></p>
<p>3-4. (수기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최대 몇 개의 기관에 대기해 보았습니까?</p> <p>① 1~2개      ② 3~5개      ③ 6~8개      ④ 9~10개      ⑤ 11개 이상</p>	<p>3-4</p> <p><input type="checkbox"/></p>
<p>4. 귀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해본 경험이 있습니까?</p> <p>① 대기 경험 있음(☞ 4-1번 문항으로)      ② 대기 경험 없음(☞ 응답 종료)</p>	<p>4</p> <p><input type="checkbox"/></p>
<p>4-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그 곳은 어디입니까? (※ 여러 곳일 경우, 가장 오랫동안 대기한 어린이집 유형을 기입함.)</p> <p>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④ 가정어린이집      ⑤ 민간어린이집</p>	<p>4-1</p> <p><input type="checkbox"/></p>
<p>4-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최대 몇 개월을 대기해 보셨습니까?</p> <p>① 3개월 이내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p>	<p>4-2</p> <p><input type="checkbox"/></p>
<p>4-3.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최대 몇 개의 기관에 대기해 보았습니까?</p> <p>① 1~2개      ② 3~5개      ③ 6~8개      ④ 9~10개      ⑤ 11개 이상</p>	<p>4-3</p> <p><input type="checkbox"/></p>

<p>4-4.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방식 대기 경험이 있다면) 온라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대체로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p>	<p>4-4</p> <input type="text"/>
--	---------------------------------

<p>4-5. (①,②에 응답한 경우)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음                  ②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점                  ③ 입소 대기 기관 수 제한이 없음                  ④ 자녀 출생 후 주민번호 부여 후에만 대기 가능한 점(대기의 과열 경쟁 예방)                  ⑤ 우선 입소를 위한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기타( )                  ⑦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 없음</p>	<p>4-5</p> <input type="text"/>
---	---------------------------------

<p>4-6. (③,④에 응답한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이용 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입소대기 사이트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어려움                  ② 주민번호부여 후에만 대기 가능한 점(태아때부터 대기 가능하면 좋겠음)                  ③ 다수 어린이집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번호로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④ 입소 희망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기하는 경향 증가                  ⑤ 입소대기 번호가 수시로 변동하여 예측성이 떨어짐                  ⑥ 기타( )</p>	<p>4-6</p> <input type="text"/>
--	---------------------------------

<p>5.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이전의 수기 입력 시스템을 둘 다 사용해본 경우) 수기로 대기할 때에 비해 온라인 입소 시스템 도입 후 대기 기간이 줄었습니까?                  ① 그러함      ② 그렇지 않음(별 차이 없음)                  ③ 해당 없음(둘 다 사용해 보지 않은 경우)</p>	<p>5</p> <input type="text"/>
--	-------------------------------

<p>6. (현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과 이전의 수기 입력 시스템을 둘 다 사용해본 경우) 수기 입력 대기 이용 시에 비해 현재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크게 높아짐      ② 대체로 높아짐      ③ 변화없음      ④ 대체로 낮아짐      ⑤ 크게 낮아짐</p>	<p>6</p> <input type="text"/>
--	-------------------------------

<p>6-1. (①,②,③만족도가 변화없거나 높아졌다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만족스러운 순서로 2순위까지 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p> <p>①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음                  ②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 편의성이 증진됨                  ③ 입소 대기가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기관에 동시에 대기할 수 있게 됨                  ④ 입소우선순위 자격을 고려할 때 예전보다 대기기간이 줄어든 것 같음                  ⑤ 우선 입소를 위한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기타( )</p>	<p>6-1</p> <input type="text"/>
--	---------------------------------



지역번호	시도	조사표 번호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의견 조사: 기관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고 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에 따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응답자	<input type="checkbox"/> ① 원장 <input type="checkbox"/> ② 원감 <input type="checkbox"/> ③ 주임교사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시범실시 지역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시범지역(부산, 제주) <input type="checkbox"/> ② 시범지역 아님		
지 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행정구역	<input type="checkbox"/> ① 동 <input type="checkbox"/> ② 읍·면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어린이집		
정원	총 현원 (            )명 <input type="checkbox"/> ① 20명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21~39명 <input type="checkbox"/> ③ 40~80명 <input type="checkbox"/> ④ 81명 이상		
현원	총 현원(            )		

육 아 정 책 연 구 소



7-2. ④,⑤ 만족도가 낮아졌다면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입소아동 결정에 대한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짐(형제자매 입소, 근거리 거주 등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소가 바람직한 경우를 받아들일 수 없음)  
 ② 부모 민원 증가(새 입소대기시스템에서 순위가 밀린 경우 발생 등)  
 ③ 실질적 수요 파악이 어려움(여러 어린이집에 동시에 대기하는 허수 대기자 증가)  
 ④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에 대한 관리 업무 증가  
 ⑤ 태아의 입소대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됨  
 ⑥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하게 됨  
 ⑦ 기타( )

7-2

8. 새로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대체로 높음                      ③ 대체로 낮음                      ④ 매우 낮음

8

9.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9

- ①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 적용 필요(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 ② 입소대기 시 입소가능일 혹은 입소희망일을 입력하도록 함
- ③ 부모가 입소대기 시 관련서류파일 첨부로 정확한 정보(입소우선순위사항) 입력
- ④ 입소아동 선정에 일정부분 기관 재량권 부여 또는 특별전형 인원 부여(형제자매 재원, 근거리 거주자 등)
- ⑤ 허수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입소확정 시 대기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취소 등)
- ⑥ 기타( )

10.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 )개소  
 ① 1~2개                      ② 3~5개                      ③ 6~8개  
 ④ 9~10개                      ⑤ 11개 이상                      ⑥ 제한할 필요 없음

10  
개소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4-22

---

##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 906-7735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98-5 93330